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2018.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8. 8.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30.6조원, 총지출 406.6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0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8.5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2017년 추정 전망보다 각각 11.0조원, 10.4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무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 총 2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12대 분야, 재정건전성 등 14건의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일자리정책,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47건의 주요 재정 정책 사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소관 개별 사업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집행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수록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결산서를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효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외교 통일 위원 회

[외교부]

I. 결산 개요 / 3

1. 현 황 3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0

II. 주요 현안 분석 / 11

1.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내실 있는 추진 필요 11
 - 1-1. 재외국민보호제도의 인지도 제고 필요 등 11
 - 1-2. 재외공관 안전문자 발송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7
2.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 21

III. 개별 사업 분석 / 27

1. 한상활용 청년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필요 등 27
2. 한-베 우호교류센터 건립 취소에 따른 불용액 과다 31
3.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사업 예산 편성부서와 집행부서 간 불일치 36
4.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개최 부적절 39
5. 재외공관 주요행사비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44
6. 유럽지역 다큐멘터리 감독 및 제작자 초청 사업의 성과관리방안 마련 필요 46
7.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의 실적 및 실효성 제고 필요 51



8. MIKTA 영 리더스 캠프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55
9. AU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한 한-아프리카 포럼 체계적 집행 필요	59
10. 대유네스코 외교강화 사업의 철저한 계획수립 및 집행 필요	63
11. 집행지침을 위반한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66

[통일부]

I. 결산 개요 / 71

1. 현 황	71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77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78

II. 주요 현안 분석 / 80

1. 북한인권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의 업무 조정 필요 등	80
---------------------------------------	----

III. 개별 사업 분석 / 87

1.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편성 필요 등	87
2.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93
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적절한 예산편성 필요	98
4.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필요	102
5.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비와 교류협력국 기본경비의 효율적 집행 필요	106
6.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직제 반영 필요	109
7.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및 지역적응센터 예산의 합리적 배분 필요	113



CONTENTS

8.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119
9.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기존 교육과정과의 유사·중복 등	126
10. 북한인권실태 자료발간 예산 집행실적 제고 필요	131
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보화 및 온라인 교육사업 내실화 필요	1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I. 결산 개요 / 143

1. 현 황	143
2.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47

II. 주요 현안 분석 / 148

1. 자문회의 운영 사업의 문제점	148
1-1. 국내·해외 출범회의 내실화를 통한 참석률 및 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149
1-2. 자문회의 구성의 국민 대표성 제고 노력 필요	151
1-3.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의 활성화 노력 필요	155

국방위원회

[국방부]

I. 결산 개요 / 163

- 1. 현 황 163
-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71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72

II. 주요 현안 분석 / 173

- 1. 국방부 인력운영 관련 173
 - 1-1. 부서관(하사) 총원 노력 필요 174
 - 1-2. 유급지원병 연례적 총원 미달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176
 - 1-3.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예산의 적정수준 편성 필요 179
- 2. 한시적 기구 운영 개선과제 182
- 3. 상이한 한미 환경치유기준에 따른 후속 사업 집행 부진 185
- 4. 피복방침에 따른 지급물품 변경 관련 188
 - 4-1. 기본피복 보급 수량 변경에 따른 피복 사전 구입 관련 188
 - 4-2. 휴지의 부대 공용 비치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 간의 차이 발생 부적정 190
- 5. 장병격려비 포상금 집행 관련 193
- 6. 전기오류수정손익 과다 발생 관련 197



CONTENTS

Ⅲ. 개별 사업 분석 / 201

1. 단가에 따른 특수식량 구매 수량 변경 부적정	201
2. 부교재비 지급 목적으로 포상금 집행 부적정	205
3. 진료업무보조비 집행실적 부진 등	207
3-1. 진료업무보조비의 편성액 대비 연례적으로 낮은 집행실적 부적정	207
3-2.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의 연례적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10
4. 사관학교 계약직 교수 활용 부진 부적정	213
5. 지방자치단체 사업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전액 보조 부적정	216
6. 국방홍보원 공공요금 과다편성에 따른 연례적 조정 부적정	220
7. 방폭텐트 도입 규격서 미흡에 따른 장비 도입 취소 부적정	223
8. 평택지원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부진 부적정	225
9.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미수행과제 증가 부적정	228
10.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 노력 필요	231
11. 성적우수자 기준 부적정 등	233
12. 과학화훈련장비 도입 지연에 따른 훈련 계획 차질 발생 우려	236
13. 군인연금 보전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39

[방위사업청] / 241



[병무청]

I. 결산 개요 / 305

- 1. 현 황 305
-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10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11

II. 개별 사업 분석 / 312

- 1.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312
- 2.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적정성 검토 필요 316
- 3. 부정확한 단가 예측에 따른 잠복결핵검사 집행 부진 322
- 4. 병무행정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324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05억 8,300만원(11.7%)이 증가한 3,860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789억 200만원(23.1%)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85,340	249,398	249,398	268,132	18,734	17,208
기금	56,182	96,027	96,027	117,876	21,849	61,694
합계	341,522	345,425	345,425	386,008	40,583	78,902

자료: 외교부

2017회계연도 외교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232억 2,300만원(5.3%)이 감소한 2조 1,839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03억 3,000만원(2.4%)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084,583	2,206,434	2,206,434	2,094,811	△111,623	10,228
기금	49,080	99,165	100,783	89,183	△11,600	40,103
합계	2,133,664	2,305,599	2,307,217	2,183,994	△123,223	50,330

자료: 외교부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493억 9,800만원이며, 2,681억 3,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 하였다.

[2017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49,398	249,398	249,398	268,132	268,132	0	0	100

자료: 외교부

2017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2,560억 4,100만원이며, 이 중 93.6%인 2조 1,123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23억 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223,985	2,223,985	2,256,041	2,112,354	1,381	142,306	93.6

자료: 외교부

다.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916억원이며, 2,197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2.4%인 2,250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국제교류기금	108,471	108,471	108,471	132,309	132,309	0	0	100.0
국제질병퇴치기금	83,129	83,129	83,129	87,437	92,764	0	0	106.1
합계	191,600	191,600	191,600	219,746	225,073	0	0	102.4

자료: 외교부

2017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916억원이며, 이 중 117.5%인 2,250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9,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8억 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국제교류기금	108,471	108,471	108,471	132,309	1,518	9,245	122.0
국제질병퇴치기금	83,129	83,129	83,129	92,764	276	561	111.6
합계	191,600	191,600	191,600	225,073	1,794	9,806	117.5

자료: 외교부

라.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외교부의 자산은 4조 3,989억 100만원, 부채는 739억 500만원으로 순자산은 4조 3,249억 9,7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3,217억(7.9%)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1,927억 4,200만원, 투자자산 1,163억 1,100만원, 일반유형자산 4조 334억 1,800만원, 무형자산 500억 3,3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63억 9,8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교류기금의 정부내단기예탁금이 200억원, 대사관 건설 등으로 일반회계의 일반유형자산 2,210억 4,800만원, 국제질병퇴치기금 신설로 기타국고금 457억 9,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297억 4,300만원(28.7%) 감소한 것으로 유동부채 183억 8,400만원, 장기차입부채 49억 8,400만원, 장기충당부채 340억 2,2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165억 1,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의 상환에 따른 223억 1,4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외교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4,398,901	4,077,201	321,700	7.9
Ⅰ. 유동자산	192,742	77,427	115,315	148.9
Ⅱ. 투자자산	116,311	129,871	△13,560	△10.4
Ⅲ. 일반유형자산	4,033,418	3,811,470	221,948	5.8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50,033	50,191	△158	△0.3
Ⅵ. 기타비유동자산	6,398	8,241	△1,843	△22.4
부 채	73,905	103,648	△29,743	△28.7
Ⅰ. 유동부채	18,384	24,694	△6,310	△25.6
Ⅱ. 장기차입부채	4,984	8,668	△3,684	△42.5
Ⅲ. 장기충당부채	34,022	37,796	△3,774	△10.0
Ⅳ. 기타비유동부채	16,515	32,490	△15,975	△49.2
순 자 산	4,324,997	3,973,553	351,444	8.8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8,479억 7,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2조 386억 800만원, 관리운영비 1,909억 9,600만원, 비배분비용 205억 9,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586억 2,200만원, 비배분수익 407억 3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028억 9,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557억 6,600만원(2.9%) 증가한 1조 9,508억 7,400만원이며, 이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30억 9,4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1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7,301억 4,700만원)과 재외공관운영프로그램(5,708억 2,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844억 6,200만원과 경비 1,065억 3,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11억 7,800만원과 평가손실 166억 5,500만원, 기타비용 27억 5,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외교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1,779,986	1,731,779	48,207	2.8
II. 관리운영비	190,996	188,264	2,732	1.5
III. 비배분비용	20,595	23,689	△3,094	△13.1
IV. 비배분수익	40,703	48,624	△7,921	△16.3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950,874	1,895,108	55,766	2.9
VI. 비교환수익 등	102,896	60,031	42,865	71.4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847,978	1,835,077	12,901	0.7

자료: 외교부

외교부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3조 9,735억 5,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조 3,249억 9,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514억 4,400만원(8.8%)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29억 1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타순자산의증가 및 일반유형자산재평가

이익의 감소 등으로 47억 6,700만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554억 6,2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2조 2,237억 1,3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2,686억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71억 9,6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2,026억 6,100만원, 기타 순자산의 증감 488억 4,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외교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3,973,553	3,659,904	313,649	8.6
II. 재정운영결과	1,847,978	1,835,077	12,901	0.7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955,113	1,899,651	55,462	2.9
IV. 조정항목	244,308	249,075	△4,767	△1.9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324,997	3,973,553	351,444	8.8

자료: 외교부

마. 재정 구조

2017회계연도 외교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은 없다.

외교부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캄보디아(ODA), ② 라오스(ODA), ③ 탄자니아(ODA) 사업 등이 있다.

캄보디아(ODA) 사업은 사업규모 축소 및 내용 조정에 따라 14억원이 감액(139억원→125억원)되었고, 라오스(ODA) 사업 또한 사업규모 축소 및 내용 조정에 따라 14억원이 감액(143억원→129억원)되었다. 탄자니아(ODA) 사업은 신규내역사업 미반영 및 사업규모 축소·조정에 따라 14억 5,000만원이 감액(108억원→93.5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재외동포재단 출연, ②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③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은 재외동포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위해 3억 8,000만원이 증액(581.95억원→585.75억원)되었고,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는 연구용역비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사할린 영주귀국 1세의 자녀(사할린 잔류2-3세) 모국 방문사업 추진 비용 4억원이 증액되어 총 3억 3,000만원이 증액(56억 8,200만원→60억 1,200만원)되었다.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등재 이행 관련 후속조치, 재외공관 임차 미술품 반환 운송비 등을 위하여 2억원이 증액(16억 6,100만원→18억 6,100만원)되었다.

외교부는 ①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를 증대시키고, 우리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외교역량 지속적 확충, ② 해외에서의 우리국민보호 및 재외공관 안전강화 예산 지속적 확대, ③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성 및 역할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④ 중견국 외교 등 우리외교 중점 추진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⑤ 원활한 외교활동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⑥ 국민의 여권발급 편의제고를 위한 여권업무 선진화 및 재외동포사회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재단 출연 확대를 2017년 예산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재외국민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해외안전정보제공 사업의 2017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원(136.1%) 증액된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9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음에도 각 제도별 인지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사업 예산은 유럽국 소관인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나 업무 수행 및 예산 집행부서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으로, 업무 수행 및 집행부서와 예산 편성부서 간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아프리카 포럼은 2014~2017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 불용 및 조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AU와의 면밀한 협의 및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1. 재외국민보호제도의 인지도 제고 필요 등

가. 현 황

재외국민보호¹⁾ 사업은 해외 사건·사고 예방 활동과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팀 파견, 법률 자문가 제공 등의 대응체계 최적화 활동, 영사콜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94억 8,900만원 중 집행액은 89억 6,300만원이고 4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재외국민보호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외국민보호	10,430	10,430	0	△941	0	9,489	8,963	77	449
사건사고 예방	1,763	1,763	0	0	0	1,763	1,733	57	△27
사건사고 대응	5,664	5,664	0	△866	0	4,798	4,382	0	416
영사콜센터	3,003	3,003	0	△75	0	2,928	2,848	20	60

자료: 외교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831-401

나. 분석의견

재외국민보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외국민보호제도의 인지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2016년 사건사고 예방 내역사업 중 해외안전정보제공 사업 예산으로 2억 9,400만원을 편성, 4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YTN 해외안전여행 방송, 아시이나항공 기내방송·기내지 홍보, 옥외전광판 광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보호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외교부는 해외안전정보제공 사업의 2017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원 (136.1%) 증액된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9억 2,800만원을 집행²⁾하였다.

[2016~2017년 해외안전정보제공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2016년		2017년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YTN 해외안전여행 방송	211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264
KBS WORLD 해외안전여행 광고 방송	48	KBS World 「한민족 네트워크」	51
국민일보 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기상도	20	국민일보 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기상도	20
아시이나 항공 기내방송·기내지 홍보	64	아시이나항공 수하물표 광고	56
광화문 옥외전광판 광고(서울신문)	20	아시이나항공 탑승권 광고	66
지하철 주요 역사 스크린도어 홍보	22	인천공항 교통센터 배너 광고	11
지하철 모서리 광고	22	광화문 옥외전광판 (서울신문) 광고	10
해외안전여행 채팅봇 개발	7	광화문 옥외전광판 (채널A) 광고	20
서회외교논단 광고	2	2017년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영상 송출 등	159
기타 자문료·수수료	11	지하철 주요 역사 스크린도어 홍보	22

2) 2017년 예산 대비 초과집행분 2억 3,400만원은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발간 및 공관 송부 사업 (1억 1,600만원)과 신속대응팀 사업(1억 1,800만원)으로부터의 예산 전용을 통해 충당하였다.

(단위: 백만원)

2016년		2017년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	-	티웨이항공 수하물료 광고 등	11
		제주항공 탑승권 광고	11
		KBS 특집 해외안전여행 다큐멘터리 제작	110
		해외선교 안전 다큐멘터리 제작 컨설팅	15
		재외국민제도 홍보 (문화방송 「오지의 마법사」)	50
		재외국민제도 홍보 (KBS 「당신의 해외여행은 안전합니까」)	33
		기타 자문비·사례비 등	19
합 계	427	-	928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대국민 홍보 강화 노력이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 등 유의미한 사업 성과로 이어져야 하나, 외교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³⁾ 결과를 보면 국가별 맞춤형 로밍서비스(69%)를 제외한 모든 재외국민보호제도의 인지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외안전여행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2011년 도입 이후 7년여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지도(28%)가 낮으며, 해외여행자 사전등록제(동행)⁴⁾의 경우에도 2007년 도입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인지도는 21%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영사콜센터(48%)와 국가별 맞춤형 로밍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해외여행자 사전등록제 등 기타 재외국민보호제도의 인지율 또한 2016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5년의 인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3) 2017년 재외국민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는 외교부가 ㈜네오알앤에스와 연구용역 계약(2017.12.25~2018.2.14)을 체결(4,000만원)하여 수행하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동 조사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의 출국 대기자 중 최근 3년 이내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및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식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4)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하면, 이메일을 통해 방문지 안전정보와 목적지의 치안상황 등 안전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최근 3년간 재외국민보호제도별 인지도]

(단위: %)

제도명	연도	인지율					보통 이상 인지율 합산
		매우 잘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보통	잘 모름	전혀 모름	
영사콜센터	2015	2	16	37	34	11	55
	2016	4	14	34	23	24	52
	2017	2	15	31	36	15	48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2015	3	13	29	35	21	45
	2016	1	6	11	32	50	18
	2017	2	12	24	35	26	38
해외여행자 사전 등록제 ‘동행’	2015	2	7	19	42	31	28
	2016	0	1	3	22	73	4
	2017	1	5	15	35	43	21
국가별 맞춤형 로밍서비스	2015	14	39	27	21	8	80
	2016	15	32	27	14	12	74
	2017	10	29	30	22	10	69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2015	1	10	22	39	28	33
	2016	1	3	5	22	69	9
	2017	2	8	18	35	36	28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	2015	1	11	22	36	29	34
	2016	1	3	4	17	76	8
	2017	1	8	18	33	40	27
신속대응팀	2015	2	17	29	36	17	48
	2016	3	9	16	27	45	28
	2017	2	13	27	32	25	42

주: 외교부는 2016년의 경우 응답자 중 연평균 3회 이상 출국자의 비율이 16%로 2015년(27%) 및 2017년(33%)에 비해 다소 낮았는데, 이는 2016년도 응답자의 출국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2016년의 재외국민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타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한 만큼 각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교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사고가 빈번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언어를 영사콜센터 상담언어에 추가하고, 통역서비스 지원 언어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영사콜센터는 재외국민이 영사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민원해결 통로로서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2005년 설립 이후 해외 재난사태 및 사건·사고 신고접수, 외교부 민원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업무(일반상담과 통역상담⁵⁾)으로 구분)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도에 영사콜센터에서 처리한 사건·사고 건수는 총 3만 2,163건인데, 이 중 중국과 일본, 필리핀을 제외한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처리한 사건·사고 건수는 5,953건으로 전체의 18.5%에 달하고 있다.

[2017년 영사콜센터에서 처리한 사건·사고 건수]

(단위: 건)

지역	유형 국가	도난 분실	행방 불명	폭행 상해	납치 감금	사고	사망	체포 구금	입국 거부	송금	기타	합계
아시아 태평양	중국	941	79	164	67	155	59	125	170	38	965	2,763
	일본	2,469	227	128	14	470	16	41	71	429	1,549	5,414
	필리핀	399	61	76	61	159	79	120	96	61	579	1,691
	베트남	460	62	51	26	237	50	35	73	21	472	1,487
	태국	406	81	72	12	190	12	35	53	72	379	1,312
	홍콩	588	68	26	19	117	6	57	55	74	535	1,545
	대만	238	28	34	0	58	7	12	6	75	175	633
	호주	181	37	38	0	74	7	22	0	46	110	515
	말레이시아	169	23	5	8	27	0	1	52	8	114	407
	싱가포르	126	27	10	0	10	0	4	32	61	104	374
	인도네시아	104	17	6	14	15	4	6	16	21	138	341
	캄보디아	34	1	0	13	14	1	19	3	28	98	211
	라오스	29	5	6	0	49	0	0	1	0	40	130
	기타	152	18	15	6	39	6	12	16	23	128	415
미주	미국	848	67	21	14	241	40	37	85	140	1,896	3,389
	캐나다	92	5	9	4	22	1	0	10	34	242	419
	중남미	176	67	9	0	8	18	5	2	55	408	748
유럽		3,349	249	87	29	445	16	7	88	618	4,505	9,393
아중동		60	13	8	13	50	11	21	41	104	655	976
합 계		10,821	1,135	765	300	2,380	333	559	870	1,908	13,092	32,163

자료: 외교부

- 5) 외교부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8년 4월 현재 일반상담원은 23명, 통역상담원은 27명(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각 4명, 아랍어 1명, 관리팀장 1명, 교육팀장 1명)이다. 통역상담원은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 및 해외안전정보 수집·전파,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영사콜센터 일반상담 등의 기본 업무 외에 출입국·세관 문제, 교통사고 발생, 절도·분실, 응급환자 발생 등 해외 우리국민에게 발생하는 긴급상황 시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민, 현지인 및 상담사 간 3자 통역 업무를 실시한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은 현지어 외의 언어가 잘 통용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지원 언어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언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외교부 영사콜센터 홈페이지⁶⁾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6개 외국어에 대해서 통역서비스가 지원된다는 안내만 있을 뿐 아랍어가 지원된다는 사실이 안내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영사콜센터 언어별 통역상담 실적]

(단위: 건)

구 분	2015년(7월~12월)	2016년	2017년
영 어	1,192	4,502	4,457
중국어	728	2,624	3,859
일본어	604	2,030	3,235
프랑스어	292	1,242	2,008
러시아어	79	1,006	1,873
스페인어	209	1,013	1,625
아랍어	1	4	1
합 계	3,105	12,421	17,058

자료: 외교부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당초 UN공용어(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기준으로 통역서비스 지원 언어를 선정하였으나, 아랍어 통역사 공급 부족으로 인한 아랍어 상담사 채용의 어려움 및 아랍어 통역에 대한 수요부족 등의 이유로 아랍어를 제외한 5개 UN 공용어에 통역수요가 많은 일본어를 추가해 6개 언어에 대한 통역서비스 제공을 시행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외교부에 따르면 아랍어 상담사는 채용 시부터 민원인에 대한 통역서비스가 아닌 근무 시간 내 아랍어 번역 업무 및 아랍 외신 모니터링 업무 위주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랍어 통역상담의 수요가 적어 24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아랍어를 통역서비스 지원 언어로 선정하였다는 점, 각종 언론 기사⁷⁾에서 영사콜센터가 아랍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6) https://www.0404.go.kr/callcenter/callcenter_intro.jsp

7) [인터뷰] 영사콜센터 통역상담 “자기계발 통한 양질 서비스 제공”(프라임경제, 2016.10.24.),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51981> 등

는 사실이 홍보되고 있다는 점, 통역상담이 아랍어 상담사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 요청 시 통역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랍어 통역서비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별 통역상담사 간의 형평성이 저해⁸⁾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외교부는 양질의 영사콜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사고가 빈번한 지역인 동남아 지역의 언어를 상담언어에 추가하고, 아랍어 통역상담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및 통역서비스 지원 언어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1-2. 재외공관 안전문자 발송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재외공관 안전문자 발송 사업은 해외 장기체류 재외국민(현지 번호 이용자, 우리 교민)에게 해외에서 테러, 지진 등 대형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안전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2017년도 신규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안에는 재외국민 대상 안전문자 발송을 위하여 2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1,685만원을 집행하여 2억 1,815만원이 불용되었다.

8) 타 언어 통역상담원은 4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반면 아랍어 통역상담원의 근무시간은 09:00~18:00이나, 2017년 월 급여는 206만원으로, 타 언어 통역상담원 월 급여(203~218만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외교부는 아랍어 상담원의 경우 희소성을 감안하여 타 언어 상담원에게 지급하는 심야수당과 동일한 금액(월 21만 9,000원)의 직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17회계연도 재외공관 안전문자 발송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외국민보호	10,430	10,430	0	△941	0	9,489	8,963	77	449
사건사고 대응	5,664	5,664	0	△866	0	4,798	4,382	0	416
재외공관 안전 문자 발송	235	235	0	0	0	235	17	0	218

자료: 외교부

재외공관 안전문자 발송 대상 국가들은 베트남,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일본 등 6개국으로, 자연재해, 테러 등 취약국가 중 우리국민 1,000명 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시 대상국가였던 베트남의 경우 계약 및 발송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2017년도 재외공관 안전문자 발송 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명, 백만원)

국가명	교민수	요금(5통 기준)
베트남	108,438	108,438명*14원*5통=약 759만 원 ≒ 8백만원 - 문자 1통 당 14원
태국	19,643	19,643명*33원*5통=약 324만 원 ≒ 3백만원 - 문자 1통 당 1바트(33원)
터키	3,822	20*\$38=\$760(약 85만 원) ≒ 1백만원 - 20,000통(3,822명*5통) - 1,000통 당 \$38
프랑스	14,000	20원*5통*14,000명=약 140만 원 ≒ 2백만원 -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통신비 반영
필리핀	89,015	89,015*20원*5통=약 890만 원 ≒ 9백만원 - 문자 1통 당 평균 20원(0.8~0.9페소)
일본	500,451	기본요금(a): 1백만원*12월=12백만원 문자발송비(b): 20만명*200원*5통=200백만원 ※ 일본지역 재외국민 중 예상 문자수신 희망자 수 소계(a+b): 212백만원
합 계		235

주: 1. 추정 재외국민 수 기준(단, 일본은 추정 재외국민 수가 많아 20만명 대상 우선 실시)

2. 담당 공관을 통해 현지 통신비용 등 문의(국가별 계산 방식 상이)하여 통신비 산정

3. 2016년 4월 쿠마모토 지진 당시 발송된 문자 건수(5통) 기준

자료: 외교부

[2017년도 재외공관 안전문자 발송 사업 집행실적]

(단위: 통, 천원)

공관명	발송건수	집행액
주베트남대사관	0	0
주태국대사관	56,000	1,642
주이스탄불총영사관	43,743	370
주터키대사관	0 ¹⁾	112
주프랑스대사관	13,969	1,397
주필리핀대사관	258,197	2,579
주일본대사관	20,114	10,755
합 계	392,023	16,855

주 1) 주터키대사관은 2017년 초 테러발생 등으로 1년간 약 5,000개의 문자 발송을 예상하여, 현지 업체(Turk Telekom)와 문자발송시스템을 계약했으나, 이후 터키 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실제 문자 발송 이력은 전무함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재외공관 안전문자 발송 대상국의 재외국민 등록률이 저조하므로, 외교부는 해외 장기체류 재외국민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동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 재외공관 안전문자 발송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외교부는 베트남의 경우 현지 통신사의 한글 폰트 지원이 불가능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단순 집행실적보다 비상시 단체 문자 발송을 위한 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 중임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 장기체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안전문자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대상 국가별 재외국민의 총 수 및 연락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외교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⁹⁾에 따른 재외국민 등록제도를 활용하거나 현지 거주 우리 국민의 재외공관 방문 계기에 번호 등록 관련 동의서를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자 발송 대상자 및 연락처를 파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9)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7년도 문자발송 대상국의 재외국민 등록 현황을 보면 필리핀의 경우 추정 재외국민 중 등록자 수는 16,964명으로 재외국민 등록률이 18.2%에 불과하며, 베트남, 터키의 재외국민 등록률도 각각 25.4%, 29.6%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017년도 문자발송 대상국의 재외국민 등록 현황]

(단위: 명, %)

국가명	베트남	태국	필리핀	터키	프랑스	일본
추정 재외국민 수	124,445	20,442	93,071	2,332	15,161	453,096
등록자 수	31,570	10,800	16,964	690	11,673	438,567
재외국민 등록률	25.4	52.8	18.2	29.6	77.0	96.8

자료: 외교부

재외공관 안전문자 발송 사업은 해외 장기체류 재외국민에게 적시에 안전정보를 발송하여 재외국민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며, 집행실적보다는 비상시 문자 발송 체제 구축에 중점을 둔다는 점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재외국민 등록률 저조 등으로 인해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 및 연락처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는 현 상황에서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시행 및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교부는 해외 장기체류 재외국민의 정확한 파악 등 동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국제질병퇴치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17.1.1.)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설치되었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6조¹⁾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의 실질적인 주요 사업은 ‘질병퇴치사업’ 프로그램(2433)으로,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²⁾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³⁾은 질병 퇴치에 현장 전문성을 가진 NGO와 민간 활동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질병 퇴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계획 현액 56억 1,800만원 중 집행액은 51억 2,700만원이고 2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다.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⁴⁾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질병 퇴치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계획현액 154억 1,400만원 중 집행액은 152억 1,900만원이고 1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6조 ① 기금은 외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2)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은 감염병 예방·퇴치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보건기구(글로벌펀드, GAVI 등)에 특정한 용처를 지정하지 않고(unc earmarked) 동 보건기구의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비지정기여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특정 감염병 예방·퇴치 사업이라는 용처를 지정(earmarked)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지정기여금’으로 추진되는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과 구분된다.

3) 코드명: 국제질병퇴치기금 2433-401

4) 코드명: 국제질병퇴치기금 2433-402

[2017회계연도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및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민관협력 국제 질병퇴치사업	5,618	5,618	0	0	0	5,618	5,127	276	215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15,414	15,414	0	0	0	15,414	15,219	0	195

자료: 외교부

[2017회계연도 민관협력사업(ODA) 및 국제기구협력(ODA)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민관협력사업 (ODA)	32,933	32,933	-	-	-	32,933	32,477	-	456
국제기구협력 (ODA)	39,063	39,063	-	-	-	39,063	39,063	-	-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운영되는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과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은 외교부 일반회계의 ‘민관협력사업(ODA)⁵⁾’ 및 ‘국제기구협력 (ODA)⁶⁾’ 사업과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반회계 사업과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기금 사업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의 ‘민관협력사업(ODA)’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과 지원용도 및 사업방식, 단체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데, ‘민관협력사업(ODA)’에서는 질병예방 및 퇴치 분야 이외의 개발협력 사업에도 보조하고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

그러나 일부 ‘민관협력사업(ODA)’ 지원 사업은 질병예방 및 퇴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단체도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과 동일하여 사업 간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다.

5) 코드명: 일반회계 1638-403

6) 코드명: 일반회계 1635-404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과 민관협력사업(ODA) 비교]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민관협력사업(ODA)
재원	국제질병퇴치기금	외교부 일반회계
계획(예산)액	56억 1,800만원	329억 3,300만원
지원용도	민간단체의 개도국 질병퇴치사업	민간단체의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질병퇴치사업 포함)
사업방식	국고보조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국고보조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단체 지원 방식	한국국제협력단이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단체(NGO 등) 선정	
분야	질병예방 및 퇴치분야	교육, 고등교육,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에서 2017년도에 수행한 사업은 월드비전의 ‘우간다 동부 지역 부탈레자 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등 총 6개이다. 한편 일반회계의 ‘민관협력사업(ODA)’에서도 국내 NGO에게 개발협력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질병퇴치 및 보건 관련 사업이 총 33개이며, 이중 기금의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에서 지원한 단체와 동일한 단체에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은 8개이다.

[2017년 국제질병퇴치기금과 일반회계 간 민간단체 지원 유사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지원 단체	사업명	집행액
민관협력 국제질병 퇴치사업 (기금)	세이브더칠드런	우간다 모자보건 접근성 및 서비스 향상사업	626
	월드비전	우간다 동부 지역 부탈레자 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1,064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지역보건인력 활용 모성건강 관리사업	1,177
	더멋진세상	세네갈 모자보건 강화 및 환경 개선사업	507
	플랜한국위원회	부르키나파소 HIV 유행 및 모자수직감염 예방사업	791
	하트하트재단	말라위 중부지역 트라코마 퇴치사업	554
민관협력 (ODA) (일반회계)	세이브더칠드런	방글라데시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개선	399
		니제르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개선	397
		말리 모자보건 개선	397
		라오스 응오이/비엡캄 지역의 기초보건개선사업	395
	월드비전	방글라데시 모자영양증진	400
		르완다 영양보건 개선	380
	하트하트재단	탄자니아 안보건 서비스 체계 강화	269
		방글라데시 가지뿔 지역 안보건 증진 및 역량강화사업	254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일반회계의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또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과 지원용도 및 국제기구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데, ‘국제기구협력(ODA)’ 사업에서는 질병예방 및 퇴치 분야 이외의 개발협력 사업에도 보조하고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

그러나 일부 ‘국제기구협력(ODA)’ 지원 사업은 질병예방 및 퇴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이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과 동일한 경우도 있어 사업 간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다.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과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비교]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국제기구협력(ODA)
재원	국제질병퇴치기금	외교부 일반회계
계획(예산)액	154억 1,400만원	390억 6,300만원
지원용도	국제기구의 개도국 질병퇴치사업	국제기구의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질병퇴치사업 포함)
사업방식	직접 및 위탁(한국국제협력단)수행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국제기구 지원 방식	국제기구의 사업제안서 제출 후 심사, 약정 체결 후 사업비 송금	
분야	질병예방 및 퇴치분야	교육, 관광, 문화, 보건, 농림수산 등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에서 2017년도에 수행한 사업은 UNICEF의 ‘우간다 모자보건지원 강화사업’ 등 총 7개이다. 한편 일반회계의 ‘국제기구협력(ODA)’ 사업에서도 국제기구에게 개발협력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질병퇴치 및 보건 관련 사업이 총 3개이며, 이 중 기금의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과 동일한 국제기구에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은 1개이다.

[2017년 국제질병퇴치기금과 일반회계 간 국제기구 지원 유사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지원 단체	사업명	집행액
국제기구 협력 국제질병 퇴치사업 (기금)	UNICEF	우간다 모자보건지원 강화사업	1,691
		탄자니아 보건서비스 제공 모자보건사업	505
		말라위 모자보건 개선 사업	3,239
	UNFPA	모잠비크 영아 및 모성사망을 감소사업	1,515
		우간다 소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십대 임신 예방 및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사업	2,259
		탄자니아 모자보건시스템 강화 사업	4,200
	IVI	모잠비크 콜레라 백신접종 사업	1,810
국제기구 협력 (ODA) (일반회계)	WHO	WHO 피지 학교보건 증진사업	1,150
		항생제내성(AMR) 등 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대응능력 향상 사업	1,392
	UNICEF	교육 및 보건 개선을 통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지원 프로그램	4,638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부에 따르면, 민관협력사업(ODA) 중 보건 분야 사업은 기초보건서비스 제공, 모자보건 강화, 만성질환 대응 등 일반 보건 분야를 지원하는 반면, 기금 사업은 보건 분야 중에서도 감염병 예방 및 퇴치와 관련된 세부 전문분야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교부는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기금의 국제질병퇴치사업 중 모자보건 중심의 사업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시절 약정이 체결되어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2018년까지 안정적으로 마무리한 후 2019년부터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2017-2021년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추진전략(2017.9.28.)’에 따라 일반회계 ODA 사업과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기금사업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한상활용 청년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필요 등

가. 현 황

한상(韓商)활용 청년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외교부가 재외동포재단 출연¹⁾을 통해 수행하는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세계한상대회 개최 계기 등에 국내 청년인력이 필요한 한상기업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을 매칭하여 선발된 청년 인턴에게 현지체재비를 지원하고, 인턴 수료자 및 취업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 현액 11억 5,000만원 중 집행액은 11억 4,300만원이고 7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한상활용 청년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1,150	1,150	0	0	0	1,150	1,143	0	7

자료: 재외동포재단

나. 분석의견

한상활용 청년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832-401

첫째, 한상활용 청년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청년 인턴들의 인턴종료 후 정직원 전환 등 취업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를 통한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015년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세계한인무역협회와 협업하여 공단의 해외인턴지원사업 중 인턴 수요 한상기업 발굴 및 오프라인 행사 개최와 관련된 사업 일부를 추진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인턴지원사업이 중단²⁾됨에 따라 2016년에는 자체 예산으로 동 사업의 시범사업(1기)³⁾을 추진하였다.

2017년부터는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정규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매 기수 인턴 채용 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턴 종료 후 정직원 전환자 수로 측정한 취업률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재단은 2016년에는 취업비자 또는 장기체류비자 발급이 용이한 동남아시아 한상기업이 다수 참여한 반면 2017년에는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요 선진국(미국, 호주 등) 한상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동 지역은 취업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정직원 전환율이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은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취업비자 발급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한편, 단순히 청년 인턴들과 한상기업을 매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는 등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했던 해외인턴지원사업은 인턴 종료 후 정직원 전환 등 취업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성과 미흡으로 인해 2015년 중단되었다.

3) 세계한상대회 프로그램(한상&청년 Go Together)

[한상활용 청년해외진출 지원 사업 실적]

연도	기수	국가수	한상 기업수	채용희망 인원	채용인원 (A)	평균 인턴기간	인턴종료 후 정직원 전환자 수(B)	취업률 (B/A)
2016	1기	23개국	49개 기업	108명	36명	2개월	14명	38.9%
2017	2기	31개국	81개 기업	190명	36명	5.8개월	7명	19.4%
	3기	26개국	74개 기업	160명	70명	5.6개월	13명	18.6%
	4기	33개국	126개 기업	241명	91명	-	-	-

자료: 재외동포재단

둘째, 재외동포재단은 국회의 2017년도 예산 심의 시 편성되지 않은 국내설명회, 면접행사 등에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동 사업에 대한 국회의 2017년도 예산 심의 시 편성되지 않은 국내설명회(2,000만원), 면접행사(7,800만원) 등에 예산을 집행하였고, 2회 실시를 기준으로 사전교육 예산을 1,300만원 편성하였으나 3,800만원을 집행(3회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국회의 예산 확정 후 예산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한 사유에 대해 재단은 예산 확정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했던 설명회 및 면접행사 개최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사전교육의 경우에도 안전 및 해외 현지 이해교육 등 교육 강화를 위해 당초 계획한 1박 2일 교육에서 4박 5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2017년 한상활용 청년해외진출 지원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편성내역		세부집행내역	
	내 용	금액	내 용	금액
현지체재비(지원금)	150명 × 6개월 × 1백만원	900	123명 × 6개월 × 1백만원 × 0.72 ¹⁾ 27명 × 6개월 × 12백만원 ²⁾ × 0.88 ¹⁾	704
취업박람회	2회 × 50백만원	100	1회 × 100백만원	100
보험료 등 수수료	150명 × 0.5백만원	150	150명 × 0.5백만원	75
국내설명회	-		2회 × 10백만원	20
사전교육	2회 × 6.5백만원		3회 × 38백만원	114
면접행사	-		3회 × 26백만원	78
기타운영비	인쇄 10백만원, 공공요금 6백만원 공고료 및 광고료 30백만원		기념품, 소책자, 포스터, 업무보조 등	52
합 계		1,150		1,143

주: 1) 해외에 진출한 청년 인턴들 중 6개월 이내 조기 취업자 및 중도 포기자를 고려한 평균 지원률

2) 저소득층, 장기미취업자 등 취업애로층지원자에게는 월 120만원의 체재비를 지원

자료: 재외동포재단

그러나 재단이 2015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함께 동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2016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검토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수행 시 어떠한 행사가 필요한지를 충분히 예상하여 계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2017년부터 시작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심의 시 편성되지 않은 내역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재단의 사전계획 수립이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단은 향후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글로벌 협력 강화¹⁾ 사업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교 국가를 대상으로 특화된 전략사업을 통해 교류협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17년도 계획현액 87억 4,100만원 중 집행액은 28억 1,300만원이고 59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다.

내역사업인 지역전략사업 중 ‘한-베트남 특화사업’은 양국이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베트남 광남성에 ‘한-베 우호교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와 ‘베트남재향군인회’ 간 상호협력 의사록(2013.11.27. 체결)에 따라 건립이 추진되었다. 동 센터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에 예산을 지원하여 건설²⁾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이다. 2016년에는 일반수용비(210-01목)³⁾ 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 9,536만원으로 계획변경하여 설계용역비, 출장여비 등으로 1,602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는 58억 6,7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편성하여 자료번역, 통역비, 출장여비 등으로 1,024만원을 집행하였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국제교류기금 1733-405

2) 동 센터와 관련하여 우리 측에서 건설비를 전액 지원하고, 베트남 측에서는 토지를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3)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6년의 경우 동 사업의 세부계획이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가설계 및 설계를 재단이 직접 수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회계연도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글로벌 협력 강화	8,862	8,741	0	0	0	8,741	2,813	0	5,928
지역전략사업	7,829	7,708	0	0	0	7,708	1,787	0	5,921
한중양자 협력사무국	1,033	1,033	0	0	0	1,033	1,026	0	7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2016년 한-베 우호교류센터 건립 사업의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비 목	편성액		집행액	
	당초	변경		
일반수용비(210-01목)	500,000	376,161	계획설계 용역비 5,500	7,296
			통번역료 1,796	59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	100	보험료 등	1,209
임차료(210-07목)	-	3,000	차량임차료	7,294
국외업무여비(220-02목)	-	15,400	출장여비(항공료, 숙박비)	167
사업추진비(240-01목)	-	700	업무간담회비 등	-
합 계	500,000	395,361		16,025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2017년 한-베 우호교류센터 건립 사업의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비 목	편성액		집행액	
	당초	변경		
일반수용비(210-01목)	-	4,000	자료번역 및 통역비	2,552
임차료(210-07목)	-	2,000	차량임차료	636
국외업무여비(220-02목)	-	10,008	출장여비(항공료, 숙박비)	6,794
사업추진비(240-01목)	-	1,000	업무간담회비	257
민간경상보조(320-01목)	5,867,000	5,850,000	-	-
합 계	5,867,000	5,867,008	-	10,239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나. 분석의견

한-베 우호교류센터 건립 사업은 건설 및 운영 주관단체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센터 건립 후 운영비 조달 방안 미흡 등을 사유로 취소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 협의 및 확인을 통하여 과다한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베 우호교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58억 6,7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320-01목)⁴⁾로 편성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에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센터 건립이 취소됨에 따라 건립 후보지 답사 경비 등 1,024만원 이외의 모든 예산을 불용하였다.

재단에서는 주관단체의 현격한 역량 부족(센터 건립 후 운영비 마련 능력 전무, 연이은 지도부 공백으로 행정력 미흡, 단체에 대한 베트남 측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건립사업을 취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단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2016년 3차례 건립후보지를 답사하였으나 부지확정에 실패하였고, 2016년 12월 베트남 정부가 제시한 부지에 대해서는 참전자회 회장단 교체(2017년 3월)로 인해 2017년 5월에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 부지가 승인된 후 10월에 토지 무상사용 관련 양해각서 비공식 협의를 완료되었다. 그러나 11월에 참전자회는 회장 등 임원진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2017.8.23.)에 따른 조직정상화 및 건립 이후 센터 운영비 조달방안 마련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2017년 건립지원금의 차년도 이월을 요청하였고, 재단은 12월 「국가재정법」 제72조제1항⁵⁾에 의거 지원금 이월조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선행조치(베트남 측의 토지 무상제공을 약속하는 계약문서, 센터 건물의 설계 등)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센터 운영비 확보가 불투명하며, 참전자회 집행부의 부재 사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

4)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센터 건축비 외에 추가적 국고·기금 재원 투입은 불가하며 완공 이후 센터 운영비 조달은 참전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 센터 건립을 재단의 조직·인력 확대와 연계시키지는 않도록 한다는 점 등의 취지에 따라 2017년 예산 심의 당시 기획재정부와 재단은 공사비 예산을 민간경상이전으로 참전자회에 일괄 전도하고 사업을 종료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하였다.

5) 「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 참전자측에 이월 불가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참전자회는 임원 직무정지 등 조직상황, 예산 이월 불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베트남 측에 통보(2018.1.26.)하였다.

[한-베 우호교류센터 건립 사업 연도별 추진경과]

연 도	추진경과
2016	4~11월 재단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3차례 베트남 현지 방문(4월: 땀끼시, 호이안, 8월: 호이안, 11월: 디엔반현), 건립후보지 답사: 매번 베트남측 사정(해당 부지 일부가 주민에 장기 임대된 상태, 베트남 정부의 더딘 일처리 등)으로 부지 확정 실패 12월 베트남측에서 대체 후보지로 팡남성 즈위 수옌현 소재 부지를 제시
2017	5.10. 참전자회 회장단 교체(2017.3.21. 정진호 회장 취임), 부지 현장 답사 실시 6.30. 참전자회에서 KF에 센터 건립부지 승인 요청 7.19.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의 검토의견 공문 접수 7.26. 참전자회에 부지 승인 통보 공문 발송 8.23. 참전자회 회장 등 임원진(14명)에 대해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8.31 재단은 참전자회에 센터 건립의 적시 추진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9.8. 참전자회가 베트남 측에 토지 무상사용 계약의 조속 체결을 요청 10.24. 3자(참전자회, 팡남성 외무청, 주위 수옌현 인민위원회)간 양해각서 비공식 협의 완료 11.1. 재단은 참전자회 측에 향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운영예산 조달방안 제출을 요청 11.14. 참전자회는 조직정상화 및 센터 운영비 조달방안 마련 이후 센터 건립을 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同건립지원금의 2018년도 이월을 요청 12.12 재단이 참전자회에 예산 이월 불가 통보
2018	1.26. 참전자회는 사업 중단 결정을 베트남 측(팡남성 인민위원회, 팡남성 외무청, 주위 수옌현 인민위원회)에 통보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동안 동 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센터건립 부지 확정 지연으로 2016년 편성된 설계비 5억원 중 가설계비 및 건립 후보지 답사를 위한 경비 등 1,600여만 원 이외의 모든 예산이 불용된 바 있고, 센터 건립 후 운영을 맡기로 한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가 팡남성인민위원회에게 5백만 달러의 센터 건립 예산 투입을 약속하는 MOU를 재단과 협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체결하는 등 재단과 참전자회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⁶⁾ 또

6) 외교통일위원회,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2017.8.), p.216

한 센터 건립 후 운영비의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
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자체 수익금에 대한 계획을
마련한 후 공사비를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지적⁷⁾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 운영을 담당하게 될 단체
의 운영비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
을 통하여 과다한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7)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2016.10.) p.27.

가. 현 황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¹⁾ 사업은 EU·서유럽 중유럽 지역 국가·러시아·유라시아 지역 국가들, 그리고 유럽지역 소다자 협의체 등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16억 7,500만원 중 집행액은 14억 2,800만원이고 8,5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유럽지역국가 와의 교류협력 강화	1,625	1,625	0	50	0	1,675	1,428	162	85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사업은 업무 수행 및 집행부서와 예산 편성부서 간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433-401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²⁾는 통일 및 체제 전환 경험국인 독일의 경험을 공유하여 향후 통일을 위한 외교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한·독 정상회담 결과 후속조치로 2014년부터 개최되었으며, 2017년도 예산 총 6,000만원 중 3,600만원이 집행되었다.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최일자	주 제	예산액	집행액
1차	2014.10.31.	독일통일 외교정책 개관 및 성공요인 분석	0	10
2차	2015.2.5.	정치 측면에서의 독일통일 외교정책 분석	65	49
3차	2015.10.12.	사회·문화 측면에서의 독일통일 외교정책 분석		12
4차	2016.5.24.	군사·안보 측면에서의 독일통일 외교정책 분석	65	36
5차	2017.4.27.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60	36

자료: 외교부

동 예산은 유럽국 소관인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나 업무 수행 및 예산 집행부서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으로, 업무 수행 및 집행부서와 예산 편성부서 간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교부는 동 사업의 성격과 업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평화외교기획단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동 사업을 2014년 8월 유럽국에서 평화외교기획단으로 이관하였고, 해당 연도 회의 관련 예산은 유럽국과 평화외교기획단 예산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2015~2017년도에는 유럽국에 편성된 동 사업 예산을 평화외교기획단에서 사용하였다.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이 유럽국 소관인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집행된 사유에 대해 외교부는 2016년도 예산 편성 시 동 사업의 유럽국 재이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가 2017년도 예산 편성 시까지 지속되다가 2017년에 동 사업이 종료되면서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2)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는 전 외교장관, 전 주독대사, 주라오스대사, 유럽국장, 평화외교기획단장, 교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통일 경험을 공유하여 향후 통일을 위한 외교환경을 조성하려는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사업은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에 해당한다는 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3항³⁾에서 동 업무를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사업은 평화외교기획단 예산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부서와 집행부서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한반도평화교섭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2.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에 관한 대책의 수립 및 교섭
3.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4.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5. 북한 핵문제 관련 유엔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 업무
7.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외교업무
8.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
9.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10.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11.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기획·조정
12. 통일 문제와 대북한 정책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3.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
14. 재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외교업무의 총괄·조정

- 4)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사업은 2017년도에 종료되었으나, 2018년도 예산에는 “체제전환 경험 공유 협의체 사업”이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외교부는 동 사업을 통해 2017년 종료된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독일의 통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개최중인 한-V4(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제전환 경험 공유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 현 황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¹⁾ 사업은 중남미지역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진출지원,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확보, 對 중남미 지역협력파트너로서의 위상 확대 및 국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현액 43억 3,300만원 중 집행액은 41억 3,400만원이고 1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4,323	4,323	0	10	0	4,333	4,134	0	199

자료: 외교부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는 전국 대학생 또는 포르투갈어 관련 교육 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실시²⁾되고 있으며,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 진출자를 선발한 후 수상자 선정 및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3년 제2회 경연대회부터는 외교부가 한-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 등과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외교부는 2017년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내역사업 예산으로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432-401

2) 제1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2012.9.26.)는 지식경제부, 한브라질소사이어티, 한중남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사업은 국내 중남미지역 전문가 그룹을 초청하여 중남미 유망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각 분야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 4월 대통령 중남미 순방의 후속조치 사업 중 하나로 2016년도에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2017년도 예산에는 9,000만원이 편성되어 6,6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7년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예산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행사명	날 짜	주 최	결 과	편성액	집행액
제1차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6.10-11.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LASAK), 외교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중남미 협력방안 논의	90	10
제2차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6.13.	한-브라질 소사이어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외교부	· 對브라질 우리기업 진출 환경 분석 및 유망 업종별 진출 방안 논의		2
제3차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9.21.	한-중남미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외교부 등	· 對중남미 우리기업 진출 유망 분야 및 방안 논의		5
제4차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10.20.	한중남미협회, 외교부 등	· 중남미 내 민관협력 사업 (PPP) 동향 논의 및 중남미국 개최 행사 성과 공유		9
제5차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12.11.	외교부	· 전직 중남미 지역 대사와의 중남미 정세 분석 및 對중남미 외교 협력 방안 논의		14
제6차 중남미 전문가협의회	12.13.	외교부	· 주한중남미외교단과의 중남미 정세 논의를 통한 국가별 협력 관심사항 파악		18
제6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11.10.	한-브라질 소사이어티, 외교부 등	· 포르투갈어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對포어권 외교 저변 확충	0	8
합 계				90	66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사업은 국회의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고 타 내역사업 예산 또는 중남미국 기본경비를 이용하여 추진되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명확히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6~2017년에는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내역사업 예산을 사용하여 집행하였고, 2015년에는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대중남미 전략적 협력 세미나 개최” 내역사업 예산을, 2014년에는 ‘중남미국 기본경비’ 예산을, 2013년에는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중남미 중점협력국가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 내역사업 예산을 사용하여 집행하였다.

[2013~2017년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 집행 사업명(내역사업명)	내 용	금 액
2017 (제6회)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수상자 상금(7명)	2.7
		심사자 사례비(8명)	2.7
		사회자 및 진행요원 사례비(4명)	0.5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등	1.5
		심사위원 교통비(2명)	0.2
		심사위원 및 참가자와의 간담회 등	0.6
		합 계	8.2
2016 (제5회)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수상자 상금(7명)	3
		심사자 사례비(8명)	3.4
		사회자 및 진행요원 사례비(4명)	0.5
		현수막, 자료집 등 제작	1.5
		심사위원 교통비(1명)	0.1
		심사위원 및 참가자와의 간담회 등	0.5
		합 계	9
2015 (제4회)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대중남미 전략적 협력 세미나 개최)	수상자 상금(7명)	2.5
		심사자 사례비(10명)	2.7
		사회자 및 진행요원 사례비	0.3
		현수막, 자료집 등 제작	1.6
		합 계	7.1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 집행 사업명(내역사업명)	내 용	금 액
2014 (제3회)	중남미국 기본경비	수상자 상금(7명)	1.5
		심사자 사례비(6명)	1
		현수막, 자료집 등 제작	1
		진행요원 사례비(2명)	0.1
		심사위원 교통비(1명)	0.1
		합 계	3.7
2013 (제2회)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중남미 중점협력국가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	수상자 상금(7명)	1.5
		심사자 사례비(4명)	0.8
		현수막, 자료집 등 제작	3.2
		진행요원 사례비(4명)	0.2
		심사위원 교통비(1명)	0.1
		합 계	5.8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집행에 대해 외교부는 對포르투갈어권 외교 인력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민·학계 중남미 및 브라질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동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므로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는 사업 목적 및 방식 등이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사업과는 엄연히 구별되며,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사업 예산으로 국회의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을 거친 후 별도 사업인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집행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명확히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수상자 상금을 일반수용비(210-01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관련 예산 집행 시 집행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가 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행사물품구입 및 자료제작비 목적으로 편성된 일반수용비를 사용하여 2017년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수상자 7명에게 상금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관련 예산 집행 시 집행지침 준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7년 제6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관련 예산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 목	각목명세서(중남미 전문가 협의회)		집행내역(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일반수용비(210-01목)	행사물품구입 및 자료제작비	17	수상자 상금(7명)	2.7
	통역사례비	4	심사자 사례비	2.7
	자문료 지급	6	사회자 및 진행요원 사례비	0.5
	행사개최 부대경비	3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등	1.5
임차료(210-07목)	회의장 및 관련기기 임차	18	-	-
국외여비(220-02목)	후속조치 협의 조사단 파견	30	심사위원 교통비(2명)	0.2
사업추진비(240-01목)	오만찬 및 업무협의	12	심사위원 및 참가자의 간담회 등	0.6
합 계		90	-	8.2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주요 행사 개최, 주재국 외교단 관련 각종 공개 활동, 주재국 방문 국내인사 출장 성과제고를 위한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재외공관 주요행사비¹⁾를 편성하고 있다. 2017년도 예산현액 78억 6,500만원 중 집행액은 70억 6,800만원이고 7억 9,7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	7,865	7,865	0	0	0	7,865	7,068	0	797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재외공관 주요행사비에서 국경일 행사 개최 예산이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관이 동 사업에서 국경일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국경일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행사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재외공관 주요사업비’의 내역사업이었던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²⁾’ 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7033-402

2) 코드명: 일반회계 7033-412

그러나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84개 공관이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사업에서 국경일 행사 예산을 집행하였다. 국경일 행사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은 약 44만 5,000USD로,³⁾ 이는 2017년도 주요행사비 집행액의 약 6.7%에 달한다.

외교부는 국경일행사 개최 비용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있게 집행하고 주요행사비로부터의 예산 전용을 지양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관에서 공관별 국경일행사 예산 배정액이 국경일행사를 개최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외공관 주요행사비는 우리 공관의 주요 외교활동 재원이므로 행사 개최 비용으로 집행되는 것은 자칫 외교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 더욱이 2018년도에는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예산이 감액되어⁴⁾ 재외공관 주요행사비에서 국경일 행사 개최에 부족한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교부는 국경일행사 예산을 별도로 분리한 취지에 맞게 ‘재외공관 주요행사비’에서 국경일행사를 개최하지 않도록 집행을 감독하고, 향후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개최’ 예산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공관의 2017년도 지출 내역에서 ‘국경일’이 포함된 지출 금액의 합으로, 공관이 지출 항목에 ‘국경일’이라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때 그 규모는 44만 5,000USD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4)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3,045	2,575	3,212	2,931	2,784
집행	2,683	2,458	3,115	2,850	-

가. 현 황

공공외교 역량강화¹⁾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지식·정책 등 사안별 매력자산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증진시키고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161억 7,200만원 중 집행액은 147억 8,400만원이고 13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다.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의 2017년 신규 사업인 ‘유럽지역 다큐멘터리 감독 및 제작자 초청’ 사업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유산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을 통해 유럽인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2017년 예산 5억원이 편성되어 2억 600만원이 집행되었다.²⁾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731-403

2) 동 사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 이관되어 2018년에는 공공외교기반확대(국제교류기금 1733-404) 사업에 4억 8,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공외교 역량 강화	16,004	16,004	173	△5	0	16,172	14,784	43	1,345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11,304	11,304	10	0	0	11,314	10,736	11	567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2,300	2,300	138	0	0	2,438	1,969	22	447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2,400	2,400	25	△5	0	2,420	2,079	10	331

자료: 외교부

[2017회계연도 유럽지역 다큐멘터리 감독 및 제작자 초청 사업의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수탁기관	건 명	내 용	계약액	집행액
한국국제 교류재단	진행경비	소모성 물품비, 간담회비 등	500	5.7
	공공요금 및 제세	여행자보험 가입비		0.3
	임차료	차량 임차료		33.7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97.7
	인건비	전담인력(계약직) 인건비		21.1
	기타용역비	통역, 제안서평가위원 사례비 등		48.1
합 계			500	206.6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나. 분석의견

유럽지역 다큐멘터리 감독 및 제작자 초청 사업은 다큐멘터리 제작 여부가 방한 감독 및 제작자에게 달려 있다는 점, 구체적인 방영 계획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럽지역 다큐멘터리 감독 및 제작자 초청 사업은 유럽 지역 내 주요 국가에서 한국 이미지가 기대수준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상존하여, 그간 K-pop, K-드라마 등 대중문화 중심으로 한국 문화가 홍보되어온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 지역 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 및 인지도 제고 방안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2017년 예산에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화적 기반과 저력(대중문화로 알려진 한류보다는 우리 문화의 근원적 요소)을 우리의 일방적인 시각이 아닌 외국인(특히 유럽인)의 시각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유럽 지역 내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유럽의 저명한 다큐멘터리 작가·감독을 방한 초청하여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 유산의 정취를 충분히 향유토록 지원하고, 이들의 시각으로 유럽 지역 내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 사업이 추진되었다.

외교부는 동 사업을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였고, 루마니아, 체코, 프랑스 등 총 5개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및 제작자 10명을 유관 재외공관 및 KBS 다큐멘터리 전문가들과 함께 선정, 방한 초청하여 2주간 민속문화재 방문, 무형문화재 기능인 면담, 템플스테이 등의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외교부는 사업 추진 결과 방한한 6팀 중 프랑스와 헝가리, 루마니아 각 1팀이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7년 유럽지역 다큐멘터리 감독 및 제작자 초청 사업 결과]

국가	감독 및 제작자	결 과
루마니아	Claudiu Mitcu 감독, Alina Tarba 프로듀서	한국 관련 다큐 촬영을 위해 재방한 논의 중
체코	Karolina Koci 감독	-
프랑스	Laurent Mini 감독, Anne Le-Greves 감독	태국, 캐나다와 공동제작으로 다큐 시리즈 한국편 촬영을 위해 재방한 논의 중
프랑스	Claire Alby 감독, Francois Klein 감독	-
핀란드	Liisa Karpo 감독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제작자들과 한국 관련 다큐 제작 가능성 논의, 모색
헝가리	Szabolcs Szirony 감독, Kovacs Mark 조연출	제주 해녀 문화 관련 다큐멘터리 주제로 전주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출품 예정
총 5개국 6팀 10명		-

자료: 외교부

[2017년 유럽지역 다큐멘터리 감독 및 제작자 초청 사업 주요 일정]

날 짜	주요일정
11월21일(화)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전통마을 방문(외암리민속마을)
11월22일(수)	전주국립무형유산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및 전주영화제작소 방문 여명 카메라박물관 관람
11월23일(목)	전주 오목대 관람 전주 중앙로 알라딘문고 방문 한국 무형문화재 기능인과 만남(진다리봇필장안명환) 광주전통문화관 방문
11월24일(금)	한국 무형문화재 나전칠장 만남(나전칠장문화재김기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 및 해설투어 전라남도 최대 전통시장 방문(양동시장) 광주 예술인의 거리 방문
11월25일(토)	제주 해녀박물관, 감귤박물관
11월26일(일)	송악산 인근 바다 관람 및 해녀의 집 방문 마라도 방문
11월27일(월)	제주 민속촌, 어명아방 잔치마을, 성산일출봉 방문
11월28일(화)~30일(목)	백담사 템플스테이
12월1일(금)	KF 교류이사 주최 오찬 부산국제영화제 서울사무소 방문 동대문 쇼핑몰 방문
12월2일(토)	동대문 DDP, 경복궁, 인사동 방문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부에 따르면 동 사업의 최종 목표는 방한 인사들로 하여금 귀국 후 자국 또는 유럽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한 감독 및 제작자가 사정 변경 등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감독과 제작자에게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감독과 제작자의 자유로운 창작의 결과물이므로 제작되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제작된 다큐멘터리의 구체적인 방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파급력 있는 송출 수단을 적시에 접외하지 못할 경우 작품이 사장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동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방한 감독 및 제작사 선정 시 다큐멘터리 제작 여부 관련 협의를 거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제작된 다큐멘터리의 송출수단 확보와 관련한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³⁾

3) 외교부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판권(저작권)을 제작자에게 귀속시킬 계획인데, 이 경우 제작자의 능력에 따라 다큐멘터리 방영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다큐멘터리 판권의 귀속처에 대해 재검토하고, 만약 제작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구체적인 방영계획을 갖춘 제작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외교부는 2015년부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란 단절되고 파편화된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유라시아 대륙 내 평화를 달성하고자 2013년 10월 유라시아 컨퍼런스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구상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9억 7,000만원 중 집행액은 1억 7,100만원이고 7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920	920	100	△50	0	970	171	0	799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 확대	437	437	0	0	0	437	0	0	437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복합협력사업	483	483	100	△50	0	483	171	0	312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433-403

첫째,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경우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은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 가스관, 전력망 등의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복합 교·물류 네트워크 구체화 및 연계성 증진을 목적으로 관련국 간 공동연구 및 연구용역 실시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외교부는 동 사업의 일환으로 2014~2015년 간 러-북 국경~나진항 간 연결철도를 개보수하여 북한 나진항을 통해 화물을 제3국으로 수출입할 수 있도록 철도 및 항만을 운영하는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현장실사 2회 및 시범운송 3회)하였다. 실질적인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기업들의 직접 투자로 마련하며, 외교부는 사업을 위한 국가 간 조율·관계부처 회의·전문가 자문 등에 동 사업비를 집행한다.

동 내역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예산액 대비 2015년 26.3%, 2016년 42.4%, 2017년 0.0%이다.

[최근 3년간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 확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5	700	0	△373	327	184	64	79
2016	700	64	3	767	297	58	412
2017	437	0	0	437	0	0	437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외교부는 2015년에는 한-러 사업자간 협상, 북한 지역 홍수로 인한 나진 지역 철도 유실 등에 따라 동 사업 예산의 집행이 저조하고, 2016년의 경우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으로 인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2016.3.)에 따라 4월 이후 남북러 3각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기존에 추진되던 연구용역비 및 남북러 3각 협력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비만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도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유지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조치 등으로 인해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전면 중단 상황이 지속되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복합협력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대체 행사인 ‘유라시아-북극항로 연계성 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복합협력사업은 유라시아지역의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위한 ‘창조의 대륙’ 구현을 위해 유라시아 주요 권역 국가의 차세대 리더, 기업인,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외교부는 2016년에 동 내역사업에서 ‘유라시아 기차 페리 환황해 국제회의’ 및 ‘환동해/환황해 연계성 행사’를 개최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여 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4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복합협력사업 주요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세부 내용	예산액	집행액
2016	유라시아 기차 페리 환황해 국제회의 개최	중국과 러시아 지역을 선박·열차페리·고속철도 등으로 이동하며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변 정세로 인해 행사 개최가 여의치 않아 러시아에서 ‘유라시아-북극항로 연계성 행사’를 개최	500	329
	환동해/환황해 연계성 행사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극동지역만을 대상으로 축소·분리하여 러시아에서 ‘극동지역 연계성 행사’를 개최		
2017	한-몽골 유라시아 인프라 협력 포럼 등 소규모 행사 실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및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 등의 여파가 이어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사업 대폭 축소 및 취소	483	171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유라시아 기차 페리 환황해 국제회의’나, ‘환동해/환황해 연계성 행사’는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행사성 사업일 뿐 아니라, 행사 개최가 여의치 않아 외교부가 러시아에서 대체 행사로 개최한 ‘유라시아-북극항로 연계성 행사(2016.6.13.~17.)’의 경우 문화공연 및 현장 시찰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행사성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무르만스크는 북극항로의 유럽 중착지이자 시발지이며 북극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원자력 쇄빙선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부정책의 현실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 필요했으며, 한국 공연단과 러시아 거주 고려인 공연단의 합동 공연, 한국영화제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호감도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입장이다.²⁾ 또한 외교부는 동 행사를 계기로 러 극지연구소 부소장 및 무르만스크 부주지사와의 면담을 실시하는 등 인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향후 외교부는 유라시아 권역의 실질적인 인적교류 활성화, 연계성 증진 및 경제 파트너십 강화라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동 내역사업이 유라시아 지역과의 교류 증진에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라시아-북극항로 연계성 행사 주요 프로그램]

날 짜	주요 일정	비 고
6. 14.(화)	한-러대화 정경 컨퍼런스	본부 측 참여자: 북극대사, 1등 서기관 등 8인
	이범진 공사 순국비 참배	
	러시아 극지연구소 부소장 면담	
	문화시찰(여름궁전 등)	
	상트페테르부르크 문화공연	
6. 15.(수)	원자력 쇄빙선 레닌호 시찰	장소: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무르만스크
	알로샤 동상 방문	
	류카빈 무르만스크 부주지사 면담	
	무르만스크 한국영화제	
6. 16.(목)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무르만스크 항만시찰	
	무르만스크 문화공연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시키고자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취지를 계승하여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외교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복합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의 사업(극동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요 경험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과 중복되지 않도록 북방위 사업 미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유라시아 대륙 내 관련 사업들이 이행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사전에 조성·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가. 현 황

MIKTA는 멕시코(M), 인도네시아(I), 한국(K), 터키(T), 호주(A)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외교부는 2015년부터 MIKTA 중견국 외교¹⁾ 사업을 추진하면서 MIKTA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국제적 기여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2017년도 예산현액 3억 7,400만원 중 집행액은 3억 3,300만원이고 4,100만원이 불용되었다.

MIKTA 영 리더스 캠프 사업은 미타 외교 관련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증대하고 정책지지 세력을 확보하며, 국민 공감형 정책 마련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연 1회 추진한 사업으로, 미타에 관심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대학원생 및 국내체류 유학생 대상 2박 3일 캠프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7회계연도 MIKTA 중견국 외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MIKTA 중견국 외교	374	374	0	0	0	374	333	0	41
MIKTA 외교장관 회의 등 참석	100	100	0	△21	0	79	53	0	26
MIKTA 관련 세미나	102	102	0	△29	0	73	47	0	26
MIKTA 아웃리치 활동 및 협력사업 수행	172	172	0	50	0	222	233	0	△11

자료: 외교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531-408

나. 분석의견

MIKTA 영 리더스 캠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MIKTA 영 리더스 캠프 사업은 국회의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고 추진되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외교부는 MIKTA 영 리더스 캠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6~2017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MIKTA 아웃리치 활동 및 협력사업 수행’ 내역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였다. 2016년에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위탁사업비(1,000만원)에 임차료에서 3,4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총 4,389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는 일반수용비에서 2,400만원, 임차료에서 2,3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총 4,465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년 MIKTA 영 리더스 캠프 사업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집행액	집행내역
시설사용	12,000,000	숙박료, 연회장 등
식비	9,614,600	조식, 중식, 석식 등
인건비	4,650,000	행사 코디네이터, 미디어스텝 등
입장료	877,000	설악산 국립공원 등
교통비	3,400,000	45인승 버스(2박 3일)
제작/홍보비	2,651,938	현수막, 배너, 수료증, 티셔츠 등
일반운영비	3,101,300	운영비, 보험 등
운영수수료	4,300,000	대행수수료
부가세	4,059,484	10%
합 계	44,654,320	원단위 절삭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처음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 외교부의 제1차 캠프 개최 계획에 따르면 차후 학술 연구 연계 등 사업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MIKTA 영 리더스 캠프 사업이 국회의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되어 온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명확히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둘째, MIKTA 영 리더스 캠프 사업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1차 MIKTA 영 리더스 캠프에는 총 30명이 참가하였는데, 참가자 국적별 인원은 한국 15명, 호주 8명, 멕시코 3명, 인도네시아 2명, 캐나다 1명, 독일 1명으로 MIKTA의 구성 국가 중 하나인 터키 국적 참가자는 없었으며, MIKTA와 무관한 국적 참가자가 2명이었다. 다만 제2차 캠프에서는 한국 20명, 멕시코 6명, 인도네시아 3명, 터키 5명, 호주 6명 등 MIKTA 구성 국가 국적 40명이 참가하였다.

MIKTA 영 리더스 캠프 사업은 1일차에 초청연사 강연 및 조별 토론 시작, 2일차에 문화행사 및 조별 발표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여 추진되었는데, 조별 토론 주제는 ‘믹타의 가시성, 유용성,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1차)’, ‘자유무역주의 퇴조, 시리아 난민 위기, 북핵위협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국제사회에 대한 제언과 므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제2차)’이었으며,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토론한 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6~2017년 MIKTA 영 리더스 캠프 사업 주요 프로그램]

2016년(제1차)			2017년(제2차)		
일 시		내 용	일 시		내 용
1일차(11.3)	오후	개회식	1일차(11.2)	오전	발대식
		초청연사 강연		오후	초청연사 강연
	저녁	조별 토론 및 만찬			조별토론
2일차(11.4)	오전	조별 토론	2일차(11.3)	오전	조별 발표 준비
	오후	문화행사		오후	지역탐방, 조별 발표
	저녁	조별 발표, 환송 행사		저녁	환송 만찬
3일차(11.5)	오전	수료	3일차(11.4)	오전	수료식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목적은 ‘MIKTA에 대한 차세대의 인지도 제고, 대국민 접촉점 확대’인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전체 참가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의 프로그램에서는 므타 관련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 및 발표가 핵심인데, 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청취하여 국민공감형 정책 입안·추진에 참고하고자 하는 외교부의 의도를 감안하더라도, 동 사업의 목적이 정책 제언 수립이 아니라 므타 외교 관련 대국민 소통 증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다수의 인원에게 므타 외교 콘텐츠를 전달하거나 상호교류 기회 제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사업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외교부는 향후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일회적 캠프에서 나아가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주요 국제대학원 수업과 연계하거나 주요 학회·연구기관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 목적이 혼재되어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계획 수립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현 황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¹⁾ 사업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양자관계를 구축하고, 대중동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정부 참여를 확대하며, 아중동 지역 외교 인프라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현액 37억 6,800만원 중 집행액은 34억 2,000만원이고 3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다.

한-아프리카 포럼은 ‘아중동 외교정책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강화 및 고위 인사 간 네트워크 공고화 등을 위하여 우리 외교부와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다. 2006년 3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순방 중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KIAD)”를 발표하였고, 동 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로 한-아프리카 포럼이 개최되었다.

[2017회계연도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3,778	3,778	0	△10	0	3,768	3,420	11	337
아중동 외교 정책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926	926	0	0	0	926	862	0	64

자료: 외교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434-401

나. 분석의견

한-아프리카 포럼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 불용 및 조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AU와의 면밀한 협의 및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아프리카 포럼은 2006년 11월 서울 개최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3차까지 개최되었으나, 한-아프리카 간 관계 발전을 위하여 당초 3년 주기를 2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2014년 제4차 포럼 개최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제4차 포럼 개최 예정지였던 부르키나파소의 정세불안 및 에볼라 발생 등으로 개최가 어려워지자 2014년도 예산 9억 5,100만원 중 4,300만원에 대한 집행만 이루어졌다.

이후 아프리카연합이 2015년 4월 포럼 개최지를 에티오피아로 변경하여 2015년 12월 개최를 추진하였음에도 아프리카연합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포럼이 개최되지 못했고, 한-아프리카 포럼이 개최되지 않는 연도에 시행하는 한-아프리카 포럼 회기간 회의²⁾만을 개최하여 2015년도 예산 집행률이 39.9%로 저조하였다.

2016년 12월에 제4차 포럼이 개최되었으나, 과도한 위탁사업비 및 임차료 전용 등 실제 집행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 바 있다.³⁾

[2014~2016년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예산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4	951	43	4.5
2015	153	61	39.9
2016	725	376	51.9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후 포럼 당시 협의사항 이행 점검 및 향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회기간 회의를 개최한다.

3) 외교부는 예산 편성 당시 국내 소재 업체를 고용할 계획으로 위탁사업비(210-15목)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아프리카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할 만한 위탁업체가 부재하자 문화행사 공연단 계약비용 1,900만원을 제외한 1억 3,100만원을 국외업무여비(220-02목)로 전용하였고, 예산 편성 시 에티오피아 내 호텔을 임차할 계획이었으나, AU측에서 AU 회의장 활용을 제안함에 따라 절감한 5,000만원 또한 국외업무여비로 전용하였다.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현황]

차 수	기 간	장 소
1차	2006.11.7.~9.	서울
2차	2009.11.23.~25.	서울
3차	2012.10.17.~18.	서울
4차	2016.12.6.~7.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5차	2021년(예정)	서울(예정)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에는 한-아프리카 포럼 회기간 회의를 3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책협의회 1회로 대체하여 개최함으로써 예산 집행률은 19.3%에 불과하다.

외교부는 2016년에 개최한 제4차 한-아프리카포럼의 후속조치 이행 등 외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회기간 회의를 3회 개최로 계획하였으나, 아프리카연합의 집행위원회 교체 등 협의지연 상황이 발생하였고 아프리카연합의 고위급 인사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기간 회의가 참석자 일정 협의 끝에 개최되지 못하여 결국 이를 대체하여 국장급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 1회만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연합(AU) 등 아프리카 협력 파트너들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2014~2016년간의 포럼 개최 상황과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2017년 예산 편성 시 한-아프리카 포럼 회기간 회의를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한 후 정책협의회 1회로 대체하여 개최한 것은 동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이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AU와의 면밀한 협의 및 전년도 사례를 감안한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한-아프리카 포럼과 관련한 과도한 예산 조정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7년 한-아프리카 포럼 예산 편성 및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명)	예산 편성내역		예산 집행내역	
	산출내역	금액	세부내용	금액
일반수용비 (210-01목)	한아프리카 포럼 회기간 회의	34	제1차 한-AU 정책협의회	1
임차료 (210-07목)	한아프리카 포럼 회기간 회의	10	제1차 한-AU 정책협의회 장소 등 임차	7
국외업무여비 (220-02목)	한아프리카 포럼 회기간 회의	78	제1차 한-AU 정책협의회	16
사업추진비 (240-01목)	한-아프리카 포럼 회기간 회의 업무협약	13	제1차 한-AU 정책협의회	2
합 계		135		26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¹⁾ 사업은 국격을 제고하고 정치·경제 등 여타 분야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협력체(UNESCO)를 통한 국제적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문화예술의 적극적인 대외홍보 및 양자 간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18억 7,600만원 중 집행액은 16억 3,000만원이고 2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다.

대유네스코 외교강화 사업은 주요 회의 참석, 유네스코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등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UNESCO에 대한 외교적 노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7억 5,800만원 중 집행액은 5억 6,800만원이고 1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1,861	1,861	15	0	0	1,876	1,630	0	246
대유네스코 외교 강화	762	762	15	△19	0	758	568	0	190

자료: 외교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1731-401

나. 분석의견

2017년 대유네스코 외교강화 사업 예산이 외교활동 강화 필요성에 의해 전년도에 비해 2억 800만원(37.5%) 증액되었음에도 1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對)유네스코 외교강화 사업은 책임 있는 선진문화외교의 일환으로 문화·교육·과학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유네스코에 대한 외교활동 강화 필요성에 따라 2008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유네스코 관련 주요 회의·행사 개최, 참석 및 초청을 그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00만원(37.5%)이 증액된 7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회의 및 행사 개최 예산이 1억 2,700만원, 주요 회의 참석·초청 및 주요인사 접촉을 위한 예산이 8,100만원 증액되었다.

외교부는 2017년에는 ① 유네스코 사무총장, 집행이사국, 세계유산위원국 선거 등 주요 선거가 실시되고, ②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관련 보고서 제출, 기록유산 제도 개선 결정 등 민감한 현안이 다수 예정된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對)유네스코 외교성과 극대화를 위한 활동 강화 필요성에 따라 동 사업예산을 증액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2017년 예산 집행률은 74.5%로, 불용액 1억 9,000만원은 전년 대비 예산 증액분인 2억 800만원과 유사한 규모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17년도 유네스코 주요회의 및 행사를 계획했으나, 회의 및 행사 추진 과정에서 행사 규모 축소 및 담당자 간 일정조율 실패, 타부처·기관의 행사 비용 부담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18년에도 2017년과 같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7년 대유네스코 외교강화 사업 예산 편성 및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추진 내용	예산액	집행액	불용 / 초과집행 사유
유네스코 관련 책자 발간	65	54	-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리뷰 회의	58	0	담당자 간 일정 조율이 어려워 12월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대체
세계시민교육 관련 세미나	58	0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행사경비 부담
유네스코 관련 공관 외교활동 지원 등	57	57	-
제41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대행사 개최	0	25	세계유산 해석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환기 및 세계유산 관련 한국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 목적으로 추진
제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개최	84	38	계획 대비 참가자 수 감소로 인한 행사 규모 축소로 담당 용역업체 집행액 감소
유네스코 전략포럼	58	22	행사 규모 축소에 따른 임차료 등 집행액 감소
제12차 무형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 계기 외교부 주최 오찬	84	27	정부간위원회 행사 비용을 문화재청에서 부담하여 외교부는 정부간위원회 의장국 주최 부대행사(오찬) 비용만 부담
유네스코 관련 행사 등	5	5	-
대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관리 사업	0	50	대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추진
국내기관 간 협의	154	4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 등 유네스코 현안 대응 증가로 인하여 집행액 증가
유네스코 관련 국제회의 참석		165	
유네스코 관련 업무 협의	39	39	-
해외 강제동원 관련 아태지역 사례 연구	100	26	사례연구지 변경·연구기간 인건비 감소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과 실 집행금액 간의 차액 발생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해석 전략 연구		4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도변경 동향 및 중장기 대응전략 연구		13	
합 계	762	568	-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가. 현 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¹⁾ 사업은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업무정보화를 지속 추진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11억 3,8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38	1,138	0	0	0	1,138	1,138	0	0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나. 분석의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정보화 예산 낙찰차액을 타 정보화사업 용역 계약으로 사용한 것은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관련 예산 집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한국국제교류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위탁용역 계약 과정에서 총 3,9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는데,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러한 낙찰차액을 수하동사무소 OA전문 인력 배치 용역비로 집행하였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국제교류기금 7077-201

[낙찰차액 발생 및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명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한국국제교류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위탁용역	39	수하동사무소 OA전문 인력 배치 용역비 (계약액: 2,000만원)로 활용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보화사업²⁾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고, 보안강화·감리비·조달수수료를 지원하는데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

그런데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위탁용역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3,900만원을 수하동사무소 OA전문 인력 배치 용역비로 집행하였다. 수하동사무소 OA전문 인력 배치 용역비는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보안강화·감리비·조달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 불용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집행지침이 규정한 사용범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2)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3)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95

통일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884억 9,200만원(81.1%)이 감소한 206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77억 5,400만원(46.2%)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498	2,394	2,394	2,379	△15	881
기금	36,925	106,767	106,767	18,290	△88,477	△18,635
합계	38,423	109,161	109,161	20,669	△88,492	△17,754

자료: 통일부

2017회계연도 통일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8,640억 2,600만원(71.6%)이 감소한 2,877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569억 5,700원(65.9%)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12,692	244,762	244,762	216,913	△27,849	△95,779
기금	532,035	962,732	962,732	70,857	△891,875	△461,178
합계	844,727	1,207,494	1,207,494	287,770	△864,026	△556,957

자료: 통일부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3억 9,400만원이며, 25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3.0%인 23억 7,9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7,900만원을 미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없었다.

[2017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394	2,394	2,394	2,558	2,379	179	0	93.0

자료: 통일부

2017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708억 3,500만원이며, 이 중 84.9%인 3,999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82억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27억 1,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64,762	464,762	470,835	399,913	8,210	62,712	84.9

자료: 통일부

다.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조 9,707억 8,600만원이며, 1조 2,230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7.8%인 1조 1,966억 9,900만원을 수납하고 263억 2,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었다.

[2017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남북협력기금	1,970,786	1,970,786	1,970,786	1,223,023	1,196,699	26,324	0	97.8

자료: 통일부

2017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조 9,707억 8,600만원이며, 이 중 60.7%인 1조 1,966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414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721억 7,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남북협력기금	1,970,786	1,970,786	1,973,229	1,196,699	41,412	872,171	60.6

자료: 통일부

라.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통일부의 자산은 3조 5,030억원, 부채는 2조 3,160억 6,2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1,869억 3,8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1,052억 7,300만원(2.9%) 감소한 것으로 유동자산 4,837억 9,100만원, 투자자산 2조 5,323억 2,400만원, 일반유형자산 4,088억 3,6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장기금융상품 만기도래에 따른 투자자산 1,435억 1,6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89억 7,500만원(0.4%) 감소한 것으로 유동부채 2,939억 3,900만원, 장기차입부채 2조 21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유동성장기차입 부채 상환 등에 따른 유동부채 4,952억 6,500만원 감소, 장기차입금 신규차입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4,866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통일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503,000	3,608,273	△105,273	△2.9
Ⅰ. 유동자산	483,791	450,481	33,310	7.4
Ⅱ. 투자자산	2,532,324	2,675,840	△143,516	△5.4
Ⅲ. 일반유형자산	408,836	400,979	7,857	2.0
Ⅳ. 무형자산	5,569	8,199	△2,630	△32.1
Ⅴ. 기타비유동자산	72,480	72,774	△294	△0.4
부 채	2,316,062	2,325,037	△8,975	△0.4
Ⅰ. 유동부채	293,939	789,204	△495,265	△62.8
Ⅱ. 장기차입부채	2,021,100	1,534,500	486,600	31.7
Ⅲ. 장기충당부채	33	126	△93	△73.8
Ⅳ. 기타비유동부채	990	1,207	△217	△18.0
순 자 산	1,186,938	1,283,236	△96,298	△7.5
Ⅰ. 기본순자산	246,751	246,751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862,947	958,920	△95,973	△10.0
Ⅲ. 순자산 조정	77,240	77,565	△325	△0.4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996억 4,0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2,512억 8,300만원, 관리운영비 623억 8,300만원, 비배분비용 2,094억 6,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64억 1,700만원, 비배분수익 70억 7,2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925억 7,800만원(36.9%) 감소한 4,996억 4,1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개성공단 피해지원 증가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4,656억 7,800만원(66.5%)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9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프로그램(972억 6,700만원)과 남북경제협력프로그램(786억 2,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87억 4,700만원과 경비 236억 3,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737억 7,200만원과 평가손실 1,351억 9,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통일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34,866	700,544	△465,678	△66.5
가. 프로그램 총원가	251,283	710,645	△459,362	△64.6
나. 프로그램 수익	16,417	10,101	6,316	62.5
II. 관리운영비	62,383	65,232	△2,849	△4.4
III. 비배분비용	209,464	92,264	117,200	127.0
IV. 비배분수익	7,072	65,821	△58,749	△89.3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99,641	792,219	△292,578	△36.9
VI. 비교환수익 등	1	△95	96	△101.1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99,640	792,314	△292,674	△36.9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1조 2,832억 3,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조 1,869억 3,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962억 9,800만원(7.5%)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를 기초 대비 4,996억 4,0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3억 2,500만원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4,036억 6,7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4,060억 4,6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23억 7,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32억 5,5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35억 8,0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통일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1,283,236	1,671,025	△387,789	△23.2
II. 재정운영결과	499,640	792,314	△292,674	△36.9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03,667	410,023	△6,356	△1.6
IV. 조정항목	△325	△5,498	5,173	△94.1
V. 기말순자산(I-II+III+IV)	1,186,938	1,283,236	△96,298	△7.5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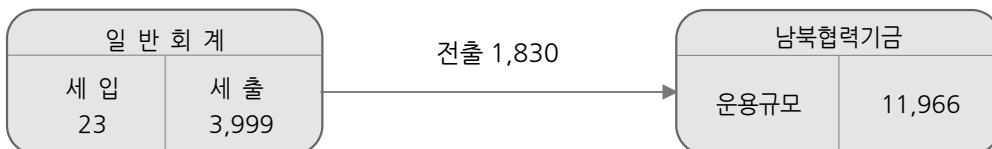
마. 재정 구조

2017회계연도 통일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1,830억원 전출되었다.

[2017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② 북한 인권재단 운영, ③ 통일음식문화타운 사업, ④ 경협기반(무상), 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 등이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사업은 통일부 등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감안하여 3.59억원 감액(35.95억원→32.36억원),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은 시민단체 지원 기준 마련 등의 준비가 우선 필요함을 고려하여 16.77억원 감액(134.32억원→117.55억원), 통일음식문화타운 사업은 사업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한 단계적 추진을 이유로 13.6억원(23.6억원→10억원) 감액되었다.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194억원이 감액(1,583억원→1,389억원)되었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은 남북간 협의 미진행 등을 고려하여 230억원이 감액(323억원→100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탈북민 의료지원 확대, ② 탈북청소년 교육 강화 사업 등이 있다.

탈북민 의료지원 확대 사업은 하나원 교육생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교체비용으로 1.9억원이 증액(0.2억원→2.1억원)되었고,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탈북민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등 탈북청소년 교육 강화를 위해 4.27억원 증액(13.4억원→17.67억원)되었다.

통일부는 미래지향적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준비 사업 확대 및 인도적 문제의 꾸준한 해결 추진을 목표로 ①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등 탈북민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강화, ② 통일교육원 리모델링 등 통일교육 제반환경 개선을 통한 통일교육 내실화, ③ 북한인권법 제정(16.3)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운영 등 북한 인권 개선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통일업무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은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국민적인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일부 직원의 행정효율성 강화 등 통일부 내부의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일업무지원 사업의 목적 및 수행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통일부는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의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 없이 위탁사업비 5억 5,000만원 및 사업운영비 4,000만원으로만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역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은 청소년들의 통일체험연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동 센터의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중 정착장려금과 가산금, 사립대공납금, 고용지원금은 기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항목으로 54억 8,4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체 불용액 62억 9,000만원의 87.2%에 해당한다. 북한이

탈주민 입국 인원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 정착한 북한이탈 주민에게 지급되는 항목의 불용률이 높다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북한인권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의 업무 조정 필요 등

가. 현 황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¹⁾ 사업은 북한인권 정책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위해 지원하며, 북한인권 실상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한인권법」 시행(2016.9.4.)에 따라 2017년부터 신규로 추진된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8억 400만원이며 7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437	437	0	367	0	804	771	0	33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및 조정	71	71	0	367	0	466	460	0	6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 워크 기반구축	168	168	0	0	0	162	154	0	8
북한인권정책 공감대 확산	198	198	0	0	0	176	157	0	19

자료: 통일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2135-302

나. 분석의견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인권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은 통일교육원에서 기존에 수행해오던 통일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보급 업무와 유사하므로, 통일교육원과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의 북한인권 정책 공감대 확산 내역사업에서 북한인권 관련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 2017년도에 1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600만원을 집행하였다. 북한인권 관련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은 「북한인권법」 제6조제1항제3호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호3)에 근거하고 있다.

통일부는 2017년 동 사업에서 제작한 미디어 홍보물 ‘벽 너머 사람이 살고 있다’를 EBS 지식채널e를 통해 방송(10월, 총 7회)한 후 EBS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도서(북한인권 알아가기)와 영상물(함께 해야 할 사람들, 북한인권의 오늘)을 제작하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7년에 제작한 북한인권 도서 및 영상물은 2018년 공공도서관, 대학교, 공공 교육훈련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2) 「북한인권법」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5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평가
2.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3.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의 세부과제와 추진방법
4.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5.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
6. 북한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년 북한인권 교육·콘텐츠 개발 예산 편성(산출내역) 및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명)	예산 편성내역		예산 집행내역	
	산출내역	금액	세부내용	금액
일반수용비(210-01)	강사사례비, 교육지침 개발, 교육자료 원고, 영상교육자료 제작, 지문·감수, 인쇄, 번역	106	북한인권 교육자료 감수	2
			북한인권 교육자료 제작	9
			미디어 활용 홍보물	40
			북한인권 영상자료 DVD	8
공공요금(210-02)	자료 배포	8	-	
국내여비(220-01)	현장점검 및 업무협의	2	업무협의 등	1
사업추진비(240-01)	전문가 의견수렴	3	업무협의 간담회	1
정책연구비(260-02)	-		북한인권교육 기본방향 및 교육자료 개발 용역	25
합 계		118		86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전담 기관으로 산하에 통일교육원을 두어 통일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에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⁴⁾ 사업에서 통일교육자료 개발·보급에 19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19억 100만원을 집행하였다.

통일교육원은 매년 기본교재인 ‘북한의 이해’와 ‘통일문제 이해’를 발간하여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동 교재 내에서 북한주민들의 실생활 소개와 함께 북한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교육과정인 ‘북한 인권 문제’를 통해 인권의 기본개념 및 북한인권 현황,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의 노력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문제의 민감성·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 교육 콘텐츠는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협력국에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동 사업에서 수행하는 북한인권 관련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의 내용은 통일교육원의 기존 업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통일교육원은 직제 상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

4) 코드명: 일반회계 5031-304

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⁵⁾하는 기관이며, 통일교육은 북한인권 교육을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원과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7년 통일교육원의 북한 인권 관련 교육 콘텐츠 현황]

구분	교육 / 교재 제목	배부처 / 강사, 강의장소	인권 관련 주요내용	활용 대상	발간부수 / 강의시간 (수강기간)	수강 인원
기본교재	북한 이해	대학교 등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을 소개 하면서 인권 상황 설명	대학생, 일반인	95,000부	-
기본교재	통일문제 이해	대학교 등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대학생, 일반인	85,000부	-
사이버 교육	북한 인권 문제	통일연구원 사이버강의	인권의 기본 개념, 북한인권 현황,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의 노력 등 (사이버통일교육 공무원과정)	공무원	약 90분 (2~12월)	969명

자료: 통일부

둘째, 타 사업의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연구용역계약 체결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에서 북한인권교육 기본방향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통일부가 북한인권 실태 및 교육과 관련하여 2017년에 수행한 연구용역 내역을 보면, 정책연구개발(R&D)⁶⁾ 사업에서 ‘국제기준에 따른 북한인권조사 결과’와 관련한 정책연구용역 및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각종 통일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의10(직무) 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 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코드명: 일반회계 7031-300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1조 및 제55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⁷⁾ 통일교육원에서 각종 통일교육 콘텐츠 및 교재의 내용에 북한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고, 정책연구개발(R&D) 사업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별도의 북한인권교육 기본방향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타 사업의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교육 기본방향 및 교육자료 개발’ 연구용역이 6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수행되어, 9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행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인권상황’ 연구용역을 활용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초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타 사업에서 선정한 연구용역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연구용역 수행 및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인권교육 기본방향은 일차적으로 통일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통일교육원이 수립하여 통일부 내부에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향후에는 타 사업의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연구용역계약 체결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7)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87p.

[2017년도 북한인권 실태 및 교육 관련 연구용역 수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관 (수행자)	계약기간	제출일	집행액	계약 방법	비목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북한인권교육 기본방향 및 교육자료 개발	고려대학교 (서○○)	6.21~ 11.20	11.20	25	수의	260-02
정책연구 개발 (R&D)	국제기준에 따른 북한인권 조사와 조사결과의 단계적 활용방안	한국외대 (조○○)	6.1~ 10.31	10.31	20	수의	260-02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인권상황(북한의 대내외 환경과 인권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사)새로운코리아 아구상을위한 연구원 (서○○)	9.20~ 12.5	12.5	10	수의	260-02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통일교육원)	2017년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개발 및 유지보수사업	씨아이씨 라이프(주)	3.29~ 12.31	12.31	175	경쟁	260-01
	중등용 통일교육 교재 지도서 집필 계약	한국교원대학 산학협력단(김00)	5.10~7.7	8.7	15	수의	260-01
	초등용 통일교육 교재 지도서 집필 계약	춘천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황00)	5.10~7.7	8.7	15	수의	260-01
	재외동포 통일교육 교재 지도서 집필 계약	춘천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황00)	7.7~31	7.31	9.7	수의	260-01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동 사업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동 사업의 2017년도 성과지표는 북한인권 개선 관련 국내외 협력 실적(건수)이며, 목표치 25건 중 실적 25건으로 달성도 100%를 나타내고 있다. 동 목표치는 북한인권 관련 관계기관 업무 협의, 북한인권 전문가 등 대상 여론수렴 횟수, 국제사회 논의 참석, 국제사회 전문가 면담 등 국제사회 협력 관련 실적을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며, 통일부 내부 결과문서 등을 바탕으로 성과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2015~20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북한인권 개선 관련 국내외 협력 실적(건수)	목표	신규	신규	25	26	북한인권 관련 관계기관 업무 협약, 북한인권 전문가 등 대상 여론수렴 횟수, 국제사회 논의 참석, 국제사회 전문가 면담 등 국제사회 협력 관련 실적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횟수 + 전문가 여론수렴 횟수+북한 인권 관련 국제사회 공조·조치 횟수	관련문서 (내부문서)
	실적	신규	신규	25	-			
	달성도	신규	신규	100 %	-			

자료: 통일부

그러나 동 지표는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의 세 가지 내역사업 중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및 조정 사업과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성과만을 수치로 나타낼 뿐, 동 사업 예산의 45.3%를 차지하는 북한인권 정책 공감대 확산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및 조정 사업과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구축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편성 필요 등

가. 현 황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은 2016년도에 통일업무지원 사업¹⁾의 신규 내역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민간 부문의 통일운동 활동을 민관협업 방식으로 지원하여 국민적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간의 평화통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현액 5억 6,300만원 중 집행액은 5억 4,800만원이고 1,5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통일업무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통일업무지원	1,014	1,014	0	△30	0	984	964	0	20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254	254	0	2	0	256	253	0	3
통일부 기록관 운영	105	105	0	△5	0	100	98	0	2
비상안전기반 구축	65	65	0	0	0	65	65	0	0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590	590	0	△28	0	563	548	0	15

자료: 통일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7032-303

나. 분석의견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은 통일업무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통일업무지원 사업은 통일부 직원의 행정효율성 강화 등 통일부 내부의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예산코드명 7000) 내의 사업이다. 그러나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은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국민적인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일업무지원 사업의 목적 및 수행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의 세부사업에서 이질적인 내역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관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통일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²⁾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으로 이관하거나, 별도의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부가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의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 없이 위탁사업비 5억 5,000만원 및 사업운영비 4,000만원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예산 심의 시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통일부는 동 사업은 매년 초 수요조사 등으로 추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적합한 위탁사업 아이тем의 선정 및 사업 시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다음년도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아이тем을 예산편성 시 특정하기 어려우나 사업의 목적이 분명한 위탁사업이므로, 현재의 예산안 편성은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2) 코드명: 일반회계 1031-301

그러나 동 사업의 2017년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2월에 사업추진방향을 검토하여 3월에 통일부 내 사업 공모 및 선정을 하였고, 이후 조달 계약 절차 진행 및 사업자 선정에 3개월(4~6월)이 소요되었으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기간은 4개월(7~10월)에 불과하다. 더욱이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한 ‘2017 강원통일포럼’과 같은 행사는 2016년에도 계획할 수 있는 행사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17년에 시행한 세부 행사들이 반드시 2017년 초에 발굴해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년도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아이টে을 미리 발굴하여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7년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예산 편성·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비 목	예산액 각목명세서		세부집행내역	
	내 용	금액	내 용	금액
일반수용비 (210-01목)	심사사례비 3, 조달수수료 8, 자료제작비 3, 사후원가정산 4	18	심사사례비 1, 조달수수료 4.4, 사후원가정산 3.1	9
일반용역비 (210-14목)	위탁사업비	550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377 아트카오스 161	538
사업추진비 (240-01목)	정책협의	2	업무협의 간담회 및 회의 개최	1
일반연구비 (260-01목)	외부평가	20	-	-
합 계		590	-	548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수탁기관	건 명	내 용	계약액	집행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아트카오스(도급)	지역기반 통일사업(제주)	프리젠테이션 상금, 사회자 및 심사위원 사례 토크 콘서트 명사 초청, 토크 콘서트 메시지월 제작 제주 통일 칸타빌레, 제작물, 대관료, 운영비	35	34
	지역기반 통일사업(부산)	토크콘서트, 작은음악회, 제작물, 대관료, 운영비	22	18
	지역기반 통일사업(영호남)	차량 임차료, 대관료, 명사강연, 참가학생 숙식, 제작물 등	35	26
	지역기반 통일사업(충북)	-	7	-
	지역기반 통일사업(충남)	무대진행, 제작물, 대관료, 운영비	12	14
	지역기반 통일사업(강원)	무대진행, 기념품, 제작물, 대관료, 운영비	26	13
	통일모델하우스 (아트카오스 공동진행)	부스테이너 시스템, 영상 시스템, 통일열차테마전시관 등	200	306
	통일걷기대회	-	57	-
	공통운영	연출, 운영비 등	18	5
	홍보비	보도, 홈페이지, 인쇄물, 다큐	28	23
	대행료+일반관리비	대행료 및 일반관리비	50	5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49	49
합 계			538	538

자료: 통일부

셋째,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은 통일부의 다른 사업들과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다.

2017년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은 조달청 공모 절차를 거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사업자로 선정(2017.6.8.),³⁾ 지역 통일단체 협업 방식으로 권역별 지역기반 통일사업과 국민참여 통일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었다.

지역기반 통일사업은 7~10월에 걸쳐 부산, 대구/광주, 제주, 충청, 강원 지역에서 시행하였는데, 부산에서는 ‘2017 부산통일포럼’ 행사를 통해 신헌민과 함께하는 통일 토크 및 통일콘서트 등을 실시하였고, 대구/광주에서는 ‘대학생 통일 솔루션’ 행사를 통해 대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명사강연 및 통일역사투어 등을 진행하였다. 제주 지역에서는 ‘한라-백두 프레젠테이션’ 행사에서 ‘너와 내가 꿈꾸는 통일’을

3) 2016년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주제로 초·중·고·대학생 통일 프레젠테이션 대회 및 미니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충청 지역에서는 ‘2017 충남 통일역사문화포럼’ 행사를 통해 통일역사대화, 남북도 시교류 정책대화 등을 개최하였으며, 강원 지역에서는 ‘2017 강원통일포럼’ 행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민참여 통일사업은 「평화로 2017」(10.13.~15.) 행사(구 통일박람회)와 연계하여 특별 전시프로그램(통일모델하우스, 평화열차 테마 전시관 등) 및 한반도신경제 지도 체험 등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에서 시행한 ‘2017 통일문화 기획행사’의 경우 대국민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과 목적이 유사하며, 2017 통일문화 기획행사의 일환으로 강원도 고성에서 진행한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통(기타) 페스티벌’ 및 ‘바그너 오페라 갈라콘서트’는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에서 실시한 부산 지역 행사의 통일콘서트와 제주 지역 행사의 미니콘서트 등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의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내역사업에서 100%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의 용역계약 사업자라는 점에서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과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의 유사·중복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의 국민참여통일사업은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에서 실시한 ‘평화로 2017’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하였는데, 유사성을 고려할 때 예산 집행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행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017년 대국민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시행 현황]

세부사업	통일업무지원	국내통일기반조성		
내역사업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2017 통일문화 기획행사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민화협 지원)	평화로 2017
사업자	(사)민족화해협력범 국민협의회 / 아트카오스(도급)	제이에스씨어터	(사)민족화해협력범 국민협의회	(주)유피피코리아
사업목적	우리사회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국민들의 통일공감대 제고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통일공감대 확산
수행시기	2017.6.8.~11.30.	2017.5.~2017.11.	2017.1.~2017.12.	2017.10.13~10.15
사업내용	부산, 대구/광주, 제주, 충청, 강원 등 권역별 청소년·대학생·시민단체·전문가 등 대상 포럼·토론회·발표대회 등 개최	통일음악회(8월), 통기타 콘서트(8월), 평화염원 한마음 걷기대회(9월), DMZ 사진전(10월)	동북아문화교류 공동학술회의(2회), 해외협의회 포럼 및 간담회(2회), 민간교류지원(2회), 차세대 통일역량 강화사업(7회), 통일문화축제, 통일 공감 확대사업(17회), 남남대화(19회), 민족화해紙 발행(6회)	부스 운영(총 61개), 평화열차 테마전시관, 평창올림픽 체험관, 평화·통일 사진전, 평화와 통일 뉴스, 한반도 레고, 통일 요리교실, 한반도 트레킹, 남북한의학 소개
예산액	587	450	450	440
집행액	548	425	450	45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민생협력지원¹⁾ 사업은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통해 통일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축산 협력 및 산림복구, 환경,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계획현액은 2,316억 3,400만원이며 13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200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다.

세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북한영유아지원 사업은 계획현액 871억원 3,400만원 중 102억 4,000만원이 이월²⁾되어 768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고, 보건의료협력 사업과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사업은 682억원과 747억원이 각각 전액 불용되었으며,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사업은 계획액 16억원 중 82.6%인 13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남북협력기금 2141-402

2) 통일부의 설명에 따르면, WFP와 UNICEF는 우리 정부에 각각 2017년 5월과 7월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를 요청하였고,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9.14)를 거쳐 남북교류추진협의회가 남북협력기금 800만불 지원을 결정(9.21)하였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국내외적 우려 등 지원 여건이 조성되지 못해 사고이월 되었다.

[2017회계연도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민생협력지원	231,634	231,634	0	0	0	231,634	1,322	10,240	220,072
북한영유아 지원	87,134	87,134	0	0	0	87,134	0	10,240	76,894
보건의료협력	68,200	68,200	0	0	0	68,200	0	0	68,200
농축산산림 환경협력	74,700	74,700	0	0	0	74,700	0	0	74,700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	1,600	1,600	0	0	0	1,600	1,322	0	278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민생협력지원은 인도적 지원사업이므로,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정부·민간·국제기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속적인 실적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2017년 계획액은 2016년 1,789억원 대비 29.7% 증액된 2,316억 3,400만원으로,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2017년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통일부는 북한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모자패키지 지원’에 170억 3,400만원, 북한 전염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질병통제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질병통제 체계 구축’에 350억원, 북한 병원 및 의료관련 공장 등 기초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체계 지원’에 9억원 등 총 527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다.

[2017년도 민생협력지원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유형	2016	2017		증감 (B-A)
				계획액(A)	계획액(B)	집행액	
북한 영유아 지원	모자패키지 지원	통일미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북한 영유아·임산부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민간 차원	0	0	0	0
			국제 기구	50,100	67,134	0	17,034
	취약계층 지원	북한 어린이·장애인·노인 및 기타 취약계층 지원	민간 단체	18,000	18,000	0	0
			국제 기구	2,000	2,000	0	0
보건 의료 협력	질병통제체계 구축 지원	북한 전염성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한 질병통제 체계 구축	민간 차원	8,000	8,000	0	0
			국제 기구	2,000	37,000	0	35,000
	보건의료 체 계지원	북한 병원 등 기초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	민간 차원	17,100	17,000	0	△100
			국제 기구	3,000	4,000	0	1,000
	의료인력 교육지원	북한 의료인력 교육 지원	민간 차원	1,200	1,200	0	0
			국제 기구	1,000	1,000	0	0
농축산 산림환경 협력	농축산 협력, 산림협력, 환경협력	북한 산림녹화, 농촌마을 현대화 사업 등 민생 인프라 개선	민간 차원	56,000	59,000	0	3,000
			국제 기구	18,700	15,700	0	△3,000
인도지원 협력체계 구축	국제사회 네트워크/ 통합관리체계	대북인도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국제사회 네트워크 구축	민간 차원	1,800	1,600	1,322	△200
			국제 기구	0	0	0	0
합 계			민간 차원	102,100	104,800	1,322	2,700
			국제 기구	76,800	126,834	0	50,034
			계	178,900	231,634	1,322	52,734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그동안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북한의 소극적 입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 간 보건의료와 안전 협력체계를 근본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인도적 차원의 관점에서 대규모 증액 편성되었으나 2017년의 집행실적은 0.6%로, 2013년 25.9%, 2014년 14.5%, 2015년 7.5%, 2016년 0.4%에 이어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생협력지원 사업 집행실적(2012~2017년)]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내역
2012	98,200	2,337	2.4	○ 국제백신연구소 보건의료 지원사업 (210만불, 2,337백만원)
2013	98,200	13,251	13.5	○ UNICEF 영유아 지원사업 6,737백만원 ○ WHO 영유아 지원사업 6,514백만원
2014	88,380	14,765	16.7	○ WHO 북한 영유아 지원(630만불, 6,675백만원) ○ WFP 영양식 지원(700만불, 7,383백만원), ○ 민간단체 기금공모사업(625백만원), ○ 국내외 NGO 합동포럼(82백만원)
2015	160,600	12,127	7.6	○ 보건·농업·축산 분야 공모사업(1,716백만원) ○ UNFPA 북한인구조조사사업 지원(940백만원) ○ 산림·환경 분야 공모사업(687백만원) ○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154백만원) ○ UNICEF 북한 영유아 지원(400만불, 4,475백만원) ○ WFP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210만불, 2,316백만원) ○ 장애인 지원 공모사업(727백만원) ○ 북한 의료인력 교육(100백만원) ○ 농업·환경 지원(383백만원) ○ 인도지원 체계구축 지원 423백만원 ○ 국제네트워크 구축 206백만원
2016	178,900	633	0.4	○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사업 99백만원 ○ 인도지원 체계구축 지원 534백만원
2017	231,634	1,322	0.6	○ 대북지원협력사업 통합관리체계구축 사업 1277백만원 ○ 남북한 및 국제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업 45백만원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민간차원의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구분되는 데, 2017년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다. 그러나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집행실적은 0%이다.

2017년 계획액의 집행부진에 대하여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사안과 분리한다는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대북지원은 가능했으나, 북핵 상황의 엄중성, 국민적 우려, UN 대북제재 국면 등 남북관계 상황 악화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 입장 및 남북관계 상황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2017년 계획액을 크게 증액 편성한 것은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히 인도적 지원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남측 기관이나 단체의 직접적 관여가 아니기 때문에 대북 지원의 상대적 수용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계획액 대비 0.57% 수준인 집행실적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업계획이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

(단위: 만 달러, %)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비중
국제기구	WFP	2,457	62.4
	UNICEF	672	17.1
	WHO	134	3.4
	FAO	77	1.9
	UNFPA	83	2.1
	OCHA	22	0.6
국제적십자	스웨덴 적십자	50	1.3
	ICRC	50	1.3
	노르웨이 적십자	89	2.3
	IFRC	32	0.8
정부기관	SDC	135	3.4
INGO	세이브더칠드런	22	0.6
	컨선월드와이드	55	1.4
	핸디캡 인터내셔널	47	1.2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	11	0.3
	미션리스트	6	0.1
합 계		3,940	100.0

자료: 통일부, UN FIS(Financial Tracking Service)

민생협력지원은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북한당국과 분리하여 지원되어야 하므로,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정부·민간·국제기구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등 동 사업의 실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¹⁾은 경기도 연천군에 2014년 9월 건립된 한반도통일 미래센터²⁾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계획현액은 45억 2,200만원이며 41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다.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내역사업은 청소년들의 통일 미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체험연수 사업비로, 2017년 계획액 12억 3,300만원 중 10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다. 센터시설 관리운영 내역사업은 통일체험관 운영, 시설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체험연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2017년 계획액 32억 8,900만원 중 31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남북협력기금 1033-402

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의7(직무)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한반도 통일미래를 위하여 남북 간 청소년 교류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남북 간 청소년 교류 관련 사업의 추진
3.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세대·계층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센터에서의 남북 인적 교류 등 행사 지원
6. 센터 이용 수요조사 및 국내외 홍보

[2017회계연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한반도통일 미래센터 운영	4,522	4,522	0	0	0	4,522	4,193	0	329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1,233	1,233	0	0	0	1,233	1,080	0	153
센터시설 관리운영	3,289	3,289	0	0	0	3,289	3,113	0	176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은 청소년들의 통일체험연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동 센터의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6호³⁾에 근거하여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센터 개관 이후 센터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사업 실적 21건 중 남북교류·협력 증진이라는 실제 기금의 용도에 부합한 사업은 2015년에 실시한 ‘국제유소년축구대회(평양) 참가 경기도 축구단 선발 및 합숙 지원’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관 이후 운영실적]

(단위: 명, 백만원)

기 간	행사명	참가인원	집행액	비고
2015.3.28.~4.19.	국제유소년축구대회(평양) 참가 경기도축구단 선발 및 합숙 지원	41	-	시설지원
2015.7.25.~7.26.	이산가족 초청 통일체험빌리지	40	9	-
2015.8.8.~8.9	한민족통합을 위한 남북주민 진솔한 삶의 대화	23	-	시설지원
2015.8.13.~8.14	세대공감 통일캠프	286	-	시설지원
2015.9.16.~9.18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이 함께하는 통일체험연수	53	9	-
2015.10.17	남북청소년 2015 통일비전 캠프	134	8	-
2015.11.29	탈북청년 축구선수단 초청 친선경기 및 통일체험연수	210	12	-
2016.8.16.~8.17.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 합동 통일체험연수	30	-	시설지원
2016.10.28.~10.29.	이산가족 초청 통일체험빌리지	33	9	-
2016.11.18.~11.20.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이 함께하는 통일리더캠프	234	-	시설지원
2017.1.12~13	하나원 교육생 통일체험연수	105	-	시설지원
2017.3.2~3.4	여명학교 청소년 통일체험연수	111	5	-
2017.3.24.~3.25.	탈북민 가족 통일체험빌리지	35	4	-
2017.4.5~4.7	하나둘학교 초청 통일체험연수	24	-	시설지원
2017.4.29.~4.30	제3차 이산가족 통일체험 빌리지	88	4	-
2017.5.23	납북자 가족의날 행사개최 지원	220	-	시설지원
2017.7.3~7.5	하나둘학교 초청 통일체험연수	23	2	-
2017.7.20.~7.21.	제4차 이산가족 통일체험 빌리지 개최	40	10	-
2017.9.14~9.15	기상봉 이산가족 초청 행사	115	1	-
2017.9.25~9.27	하나둘학교 초청 통일체험연수	28	2	-
2017.12.13~12.15	하나둘학교 초청 통일체험연수	40	2	-
합 계	-	1,913	75	-

자료: 통일부

또한 동 사업의 2017년 계획액 45억 2,200만원 중 기금용도에 부합하는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계획액은 남북인적교류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목명세서상 2,000만원에 불과하며, 집행액은 1,250만원이다. 남북인적교류 지원 프로그램에 편성된 계획액을 제외한 45억 200만원은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주로 청소년들의 통일체험연수 경비와 센터 시설관리 사업비로 집행되었는데, 이는 남북교류·협력과는 무관한 센터운영경비이므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와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남북인적교류 지원 프로그램에 편성된 일반용역비로 위탁 계약하여 수행한 한민족합창축제 행사는 광복절 계기 국내외 합창단원을 초청(2017년의 경우 미국·스페인 등 2개국 2팀, 국내 6팀), 합창공연과 함께 체험관·안보현장 견학 등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는 행사로, 남북교류·협력 증진이라는 기금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동 사업의 2017년도 집행액 대부분이 기금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017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남북인적교류 지원 프로그램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비 목	계획액 각목명세서		세부집행내역	
	내 용	금액	내 용	금액
임차료 (210-07)	남북인적교류 지원 - 남북인적교류 참가자 차량임차	4.8	-	-
일반용역비 (210-14)	남북인적교류 지원	10	한민족합창축제 관련행사 운영 위탁	11
사업추진비 (240-01)	남북인적교류 지원 - 교류 개최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1.5	이산가족 및 탈북민 초청 통일체험연수 등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관련 업무협의	1.5
구호및교정비 (320-06)	남북인적교류 지원	3.8	-	-
합 계		20	-	12.5

자료: 통일부

통일부에 따르면 동 센터는 남북간 인적 교류협력, 국내·외 청소년의 평화·통일미래 리더십 함양, 다양한 계층·지역·연령 대상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체험연수 등을 시행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회복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동 센터 운영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통일부의 입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체험연수 및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통일교육원의 각종 사업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것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사회문화교류 지원¹⁾ 사업은 남북한 주민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또는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사회문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학술 협력사업과 인적왕래·기타협력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7년도 계획현액은 143억 7,900만원이며 36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100억 600만원이 불용되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교육학술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근거하고 있다. 동 사업은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겨레말의 통합 및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공동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해외의 새어휘(겨레말) 등을 조사·채집하여, 약 33만 단어 규모의 겨레말큰사전을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 4월 완료²⁾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 보조금 예산현액은 27억 5,400만원이며 2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사회문화교류 지원	14,379	14,379	0	0	0	14,379	3,673	700	10,006

자료: 통일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남북협력기금 2040-401

2) 동 사업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2024년 4월까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가 외교통일위원회에 발의(2018.2.22.)되어 계류 중이다.

[2017회계연도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보조 기관)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3,300	3,300	2,754	2,754	-	2,754	2,520	-	234	76.4

자료: 통일부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주요추진 경과]

- 2004. 3. “사전편찬의향서” 체결, 사전 명칭 “겨례말 큰사전”으로 결정
- 2004.10. 남북간 ‘겨례말큰사전’ 편찬사업 협의 및 협력사업 승인
- 2005. 2.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 및 제1차 남북공동편찬위원회 회의
- 2006. 1.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설립
- 2007. 4.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정(2014.4.26.까지)
- 2013. 7.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정(2019.4.26.까지 기간 연장)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남북 집필진 간의 공동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여 진척률이 부진한 반면 보조금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고정비 지출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10~2013년 4년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남·북 집필진의 교류가 중단되어 남북 집필진 간의 공동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전편찬 중기가 2014년 4월에서 2019년 4월로 5년이 연기되었다. 2014년 남·북 집필진의 교류가 재개되어 2014년 2회, 2015년 3회 남북공동회의를 개최하였으나, 2016~2017년에 또다시 교류협력이 중단되면서 2017년 기준 78.0%의 진척률로 2016년까지의 75.1% 진척률에서 2.9% 진척되는데 그치고 있다. 2016~2017년에는 우리측 집필진이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집필원고 교정·교열, 흥내말 집필, 최신 용례 보완, 지역어 변이, 말뭉치 정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진척률]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동회의(회)	4	4	4	0	0	0	0	2	3	0	0
진척률(%)	25.0	39.0	53.0	56.7	63.0	65.0	66.2	69.2	73.3	75.1	78.0

자료: 통일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상근직원 29명에 대한 인건비가 16억 3,100만원으로 64.7%, 사무실 임차비가 3억 1,000만원으로 12.3%를 차지하는 등 전문연구인력의 지식기반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상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비중이 매우 크다. 남북공동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2010~2013년 및 2016년에도 매년 18억원 가량의 적지 않은 예산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향후에도 남·북 집필진 교류와 남북공동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정비 지출로 인한 예산부담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비	인건비(급여, 보험료, 퇴직금)	경상비(임대료)	기타 경상경비	합계
2005	673	-	-	-	673
2006	1,603	831	369	279	3,082
2007	1,268	1,190	280	120	2,858
2008	1,585	1,183	277	127	3,172
2009	1,170	1,222	293	100	2,785
2010	271	1,251	287	76	1,885
2011	676	1,265	291	68	2,300
2012	612	1,338	308	65	2,323
2013	87	1,338	305	74	1,804
2014	590	1,355	305	92	2,342
2015	910	1,492	305	84	2,791
2016	359	1,533	310	78	2,280
2017	464	1,631	310	115	2,520
합 계	10,268	15,629	3,640	1,278	30,815

자료: 통일부

따라서 사업정상화 전까지 남북관계 상황의 영향 없이 남한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새어획 등 남측 올림말 집필, 삽화 작성, 남북합의 완료 원고에 대한 교정·교열, 기존 추진성과를 활용한 제2차 결과물 생산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인건비와 경상비가 보다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현 황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¹⁾ 사업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 대처능력 강화 및 정책결정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사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교류협력 분야별 정책과정에 각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문화교류 분야별 체계적 지원을 위한 4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정부 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1억 3,300만원이며 1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133	133	0	0	0	133	131	0	2
정책네트워크 운영	55	55	0	0	0	55	54	0	1
사회문화교류 체계적 지원 관리	78	78	0	0	0	78	77	0	1

자료: 통일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3036-312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관계기관·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예산과 교류협력국 기본경비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중 관계기관·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에 집행된 경비는 약 1,357만원이다.

[2017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중
관계기관·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집행내역]

(단위: 천원)

건 명	비 목	금 액
2017 북한개발협력 민관정책포럼 관련(6건)	사업추진비 (240-01목)	1,423
2017 하반기 남북종교교류 확대 실무협의회(1건)		375
남북 공유하천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유관기관 회의(2건)		95
남북경협 관련 전문가·기업인 의견수렴 간담회(7건)		1,291
남북농업협력 민관정책포럼 및 현장방문 개최 관련(2건)		646
개발협력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관련(3건)		183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1차 정례회의(1건)		165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대비 관계기관 실무협의 개최(1건)		257
교류협력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2건)		167
대북제재 관련 간담회(2건)		376
대북지원 국제회의 결과보고회(1건)		350
산림협력 정책현장 방문(1건)		108
위장반입 차단 관련 관계기관 합동점검 회의(1건)		420
간담회 개최(교육학술 단체)(1건)		215
간담회 개최(종교단체)(3건)		736
간담회 개최(남북역사학자협의회, KDI)(1건)		90
간담회 개최(언론분야)(6건)		457
간담회 개최(법률분야)(2건)		266
간담회 개최(민간단체)(9건)		1,259
간담회 개최(시민사회단체)(3건)		506
간담회 개최(통일연구원, KDI등)(1건)		164
소속법인 의견수렴 간담회(1건)		140
유관기관 대상 의견수렴 회의(4건)		394
정책고객대상 의견수렴 간담회(1건)		78
기타 간담회 및 회의 개최(27건)		3,404
합 계	-	13,565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류협력국 기본경비 중 관계기관·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의 2017년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과 유사한 내역인 남북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인도지원 등의 내용으로 집행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교류협력국 기본경비 중 남북교류협력 관련
관계기관·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집행내역]

(단위: 천원)

건 명	비 목	금 액
개발협력 관련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 간담회(20건)	관서 업무추진비 (240-02목)	3,705
경협기업 의견수렴 간담회(3건)		665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간담회(1건)		375
국제기구 대북지원 관계자 간담회(2건)		149
남북경협 관련 전문가 간담회(5건)		1,990
남북경협관련 정책고객 의견수렴 간담회(1건)		270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 관련 간담회(1건)		300
남북교류 전문가 자문 간담회(2건)		378
대북 식량차관 관계자 간담회(1건)		135
대북지원 전문가 간담회(1건)		120
대북인도적지원 관계자 간담회(1건)		400
대북민간교류 관계자 및 민간단체 간담회(13건)		2,093
산림협력 관계자 및 민간단체 간담회(3건)		421
위장반입 차단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2건)		288
인도적지원 민간단체 간담회(1건)		145
협력사업 관계자 의견수렴(2건)		412
합 계	-	11,846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남북교류협력 관련 관계기관·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는 유사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효과적인 사업 성과관리·평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통일부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¹⁾ 사업은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개성공단 철수기업 실태조사 후속조치 및 경영활동 정상화 지원을 위한 법제도 분야 대책수립,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개성공단 법제도적 기반의 유지·관리,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을 통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3억 100만원이며 2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301	301	0	0	0	301	255	0	46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65	65	0	0	0	65	61	0	4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운영	236	236	0	0	0	236	194	0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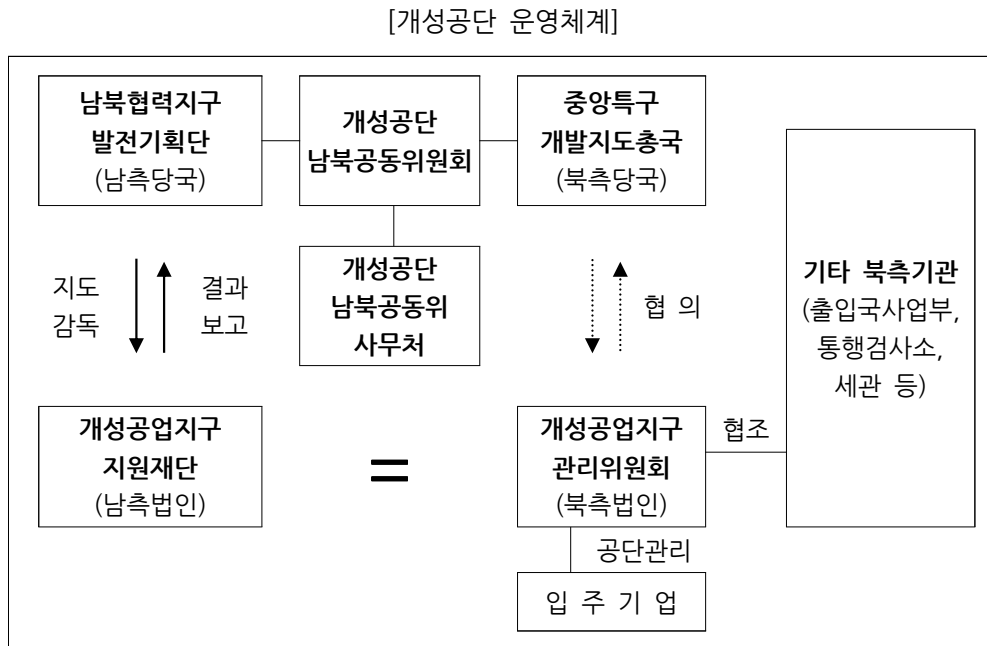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개성공단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이 개성공단 관련 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을 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남북공동위사무처가 개성공단 현지에 위치하여 당국 간 상설 연락·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3232-303

또한, 북측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기업 인허가·기반시설 관리 업무 등 공단 운영과 관련한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남측에서 관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한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현재까지 17년 이상 존속하고 있어 사실상 정규조직이므로, 직제 반영을 통한 정규조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한시조직이란 이유로 운영 예산이 기본경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통일부는 2004년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최초 설립할 당시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완료 시점까지만 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공단을 관리·운영한다는 계획 하에 지원단을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였다.

이후 통일부는 한시조직 성격의 직제를 개정하여 조직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부서 명칭만을 변경하여 기존 조직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형식으로 동 조직의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지원단은 2004년 설치되어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였고, 2009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기간을 다시 두 차례 연장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존속기간을 세 차례 연장하여, 2018년 7월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존속기간을 연장함으로써 17년 이상 존속하고 있는 사실상 정규조직이라 할 수 있다.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연혁]

- 2004.10.5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설치(1단 4팀, 27명 / 존속기간 3년)
 - 2006.1.26 사업조정관(3급) 신설 및 실무인력 4명(5급3, 6급1) 증원
 - 2006.2.23 개발기획팀, 법제지원팀 신설(자체정원조정)
 - 2007.2.28 실무인력 3명(5급2, 기능1) 증원
 - 2007.10.4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존속기한 2년 연장
 - 2009.5.25 기구 축소(1단 1관 6팀 35명 → 1단 3팀 25명)
- 2009.10.5 남북협력지구지원단으로 명칭변경(2과 1팀 25명 / 존속기간 2년)
 - 2011.10.4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존속기간 1년 연장
 - 2012.10.4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존속기간 1년 연장
- 2013.10.4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으로 명칭변경, 존속기간 2년
 - 2015.10.4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존속기간 1년 연장
 - 2016.9.21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존속기간 1년 연장(1과 1팀 10명으로 축소)
 - 2017.10.4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존속기간 1년 연장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현재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근로자 지원·대책 수립, 입주 기업 경영정상화 및 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향후 남북협력지구가 재개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준비와 대응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이 합의하는 협력지구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법·제도적 기반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시조직의 지속적인 존속기한 연장은 바람직한 운영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개성공단 운영 관련 남북 당국 간 상설 연락·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와 같이 정규조직화²⁾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는 2013년 11월 14일에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직제에 반영되었다.

가. 현 황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¹⁾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정부·지자체·민간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정착지원제도를 확립하며, 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157억 9,900만원이며 98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정책 및 지원체계운영	15,084	15,084	690	25	0	15,799	9,802	5,984	13
북한이탈주민 정책기획·조정	206	206	0	25	0	231	225	0	6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운영	500	500	0	0	0	500	500	0	0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교 지원	3,786	3,786	0	0	0	3,786	3,786	0	0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4,595	4,595	0	0	0	4,595	4,595	0	0
남북통합문화 센터 건립	5,997	5,997	690	0	0	6,687	696	5,984	7

자료: 통일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2331-300

나. 분석의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및 지역적응센터 예산 지원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지원 기준 개선 및 집행 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²⁾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³⁾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고용노동부 공무원, 하나센터 직원, 전문상담사, 종교·복지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3월 기준 116개 지역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위와 같은 법 제15조제2항⁴⁾ 및 제15조의2제1항⁵⁾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집중 교육 및 지역적응지원 등을 통하여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거주인구가 1,175명인 충청북도의 지역협의회 1개소 당 평균지원액은 233만 3,000 원으로, 거주인구가 302명인 제주도의 1개소 당 평균지원액 700만원의 33.3%에 불과하여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017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

(단위: 명, 개, 천원)

지 역	거주민	개소	예산	1인 평균액	1개소 평균액
서울시	6,971	21	91,500	13.1	4,357
부산시	1,029	8	42,000	40.8	5,250
대구시	691	5	23,500	34.0	4,700
인천시	2,732	6	32,000	11.7	5,333
광주시	615	4	23,000	37.4	5,750
대전시	616	5	13,000	21.1	2,600
울산시	555	5	16,000	28.8	3,200
경기도	8,935	20	94,500	10.6	4,725
강원도	731	4	26,000	35.6	6,500
충청북도	1,175	9	21,000	17.9	2,333
충청남도	1,366	4	28,000	20.5	7,000
전라북도	530	6	25,000	47.2	4,167
전라남도	633	7	26,500	41.9	3,786
경상북도	1,094	4	15,000	13.7	3,750
경상남도	1,054	5	16,000	15.2	3,200
제주도	302	1	7,000	23.2	7,000
합 계	28,727	113	493,000	17.2	4,386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지역별 지역협의회 예산 배정 시 탈북민 거주인원(30%) 이외에도 전년도 지역협의회 운영실적(60%), 기타 예산집행 실적 및 업무협조도(10%)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역별 예산배분 기준]

○ 지역협의회 운영실적(60%): 지역협의회 활동 실적에 따른 등급별 예산배정(상대평가) * 지역협의회 (신규 설립, 회의 개최 등) 활성화(50%), 프로그램 정성평가(50%) ○ 탈북민수(30%): 북한이탈주민 거주 인원수에 따라 차등 배정 ○ 기타(10%): 예산집행실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업무 협조도 등

자료: 통일부

2017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예산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 거주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인천, 경기 동부·서부·남부 센터의 북한이탈주민 1인당 평균지원 금액은 11만원인데 비해 북한이탈주민 거주인원이 297명에 불과한 강원 북부 센터의 1인당 평균지원 금액은 3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예산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시도	센터명	운영단체	직원수	북한이탈 주민(명)	예산지원액				1인당 지원액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합계	
서울	동부	한국적십자 서울지사	5	1,634	147	61	21	229	0.14
	서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5	1,634	135	81	11	227	0.13
	남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5	1,719	153	71	25	249	0.14
	북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5	1,984	159	68	23	250	0.12
부산	부산	동아대학교	4	1,029	120	60	32	212	0.20
대구	대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감	4	805	105	35	27	167	0.21
인천	인천	하이사회복지센터	6	2,732	207	69	36	312	0.11
광주	광주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	3	615	94	28	14	136	0.22
대전	대전	생명종합사회복지관	3	616	86	34	26	146	0.23
울산	울산	한국국제봉사기구	3	555	99	66	26	191	0.34
경기	동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5	2,157	151	60	26	237	0.11
	서부	덕유사회복지관	6	2,852	183	91	40	314	0.11
	남부	평택YMCA	5	2,169	141	70	33	244	0.11
	북부	가족보건복지협회	5	1,757	157	87	29	273	0.15
강원	남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3	434	98	32	9	139	0.32
	북부	자유총연맹 강원지부	2	297	81	23	9	113	0.38
충북	충북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4	1,175	131	51	28	210	0.18
충남	충남	천안쌍용 종합사회복지관	4	1,400	152	51	20	223	0.16
전북	전북	전주YWCA	3	530	90	30	27	147	0.28
전남	전남	목포종합사회복지관	4	633	109	32	16	157	0.25
경북	경북	(사)경북이주민센터	4	980	122	42	36	200	0.20
경남	경남	한국적십자 경남지사	4	1,054	112	41	16	169	0.16
제주	제주	남북하나재단	2	302	19	15	16	50	0.17
합 계			94	29,063	2,851	1,198	546	4,595	0.16

주: 대구 센터에서 경북 경산시 거주인원 114명을, 충남 센터에서 지역협의회 미설립 지역인 세종시 거주인원 34명을 담당하고 있음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지역적응센터별 예산 배정 시 기본계상액(41.1%), 탈북민 거주인원(28.3%) 외에 초기집중교육인원(21.8%), 접근성(5.6%), 협력사무소 운영여부(3.2%)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별 예산배분 기준]

- 기본계상액(41.1%) : 기본적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거주인원(28.3%) : 관할구역 내 탈북민 거주인원에 따라 배정
- 초기집중교육인원(21.8%) : 지난 1년6개월간 교육참가인원에 따라 배정
- 접근성(5.6%) : 관할지역 범위에 따라 차등 배정
- 협력사무소 운영(3.2%) : 협력사무소 운영기관 추가 지원

자료: 통일부

한편, 23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장의 2017년 활동비 집행현황을 보면, 서울 남부 10만원, 충청북도 45만 9,000원, 전라북도 90만원을 집행한 것에 비하여 부산, 대구, 인천, 경상북도 등은 360만원에 이르는 활동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2017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장 활동비 집행현황]

(단위: 명, 천원)

센터명	운영단체	직원수	북한이탈주민	센터장 활동비
서울	동부	한국적십자 서울지사	5	1,634
	서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5	1,634
	남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5	1,719
	북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5	1,984
부산	동아대학교	4	1,029	3,539
대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감	4	805	3,600
인천	하이스회복지센터	6	2,732	3,599
광주	북한이주민지원센터	3	615	1,820
대전	생명종합사회복지관	3	616	3,068
울산	한국국제봉사기구	3	555	1,170
경기	동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5	2,157
	서부	덕유사회복지관	6	2,852
	남부	평택YMCA	5	2,169
	북부	가족보건복지협회	5	1,757
강원	남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3	434
	북부	자유총연맹 강원지부	2	297
충북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4	1,175	459
충남	천안쌍용종합사회복지관	4	1,400	3,133
전북	전주YWCA	3	530	900
전남	목포종합사회복지관	4	633	2,302
경북	(사)경북이주민센터	4	980	3,600
경남	한국적십자 경남지사	4	1,054	3,232
제주	남북하나재단	2	302	2,323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별로 센터장 활동비는 매월 3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토록 하고 있으며, 센터장의 겸직 여부, 소속 법인의 지원 여부, 센터장의 리더십 성향 등 각 하나센터의 상황에 따라 집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중 센터장 활동비 관련 내용〕

〈센터장 활동비(매월 30만원 이내 편성)〉

- 활동비는 월별로 편성하고 집행하되 분기별 정산, 분기별 잔액 이월사용 금지
- 활동비 사용 범위
 - 유관기관 네트워크에 따른 비용,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직원 간담회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활동에 한함
 -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사전 품의 없이 지출 금지
 - 북한이탈주민 경조사 지원(결혼, 사망만 해당, 5만원 이내)
 - 경조사는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모두 가능하며 증빙서류(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첨부
 - 개인관련 경조사,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업무추진비성 지출 지양
 - 하나센터 협회비(연간 30만원 이내에 한함)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및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배정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인구수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판단된다는 점, 운영경비는 지역협의회 및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예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집행될 수 있도록 현 배분 기준의 개선과 집행상의 형평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가. 현 황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¹⁾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의지를 제고시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 교육지원금 등 초기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은 기타보전금(310-04목) 591억 1,600만원이며 528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62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59,141	59,141	0	△25	0	59,116	52,826	0	6,290
정착기본금	8,612	8,612	0	0	0	8,612	8,612	0	-
주거지원금	19,840	19,840	0	0	0	19,840	18,695	0	1,145
정착장려금	12,048	12,048	0	0	0	12,048	10,589	0	1,459
보로금	455	455	0	0	0	455	766	0	△311
가산금	1,636	1,636	0	0	0	1,636	802	0	834
사립대공납금	4,908	4,908	0	0	0	4,908	4,120	0	788
고용지원금	9,821	9,821	0	△25	0	9,796	7,393	0	2,403
미래행복통장	1,821	1,821	0	0	0	1,821	1,849	0	△28

자료: 통일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2337-301

정착지원금 등 초기 재정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보호 결정²⁾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원 퇴소 시 초기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이 지급되고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간 잔여 정착기본금, 정착장려금, 가산금, 고용지원금 등이 각 요건에 따라 지급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의3·제19조·제19조의2·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이후 정착 과정]

구 분	임시보호, 합동신문	사회적응 및 직업훈련	교육수료 및 사회배출	사후관리
장소 (기관)	국가정보원	하나원	하나원(퇴소)	하나센터 등
기간	2~3개월	3개월	-	5년 (거주지 보호기간)
재정지원	-	-	정착기본금(초기), 주거지원금 (하나원 수료 직전 주거지 결정) 등	정착기본금 (잔여), 가산금, 정착장려금 사립대공납금, 고용지원금, 미래행복통장 등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기 재정지원 내용]

구 분	시기	대상	지급기준 및 내용
정착기본금	하나원 퇴소시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초기 400만원, 이후 분기별 100만원(3회)
주거지원금	하나원 퇴소시		임대보증금(1,300만원 한도) LH 등 사업주체 에게 지급(잔액은 5년 후 신청에 의해 지급)
(지방거주 장려금)	하나원 퇴소 2년 후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지방거주자)	서울·경기·인천 제외 광역시 130만원, 기타 지방 260만원
가산금	하나원 퇴소 1년 후 (정착기본금 지급 후) 분기별 분할 지급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 장애: 등급별 360~1,540만원 - 장기치료: 입원 기간별 240~720만원 (중증질환 3~9개월 입원시 월 80만원 지급) -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360만원 - 제3국 출생자녀 양육: 자녀 1명당 400만원 (2명 이내) - 연령(만60세 이상) 가산금: 720만원 ※ 1개 이상 요건 해당 시 최대 금액 1건만 적용
정착장려금	하나원 퇴소 후 5년 이내		- 직업훈련 장려금: 최대 160만원, 우선선정 직중 수료시 추가 200만원 - 자격취득 장려금: 200만원 - 취업장려금: 6개월~3년간 연차별 지급 · 수도권 6개월 200만원, 1년차 450만원, 2년차 550만원, 3년차 650만원

구 분	시 기	대 상	지급기준 및 내용
사립대공납금	하나원 퇴소 후 5년 이내		· 지방: 6개월 250만원, 1년차 550만원, 2년차 650만원, 3년차 750만원 · 사립대학 등록금의 1/2 보조
고용지원금			탈북민 고용 사업주에게 분기별 지급 (1인당 최대 48개월분 지급 가능) - 임금의 1/2 지원(월 50만원 한도), 기본 3년(동일직장 장기근속 등의 경우 최대 4년)
미래행복통장			근로소득의 50% 이내 10~50만원 중 본인이 약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1:1 매칭 지원, 최대 4년(약정 2 + 연장 2년)
보로금	수시		10억원 범위 내 정보가치에 따라 지급

주: 직업훈련 장려금과 자격취득 장려금, 고용지원금은 2014.11.29.(「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미래행복통장은 2014.11.29. 이후 입국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착장려금 등 예산의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의 2017년 예산 불용률은 10.6%로,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은 탈북자의 국내 입국인원을 반영하여 편성하는데, 2017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인원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정착금 지급 사업 중 정착장려금(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장려금)과 가산금, 사립대공납금, 고용지원금(탈북민 고용 사업주에게 임금의 1/2 지원)은 기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항목으로 54억 8,4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체 불용액 62억 9,000만원의 87.2%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기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항목의 과다 불용액 발생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항목의 불용률이 높다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기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항목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정착장려금, 가산금, 사립대공납금, 고용지원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정착금		정착장려금	가산금	사립대공납금	고용지원금
		지급 사업	계				
2015	예산액	77,000	42,753	20,132	1,680	4,198	16,743
	집행액	64,483	35,961	16,761	1,341	4,555	13,304
	불용액	12,517	6,792	3,371	339	△357	3,439
2016	예산액	69,160	33,802	16,014	1,680	4,198	11,910
	집행액	59,681	29,012	13,477	1,052	4,216	10,267
	불용액	8,450	4,790	2,537	628	△18	1,643
2017	예산액	59,141	28,413	12,048	1,636	4,908	9,821
	집행액	52,116	22,904	10,589	802	4,120	7,393
	불용액	6,290	5,484	1,459	834	788	2,403

자료: 통일부

둘째, 보로금 예산의 초과집행이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보로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³⁾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⁴⁾에 근거하여 보호대상자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5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5억원 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5억원 이하
3.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3억원 이하
4.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5천만원 이하
5. 재화: 시가 상당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또는 장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비이다. 2017년도 예산액은 4억 5,500만원이었으나, 실 집행액은 7억 6,600만원으로 3억 1,100만원의 부족이 발생하여 동 경비의 부족분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예산 불용액을 활용하여 지급되었다.

[최근 5년간 보로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내역	예산액	지급현황			불용액
			지급내역	지급인원	지급액	
2013	20,000천원×20명	400	보상금	40	293	107
2014	20,000천원×10명	200	보상금	37	551	△351
2015	6,100천원×40명	244	보상금	19	524	△280
2016	8,900천원×39명	350	보상금	51	1,085	△735
2017	14,219천원×32명	455	보상금	44	766	△311

자료: 통일부

동 예산은 2014년부터 매년 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의 부족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통일부는 2013~2015년 최근 3년간 평균지급 인원수 및 1인당 평균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정보활용 가치가 높은 고위탈북자 증가 등으로 초과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일부는 2017년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안보에 가치 있는 정보의 지급한도를 종전의 2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2배 인상하였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10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 보로금 예산은 7억 5,600만원으로 2016년도 집행액 10억 8,500만원 및 2017년도 집행액 7억 6,600만원보다 적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예산 부족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향후 적정예산의 편성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로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5.8.>

[보로금 지급한도 변경내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2억 5천만원 이하	5억원 이하
군함·전투폭격기	1억 5천만원 이하	5억원 이하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재화	시가 상당액	시가 상당액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억원 이하

자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가. 현 황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¹⁾에서 2016년에 신규로 추진한 내역사업이다. 동 프로그램은 공직자 통일준비 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부 및 유관부처²⁾ 공무원 대상 단기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7~8년 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통일부 직원조차 남북관계 현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하여, 단순 강의형 교육에서 벗어나 워크숍·현장탐방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신설되었다. 2017년도 예산으로는 7,700만원이 편성되었고 7,6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통일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3,832	3,832	0	0	0	3,832	3,766	0	66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	77	77	0	0	0	77	76	0	1

자료: 통일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일반회계 5031-304

2) 통일부는 유관부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남북관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가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6년에는 기획재정부 2명, 문화체육관광부 2명, 국무조정실 1명, 인사혁신처 1명 등 총 6명이, 2017년에는 통일준비위원회 1명, 문화체육관광부 1명, 기획재정부 1명, 인사혁신처 1명 등 총 4명이 유관부처 공무원으로서 동 교육에 참여하였다.

나. 분석의견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통일부 공무원반’, ‘중견실무 공무원반’과 목적·대상·구성 등에서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 프로그램을 별개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 통일부 공무원반, 중견실무 공무원반은 목적이 공직자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다만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통일부 공무원반은 통일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통일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능력 배양에 초점이 있으며,³⁾ 중견실무 공무원반은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측면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교육 내용의 경우 통일부 공무원반과 중견실무 공무원반은 기본적으로 강의·수강·토론 등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견실무 공무원반의 경우 국내 현장견학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강의와 국내 현장견학에 더하여 사이버교육과 해외 현장교육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상시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국내 현장견학 및 전문강의는 통일부 공무원반 및 중견실무 공무원반의 교육과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존의 교육과정과 실질적으로 차별화되는 부분은 해외 현장견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통일부는 2018년부터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명칭을 ‘공직자 평화통일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 통일부 및 타 중앙부처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체험형 현장교육으로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통일부와 타부처의 참석비율을 50:50까지 확대 배정하여, ‘현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세부 과목을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유사 프로그램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	통일부 공무원반	중견실무 공무원반
목적	공직자 통일준비 역량 강화	통일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능력 배양 및 가치관 확립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업무 능력 배양
2017년 집행액	79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76 + 통일교육원 기본경비 3)	13	6
대상	통일부 및 유관 부처 5급 이하 직원	통일부 5급 이하 공무원	전 부처 6급 이하 공무원
구성	사이버 교육(750분), 국내 현장견학(2일), 전문강의(3일), 해외 현장견학(7일)	기본 및 전문과목 수강, 토론 등 참여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총 2일간 진행	기본 및 전문과목 수강, 토론 등 참여활동,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되며 총 3일간 진행
강좌 개설 횟수	1회	6회	3회
총 참여 인원	24인 (통일부 20인, 유관부처 4인)	230인	106인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16~2017년 동안 해외 현장견학 목적으로 방문한 장소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와 몽골 울란바토르였고, 2017년의 경우 현지에서의 주요 교육내용은 이르쿠츠크국립대 교수, 러시아철도공사 국장 등 현지전문가의 세미나 및 특강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해외 현장견학은 국내 집합교육의 연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통일준비 역량강화라는 목적 달성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반드시 해외 현장견학을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이나 차별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중 해외 현장견학 주요 일정]

일 자	시 간	주요 일정
6.29(목)	09:30~11:00	○ 이르쿠츠크국립대 세미나 - 한·시베리아 협력 현황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협력방향
	11:30~13:00	○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 초청간담회: 시베리아지역의 현황과 전망
	20:00~21:30	○ 통일교육원 교수 특강: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통일
6.30(금)	15:00~16:30	○ 러시아철도공사 워크숍: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한 교통·물류 현황과 전망, 한국과의 협력방향
	17:30~18:30	○ 역사현장방문: 데카브리스트박물관, 중앙시장
	19:30~21:00	○ 고려인협회 초청 만찬 간담회
7. 1(토)	08:12	○ TMGR 몽골횡단철도 체험(이르쿠츠크→울란바토르)
	10:00~12:00	○ 열차내 워크숍 I(분임토의 및 발표) -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민족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
	17:30~18:30	○ 열차내 워크숍 II(통일교육원 교수 강의) - 한반도 통일과 유라시아 지역의 의미
7. 2(일)	09:00~11:00	○ 역사현장방문: 자이승 승전기념탑, 이태준의사 기념공원
	12:30~15:00	○ 테를지 국립공원 이동
	16:30~18:00	○ 전통문화체험: 게르(몽골 전통가옥), 어워(몽골 샤머니즘 상징)
	20:30~21:30	○ 몽골민족대 교수 특강 - 몽골사회 현황 및 한국과 몽골의 관계발전을 위한 제언
7. 3(월)	10:30~12:00	○ 몽골민족대 세미나 - 한·몽 협력 현황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협력방안
	12:00~13:30	○ 주몽 한국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
	15:00~16:30	○ 울란바토르철도공사(UBTZ) 세미나 - TMGR을 통한 교통·물류 현황과 전망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동 사업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북·중·러 접경 지역으로의 해외 현장견학이 반드시 필요하며, 당초 해외 현장견학의 일환으로 북한접경지역에 대한 견학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2년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러시아 및 몽골 방문으로 대체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통일준비 공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기존의 교육 과정과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프로그램을 별개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두 개의 사업에서 분산 집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통합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에는 해외 현장견학을 위한 일반용역비만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고, 국내 현장견학 및 전문강의에 소요되는 강사료 및 차량임차료 등은 통일교육원 기본경비로 집행하고 있다.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통일교육원 기본경비(5018-250)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건 명	집행액	건 명	집행액
일반수용비 (210-01목)	강사료, 교재비 등	1,970	-	-
임차료 (210-07목)	현장견학 차량임차	672	-	-
국내여비 (220-01목)	기관 견학 등	77	-	-
일반용역비 (210-14목)	-	-	-	75,803
합 계		2,719	-	75,803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일부는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중 국내 현장견학 및 전문강의의 경우 통일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원내교육과 유사하므로 통일교육원 기본경비를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유사한 경비가 여러 사업에서 분산 집행될 경우 총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고 투입 대비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2016.9.4.)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¹⁾에 근거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28일 출범하였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²⁾ 사업을 통해 직접 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도 예산현액 7억 6,600만원 중 집행액은 7억 4,000만원이고 2,6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958	958	0	△192	0	766	740	0	26
북한인권실태 자료발간	152	152	0	△122	0	30	27	0	3

자료: 통일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북한인권법」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코드명: 일반회계 2135-303

나. 분석의견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실태 자료발간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향후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2017년 북한인권실태 자료발간 예산은 종합적인 북한인권 실태를 다루는 정례보고서 발간, 주제별·권리별 북한인권 실태를 다루는 북한인권 사건보고서 발간, 북한인권실태 정례보고회 개최 등을 위해 총 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은 2,70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률이 17.8%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³⁾

[2017년 북한인권실태 자료발간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비 목	예산액 각목명세서		세부집행내역	
	내 용	금액	내 용	금액
210-01목	연례보고서 발간	57	1주년 보고서 발간	23
210-01목	사건보고서 발간	60	-	-
210-01목	정례보고회	2	-	-
210-02목	보고서 발송료 등	10	1주년 보고서 발송료	4
210-07목	정례보고회 장소 임차료 등	1	-	-
220-01목	국내 정례보고회 관련 출장비	1	-	-
220-02목	해외 정례보고회 출장비	14	-	-
240-01목	자료발간 관련 업무협의	7	-	-
합 계		152	-	27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동 예산의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2017년 1월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결과가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아, 연례보고서 및 사건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북한인권기록센터 개관, 업무추진 경과, 조사 및 기록방법, 주요 업무계획,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인권기록센터 1주년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와 같은 보고서 발간 규모 축소 및 정례보고회 등 행사 비용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3) 북한인권기록센터의 2018년 북한인권실태 자료발간 예산은 1억 4,900만원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하는 교육생 및 사회 진출 탈북민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총 981명(여성 784, 남성 197)을 조사하였다.

[2017년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 실적]

(단위: 명)

기 간	조사 인원		소 계
	남성	여성	
2017년 1월	25	72	97
2017년 2월	23	59	82
2017년 3월	17	60	77
2017년 4월	15	67	82
2017년 5월(1차)	11	46	57
2017년 5월(2차)	8	68	76
2017년 6월	9	74	83
2017년 7월	11	68	79
2017년 8월	20	63	83
2017년 9월	24	65	89
2017년 10월	11	36	47
2017년 11월	17	53	70
2017년 12월	6	53	59
합 계	197	784	981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조사 업무가 2017년 1월부터 시작하여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결과가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2017년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 예산 편성 시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⁴⁾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사)북한인권정보센터도 2007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발간하는 정례보고서 및 사건보고서의 차별화를 위한 신중한 검토 및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8」은 총 465쪽 분량이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1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2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3장), 취약계층(4장), 주요사안(5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백서 발간 예산으로 2017년 6,100만원을 편성하여 5,800만원을 집행하였다.

5)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7 북한인권백서」는 총 632쪽 분량이며, 발간목적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서론(1장), 북한인권 사건 및 인물 개요(2장), 사건유형별 인권침해상황(3장),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식 변화와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 상황, 북한 내 마약 실태 등을 다룬 특별보고서(4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현 황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¹⁾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0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²⁾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창업지원, 직업역량교육지원, 청소년 교육지원, 인식제고,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는 통일부이며 2011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부터 '남북하나재단'이란 대외명칭(별칭)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³⁾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관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업이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액 230억 2,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23,020	23,020	0	0	23,020	23,020	0	0

자료: 통일부

이병철 예산분석관(bclce@assembly.go.kr, 788-3745)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3) 코드명: 일반회계 2331-302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 절차를 살펴보면, 국내 입국 직후 정부의 합동조사를 거쳐 통일부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한다. 하나원에서 심리안정, 진로지도, 기초직업훈련 등 사회적응교육(12주, 406시간)을 마친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로 전입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비롯한 정착지원기관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주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주요 내용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8,010	7,877	○전문상담사 인력운영 ○지역전입초기 생활밀착지원, 하나센터 평가 등 ○지역주민통합사업, 상담센터, 의료상담실 운영 ○의료비, 긴급생계, 생활안정물품, 공동생활시설
자립·자활 지원	3,690	3,070	○사회적기업 지원, 자활사업단 운영 ○영농정착, 창업지원, 창업인큐베이터 ○취업지원센터, 취업바우처, 온라인배움터 등
교육개발 및 지원	4,703	4,631	○장학사업, 진로진학, 연수프로그램 등 ○청소년 교육시설, 그룹홈,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정보화교육 등 ○정착지원전문관리사 양성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제고	1,863	1,806	○정기간행물 제작, 공익광고, 행사개최 등 ○국제협력, 해외실태조사 등 ○민간단체활동지원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1,212	1,054	○이사회 운영, 정책연구, 정착실태조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나. 분석의견

첫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하나원 입소자에게 정보화 기초교육 예산을 지원 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으며, 정보화 실용교육도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취업바우처사업과 통합하여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사회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보화교육사업예산은 2014년 7억원, 2015년 6억원, 2016년과 2017년은 3억 3,4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교육지원 인원은 2014년 3,823명, 2015년 3,660명, 2016년 2,641명, 2017년 2,590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사업 예산 및 교육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명)

	2014	2015	2016	2017
예산	700	600	334	334
교육지원인원	3,823	3,660	2,641	2,590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7년 재단은 정보화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교육과 실용교육으로 교육대상을 구분하여 운영하였다.⁴⁾ 기초교육은 하나원⁵⁾에 입소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실용교육은 일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용교육장(서울)과 민간교육기관(광주) 1곳에서 교육을 진행하여, 기초교육 2,415명, 실용교육 175명이 수료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년도 정보화교육사업 실적 현황]

(단위: 명)

기초교육					실용교육		
	성인반	야간 /주말반	청소년반	계	정보화 진흥원	민간교육 기관	계
하나원 본원	960	960	93	2,013	164	11	175
하나원 분원	201	201	0	402			
합계	1,161	1,161	93	2,415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하나원 입소자에게 정보화 기초교육을 위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⁶⁾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하나원

4) 기초교육은 컴퓨터 및 인터넷 기초, 한글 기초 등이며, 실용교육은 OA, 그래픽, 모바일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통일부 소속기관이다.

을 퇴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기정착 및 자립자활 지원, 교육 등을 위한 기관이고, 특히 하나원은 이미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⁷⁾ 예산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본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최근 5년간 하나원(분원 포함) 교육훈련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13,894	14,108	13,386	12,813	13,379
하나원 교육훈련	10,116	10,386	9,679	9,813	10,449
제2하나원 교육훈련	3,778	3,722	3,707	3,000	2,930

그리고 재단은 동 사업계획에서 정보화 실용교육은 1~2개의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60명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1개 민간교육기관에서 11명 교육수료에 그쳐 실질적인 교육수요가 있었는지, 사업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⁹⁾

아울러 재단은 ‘취업바우처지원’¹⁰⁾ 사업을 통해 정보화 실용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이 있다. 동 사업과 통합하여 정보화 교육 수요자가 지역과 교육기관,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통일부 감사(2017.2.)에서도 하나원 정보화기초교육은 하나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정보화 실용교육은 취업과 연계하여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7) 코드명: 일반회계 2337-302

8)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교육생들은 정규교육(406시간)과 보충교육(368시간, 자율참여)을 통하여 사회 진출 전 정착에 필요한 기초소양을 배양한다. 정규교육은 △정서안정·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진로지도·직업탐색 △초기정착지원 안내 △생애설계 프로그램 등 5개 분야로 구성, 보충교육은 △사이버 △언어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탈북민의 취업역량 강화 및 정착지원 관계자·기관과의 유기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심화·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9)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위탁계약시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기관 1~2곳을 선정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기로 하고, 울산, 대구, 광주 3개 기관이 신청했으나 울산과 대구는 교육생 모집 미달로 협약이 해지되었다.

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취업에 필요한 개별 학습지원을 위해 재단이 인정한 취업 관련 교육과정 학습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 395명이 공무원,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미용, 요리, 전기 등) 중장비 등을 수강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온라인배움터 사업의 강좌이수율과 자격증 취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강좌진도율과 연계한 수강생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학습 콘텐츠¹¹⁾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225개 강좌를 개설하는데, 9,610만원을 집행하였다.

[연도별 개설강좌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집행액	166	160	114	106	96.1
개설강좌	102	300	237	304	225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7년 회원가입 수는 330명에서 수강인원은 304명이었으나 자격취득자는 7명(2.3%)에 그쳐 전년대비 자격취득율(9.6%)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자격취득율 5.6%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수강신청 304명 중 강의 수료자¹²⁾가 80명(26.3%)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원가입자와 수강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강좌 수강시에 교육비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급하는 등 교육 수강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지원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¹³⁾

11) 국가자격, 민간자격, 어학(중국어, 영어, 일어), 컴퓨터과정 교양과정 등 개설

1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진도율 70%이상 달성 시 수료자로 보고 있다.

13) 2018년은 재단 직접운영으로 전환하고 교육생이 계획서를 제출 후 사전에 학습비를 결제한 뒤 진도율이 60%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온라인배움터 연도별 사업 실적]

(단위: 명, %)

	회원가입	수강인원	자격취득(연도말 시점)	
			자격취득자	자격취득율
2013	280	280	9	3.2
2014	276	276	22	8.0
2015	240	231	11	4.8
2016	329	303	29	9.6
2017	330	304	7	2.3
평균	291.0	278.8	15.6	5.6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00만원이며,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7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	6	6	7	7	0	0	116.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7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73억 2,600만원이며, 이 중 99.2%인 271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7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7,326	27,326	27,326	27,121	0	205	99.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산은 193억 3,900만원이고 부채는 없으므로 순자산은 193억 3,9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3,100만원(0.2%)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100만원, 일반유형자산 187억 2,600만원, 무형자산 6억 2,1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등으로 인한 것으로 유동자산은 선급비용 100만이 증가하였고, 일반유형자산은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자본적 지출로 건물가액이 증가하였으며, 구축물 기계장치 및 기타 일반 유형자산은 신규 취득 및 감사상각으로 인하여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9,800만원(0.5%) 증가하였다.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으로 인해 6,700만원(9.9%)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9,339	19,308	31	0.2
Ⅰ. 유동자산	1	0	1	0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18,726	18,628	98	0.5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621	679	△67	△9.9
Ⅵ. 기타비유동자산	0	0	0	0
부 채	0	0	0	0
Ⅰ. 유동부채	0	0	0	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19,339	19,308	31	0.2
Ⅰ. 기본순자산	12,238	12,238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364	△1,395	31	0.2
Ⅲ. 순자산 조정	8,465	8,465	0	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17년도 프로그램 순원가는 278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1,500만원(3.0%) 증가하였으며, 비배분비용은 전기에 발생한 재산평가손실 1,0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당기에 정부외 자산기부 100만원이 발생하여 전기 대비 900만원(90.0%) 감소하였고, 비배분수익은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16.7%) 감소하였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8억 500만원(3.0%) 증가한 278억 800만원이며, 비교환수익 등은 없으므로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는 동일하다.

단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우 재정운영표 작성지침에 따라 단일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는 프로그램 순원가에 집계되어 순원가와 총원가는 같다.

[2017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7,834	27,019	815	3.0
가. 프로그램 총원가	27,834	27,019	815	3.0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II. 관리운영비	0	0	0	0
III. 비배분비용	1	10	△9	△90.0
IV. 비배분수익	7	6	1	16.7
V.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27,808	27,023	805	3.0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VI)	27,828	27,023	805	3.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193억 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93억 3,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억 1,000만원(0.2%)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278억 2,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8억 500만원(3.0%)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당기에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아 전기 대비 2억 200만원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278억 6,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6억 6,700만원(2.5%)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271억 2,100만원과 기타
 재원조달 7억 4,600만원 등 재원의 이전 7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19,308	18,936	372	2.0
II. 재정운영결과	27,828	27,023	805	3.0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7,860	27,193	667	2.5
IV. 조정항목	0	202	△202	순감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9,339	19,308	31	0.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①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합된 통일정책 자문건의, ② 법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실효성 높은 정책건의, ③ 다양한 통일여론 수렴 활동 추진, ④ 자문위원 통일준비 역량강화, ⑤ 재외동포 및 국제사회 통일지지 기반 강화 등을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17년 국내·해외 출범회의의 참석률(각각 48.1%, 68.1%) 및 만족도(총점 100점 중 76점)가 2013년, 2015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참석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사 성격의 출범회의 개최를 지양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내·외 직능 자문위원 중 청년위원의 비중이 16기 24.9% → 17기 20.9% → 18기 20.4%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여성위원의 경우 16기 30.0% → 17기 31.6% → 18기 29.6%로 18기 여성위원의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회의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위촉 시 연령별·성별 편중현상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자문회의 운영 사업의 문제점

자문회의 운영 사업¹⁾은 통일정책 건의를 위한 법정회의 개최,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17년도 예산현액 41억 4,700만원 중 40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7,600만원을 불용하였다.

자문회의 운영 사업은 ①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 ② 국내·해외 출범회의 사업, ③ 간부위원 활동지원 사업, ④ 통일여론 수렴·분석 사업, ⑤ 직능별 정책회의 사업, ⑥ 자문위원 일반지원 사업, ⑦ 자문회의 구성 사업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문회의 운영	4,211	4,211	0	△64	4,147	4,071	0	76
정책건의· 법정위원회 운영	841	841	0	25	866	857	0	9
국내·해외 출범회의	2,097	2,097	0	△70	2,027	2,003	0	24
자문회의 구성	300	300	0	1	301	300	0	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영미 예산분석관(ymlee@assembly.go.kr, 788-4640)

1) 코드명: 일반회계 1031-300

1-1. 국내·해외 출범회의 내실화를 통한 참석률 및 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가. 현 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²⁾에 의거하여 격년으로 개최되며, 새로운 자문위원단 출범에 따른 활동비전과 목표 공유,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범회의는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진행되며, 해외의 경우 5개 지역(일본, 중국, 아세안, 미주, 유럽)에서 43개 지역협의회³⁾별로 출범회의가 개최된다.

2017년에는 9월 1일에 새롭게 출범한 18기 자문위원을 위한 국내 출범회의가 10월 31일 강릉에서 개최되어, 국내 자문위원 및 해외 간부위원 7,781명이 참석하였고 12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다. 해외 출범회의는 9월 16일~12월 2일 해외 각 권역에서 개최되어, 해외 자문위원 2,473명이 참석하였고 7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7년 국내·해외 출범회의 개최 현황 및 집행 내역]

(단위: 명, 백만원)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예산 집행액
국내 출범회의	2017.10.31.	강릉 아이스아레나	7,781	1,228
해외 출범회의	2017.9.16.~12.2.	(각 지역협의회 별로 상이)	2,473	796
총계				2,02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3) 지역협의회는 일본지역 4개(일본동부, 일본중부, 일본근기, 일본서부), 중국지역 5개(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선양), 아세안지역 7개(서남아, 동남아남부, 동남아북부, 동남아서부, 호주, 뉴질랜드, 중앙아시아), 미주지역 20개(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샌디에고, 휴스턴, 달라스, 애틀란타, 마이애미,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덴버, 시애틀, 시카고, 토론토, 밴쿠버, 브라질, 중미·카리브, 남미서부), 유럽지역 7개(영국, 남유럽, 북유럽, 중동, 아프리카,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로 구성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해외 출범회의의 구성,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여 자문위원들의 참석률 및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국내 출범회의의 참석률은 48.1%로, 2013년 61.1%, 2015년 60.1%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해외 출범회의의 참석률 역시 2013년 76.1%, 2015년 75.6% 보다 낮은 68.1%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해외 출범회의의 참석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3년 (16기)		2015년 (17기)		2017년 (18기)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자문위원수	16,512	3,275	16,805	3,278	16,174	3,630
참석자수	10,088	2,492	10,106	2,479	7,781	2,473
참석률	61.1	76.1	60.1	75.6	48.1	68.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또한 국내·해외 출범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의 만족도를 100점으로 환산⁴⁾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85점에서 2017년 76점으로 만족도가 낮아졌다.

[국내·해외 출범회의의 만족도 관련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단위: 점, %)

구분	2013년 (16기)	2015년 (17기)	2017년 (18기)
목표	80	83	86
실적	81	85	76
달성도	101	102	8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18기 자문위원 구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자문회의의 구성이 과거에 비하여 2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회의 일정 확정 및 통보가 촉박하게 이루어져 자문위원들이 일정 조율, 교통편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은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4) $\Sigma(5\text{점 척도별 점수} \times \text{항목별 응답자수}) / \text{응답자수} \times 100\text{점}$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과 같이 2017년에 발생한 예외적 상황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하더라도, 2013년 이래 참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2013년, 2015년, 2017년에 실시된 출범회의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⁵⁾에서 출범회의 일정 사전 공지, 참석 경비 지원 확대, 각종 축하 및 식전행사 단축, 자문위원 참여 프로그램 확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임무·역할 등에 대한 안내 필요 등이 꾸준히 향후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행사 성격의 출범회의 개최를 지양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1-2. 자문회의 구성의 국민 대표성 제고 노력 필요

가. 현 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⁶⁾ 및 제10조⁷⁾, 동법 시행령 제4조⁸⁾에 의거하여 대통령에게 통일정책 관련 건의 및 자문을 제공하는 인

5) 만족도 조사는 출범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e-mail, 모바일 등을 통하여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며, 출범회의의 프로그램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는 4~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5.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사인 자문위원을 격년으로 위촉하고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① 각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제청에 의해 위촉되는 지역대표와 ②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대표급 인사 중 관계 부처 장관, 정당대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추천에 의해 위촉되는 직능대표로 구분된다.

2017년 9월 1일 위촉된 18기 자문위원은 총 1만 9,710명으로, 지역대표 2,980명과 직능대표 1만 6,730명(국내 1만 3,100명 및 해외 3,6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3.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8기 자문위원 위촉 현황]

(단위: 명)

구분	위촉대상	위촉인원	추천기관 및 배정기준
지역 대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	2,980	▶ 민주평통 사무처장 제청 - 위촉희망 지방의원 대상
직능 대표	시·도 및 시·군·구 지도급 인사	4,009	▶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 시도별 인구 비례, 19~60명 배정 ▶ 기초자치단체장 추천 - 시군구 인구 비례, 12~40명 배정
	이북5도 대표	359	▶ 이북5도지사 추천 - 도민수 비례 12~84명 배정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 추천 지도급 인사	276	▶ 30개 정당 추천 - 1명씩 균등배분 + 의석수 비율
		1,728	▶ 지역구 국회의원별 추천 - 지역 유권자 16만명 기준 5~6명 배정 ▶ 비례대표 국회의원별 4명 추천
	재외동포 대표	3,630	▶ 재외공관장 추천 - 자문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교민수 비례 배정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	533	▶ 30개 부처 장관 등 추천 - 등록단체수 기준, 통일관련단체 가중치 - 부처별 최소 추천인원 5명 배정
	기타 통일과업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인사	6,159	▶ 민주평통 사무처장 제청 - 열린추천 등
	직능대표 소계	16,730	
합계		19,71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회의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위촉 시 연령별·성별 편중현상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 위촉 시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 비중의 청년 및 여성 위원이 위촉되었는지 여부를 성과지표로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 대비 실적이 2015년 96%, 2017년 92%로 점차 감소⁹⁾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16~18기 직능 자문위원 중 45세 이하 청년위원의 비중은 16기 24.9%, 17기 20.9%, 18기 20.4%로 점차 감소하여 2017년 현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성위원 비중의 경우에도 16기 30.0%, 17기 31.6%와 비교했을 때 18기가 가장 낮은 29.6%를 나타내고 있다.

[직능 자문위원 중 청년 및 여성위원 위촉 현황]

(단위: 명, %)

구분	16기 (2013.7.1.~2015.6.30.)		17기 (2015.7.1.~2017.6.30.)		18기 (2017.9.1.~2019.8.31.)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총 국내·해외 직능 자문위원	16,852	100.0	16,790	100.0	16,730	100.0
청년 자문위원	4,199	24.9	3,510	20.9	3,407	20.4
여성 자문위원	5,054	30.0	5,301	31.6	4,949	29.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의 경우 위촉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해외의 경우 1세대 혹은 1.5세대 남성 교민으로 후보자 풀(pool)이 구성되는 경향이 있어 청년 및 여성위원 위촉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6, 17기와 비교했을 때 18기 자문위원 중 청년 및 여성위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만큼, 더 이상 자문회의 구성의 대표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후보자 풀(pool) 구성에서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문위원 위촉 시 특정 연령 및 성별이 과대 혹은 과소 대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9) 성과 측정산식은 (청년위원 위촉목표 달성도) × 0.5 + (여성위원 위촉목표 달성도) × 0.5이다. 목표치는 각 년도 모두 105%로 설정하였으나 2015년 실적은 101%, 2017년 실적은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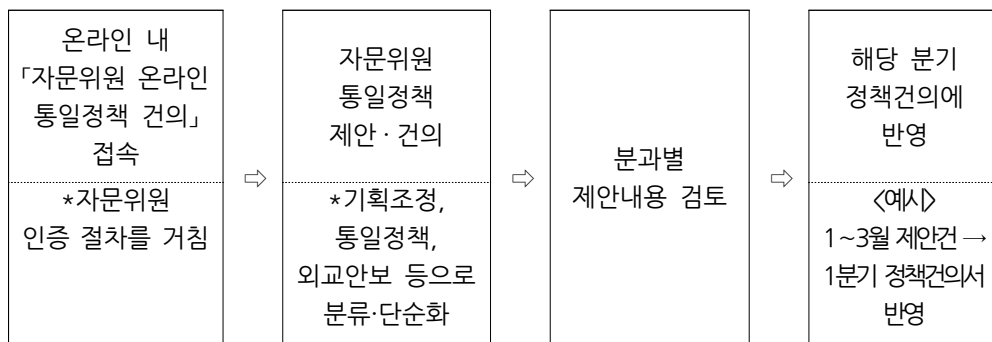
1-3.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의 활성화 노력 필요

가. 현 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3월 홈페이지 상에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정기회의 등과 같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을 활용하여 정책건의를 위한 창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2만 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통일정책 관련 건의를 게재할 수 있다. 제안된 건의는 ① 기획·조정, ② 통일·정책, ③ 외교·안보, ④ 경제·과학·환경, ⑤ 통일·교육·홍보, ⑥ 문화·예술·체육, ⑦ 인권·법제, ⑧ 종교·복지, ⑨ 여성·탈북민지원, ⑩ 청년, ⑪ 기타 등 11개의 분과¹⁰⁾로 분류되어 내용이 검토되고, 해당 분기의 정책건의 시 반영된다.

[온라인 정책건의 시스템 운영 방식]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 2018년부터는 대내·대북·대외정책의 3개 분과로 정책건의 분류를 단순화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2017년 구축한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바, 동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의 정책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시스템이 구축된 3월 이래 총 64건의 건의만이 온라인상에 게재되어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17기 자문위원 1만 9,947명의 임기(2015.7.1.~2017.6.30.)가 종료되고 18기 자문위원 1만 9,710명의 임기(2017.9.1.~2019.8.31.)가 시작되기 전인 7, 8월을 제외하더라도, 월 평균 15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활용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의 월별 실적 현황]

(단위: 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건의 수	17	8	1	5	0	1	17	4	9	2	64
자문위원현황	17기(19,947명)				-		18기(19,710명)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개 분과별로 건의 건수를 살펴보면, 종교·복지와 여성·탈북민지원 분과의 경우 건의가 전무하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통일·교육·홍보 분과에 있어서도 14건에 불과하다.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의 분과별 실적 현황]

(단위: 건)

	기획 조정	통일 정책	외공 안보	경제 과학 환경	통일 교육 홍보	문화 예술 체육	인권 법제	종교 복지	여성 탈북민 지원	청년	기타	총계
건의 수	7	12	10	1	14	6	1	0	0	4	9	6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온라인 시스템을 홍보하고 활용을 권장하였으나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건의 방식을 선호하는 고령의 자문위원들이 대다수여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7, 18기 직능 자문위원 중 약 20%(각각 3,510명, 3,407명)가 온라인 시스템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45세 이하의 청년 자문위원임에도 이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문위원들의 시스템 활용을 권장·안내하고, 충실한 내용의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토론 및 논의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방위원회



국방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095억 9,900만원(4.3%)이 증가한 2조 6,463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275억 9,300만원(4.6%)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340,091	1,240,864	1,240,864	1,398,043	157,179	57,952
기금	1,433,874	1,295,909	1,295,909	1,248,329	△47,580	△185,545
합계	2,773,965	2,536,773	2,536,773	2,646,372	109,599	△127,593

자료: 국방부

2017회계연도 국방부 총지출은 추가경정 예산 대비 5,087억 5,800만원(1.7%)이 감소한 29조 6,029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096억 3,300만원(3.2%)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5,239,938	26,465,563	26,465,563	26,005,481	△460,082	765,543
기금	3,453,385	3,646,151	3,646,151	3,597,475	△48,676	144,090
합계	28,693,323	30,111,714	30,111,714	29,602,956	△508,758	909,633

자료: 국방부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3,250억 9,800만원이며, 1조 5,828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3.6%인 1조 4,822억 7,700만원을 수납하고 997억 9,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8억 1,9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 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37,060	237,060	237,060	350,550	272,663	77,840	47	77.8
주한미군기지가전특별회계	737,755	737,755	737,755	785,271	783,545	1,726	0	99.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05,643	305,643	305,643	398,903	377,899	20,232	772	94.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4,640	44,640	44,640	48,170	48,170	0	0	100.0
합계	1,325,098	1,325,098	1,325,098	1,582,894	1,482,277	99,798	819	93.6

자료: 국방부

2017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9조 8,548억 8,100만원이며, 이 중 96.2%인 28조 7,210억원을 지출하고 6,298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40억 6,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8,137,698	28,137,698	28,632,312	27,711,657	510,324	410,331	96.8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37,755	737,755	842,682	698,538	85,007	59,137	82.9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05,643	305,643	329,140	265,328	34,485	29,327	80.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0	50,747	45,477	0	5,270	89.6
합계	29,181,096	29,181,096	29,854,881	28,721,000	629,816	504,065	96.2

자료: 국방부

다.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4조 4,633억 100만원이며, 4조 156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9.5%인 3조 9,955억 9,400만원을 수납하고, 200억 3,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4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군인연금기금	3,145,114	3,145,114	3,145,114	3,169,653	3,166,115	3,538	0	100.7
군인복지기금	1,318,187	1,318,187	1,318,187	845,989	829,479	16,496	14	98.0
합계	4,463,301	4,463,301	4,463,301	4,015,642	3,995,594	20,034	14	99.5

자료: 국방부

2017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4조 4,633억 100만원이며, 이 중 89.5%인 3조 9,955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45억 6,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53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군인연금기금	3,145,114	3,145,114	3,145,167	3,166,115	0	5,963	100.7
군인복지기금	1,318,187	1,318,187	1,319,383	829,479	4,563	39,398	62.9
합계	4,463,301	4,463,301	4,464,550	3,995,594	4,563	45,361	89.5

자료: 국방부

라.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국방부의 자산은 204조 9,522억 9,331만원, 부채는 185조 9,534억 282만원으로 순자산은 18조 9,988억 9,048만원이다.

자산은 전년 대비 7조 4,312억 3,596만원(3.8%) 증가한 바, 일반유형자산 196조 2,760억 4,845만원, 유동자산 6조 5,574억 7,087만원, 투자자산 1조 7,000억 9,329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국유재산 재평가에 따른 기타일반유형자산 4조 5,920억 9,509만원 증가, 군수품 도입 등 전비품 1조 3,396억 4,953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년 대비 18조 8211억 2157만원(11.3%) 증가한 바, 장기충당부채 175조 6,384억 5,835만원, 기타비유동부채 6조 1,042억 8,291만원, 장기차입부채 2조 5,367억 97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군인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18조 7,741억 205만원 증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채원 조달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2,699억 6,99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국방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04,952,293	197,521,057	7,431,236	3.8
Ⅰ. 유동자산	6,557,471	6,015,802	541,669	9.0
Ⅱ. 투자자산	1,700,093	1,754,661	△54,568	△3.1
Ⅲ. 일반유형자산	196,276,048	189,698,138	6,577,910	3.5
Ⅳ. 무형자산	415,522	50,007	365,515	730.9
Ⅴ. 기타비유동자산	3,158	2,450	708	28.9
부 채	185,953,403	167,132,281	18,821,122	11.3
Ⅰ. 유동부채	1,673,961	1,959,219	△285,258	△14.6
Ⅱ. 장기차입부채	2,536,701	2,266,731	269,970	11.9
Ⅲ. 장기충당부채	175,638,458	156,864,356	18,774,102	12.0
Ⅳ. 기타비유동부채	6,104,283	6,041,975	62,308	1.0
순 자 산	18,998,890	30,388,776	△11,389,886	△37.5
Ⅰ. 기본순자산	139,459,908	139,459,908	0	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61,836,752	△146,460,329	△15,376,423	△10.5
Ⅲ. 순자산 조정	41,375,734	37,389,197	3,986,537	10.7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1조 5,741억 2,088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40조 3,411억 594만원, 관리운영비 8,243억 4,059만원, 비배분비용 8조 3,008억 1,604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조 13억 4,487만원, 비배분수익 6조 8,903억 7,668만원, 비교환수익 등 4억 2,014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조 1,452억 7,984만원(5.4%) 증가한 41조 5,745억 4,102만원이며, 이는 시설물 전수조사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3조 7,085억 6,562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16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군인연금(연금정책)프로그램(12조 1,253억 3,385만원)과 급여정책프로그램(12조 1,120억 5,92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업무추진비 2,950억 2,548만원과 복리후생비 1,481억 2,785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7조 6,696억 3,024만원과 평가손실 3,737억 7,249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국방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9,339,761	37,514,308	1,825,453	4.9
가. 프로그램 총원가	40,341,106	38,458,599	1,882,507	4.9
나. 프로그램 수익	1,001,345	944,291	57,054	6.0
II. 관리운영비	824,341	907,758	△83,417	△9.2
III. 비배분비용	8,300,816	4,592,250	3,708,566	80.8
IV. 비배분수익	6,890,377	3,585,055	3,305,322	92.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1,574,541	39,429,261	2,145,280	5.4
VI. 비교환수익 등	420	1,911	△1,491	△78.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1,574,121	39,427,350	2,146,771	5.4

자료: 국방부

국방부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30조 3,887억 7,61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8조 9,988억 9,049만원으로 기초 대비 11조 3,898억 8,561만원(37.5%) 감소하였다. 기말 순자산이 감소한 이유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 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2조 1,467억 7,098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816억 2,185만원 감소하고,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4조 2,854억 6,306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무상이전수입 등 채원의 조달 36조 7,418억 426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채원의 이전 1조 4,691억 4,536만원으로 구성된다.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167억 4,765만원, 자산재평가이익 3조 9,702억 5,391만원, 기타 순자산의 증감 △9조 754억 2,520만원 등이다.

[2017회계연도 국방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30,388,776	35,264,806	△4,876,030	△13.8
II. 재정운영결과	41,574,121	39,427,350	2,146,771	5.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5,272,659	39,558,122	△4,285,463	△10.8
IV. 조정항목	△5,088,424	△5,006,802	△81,622	△1.6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8,998,890	30,388,776	△11,389,886	△37.5

자료: 국방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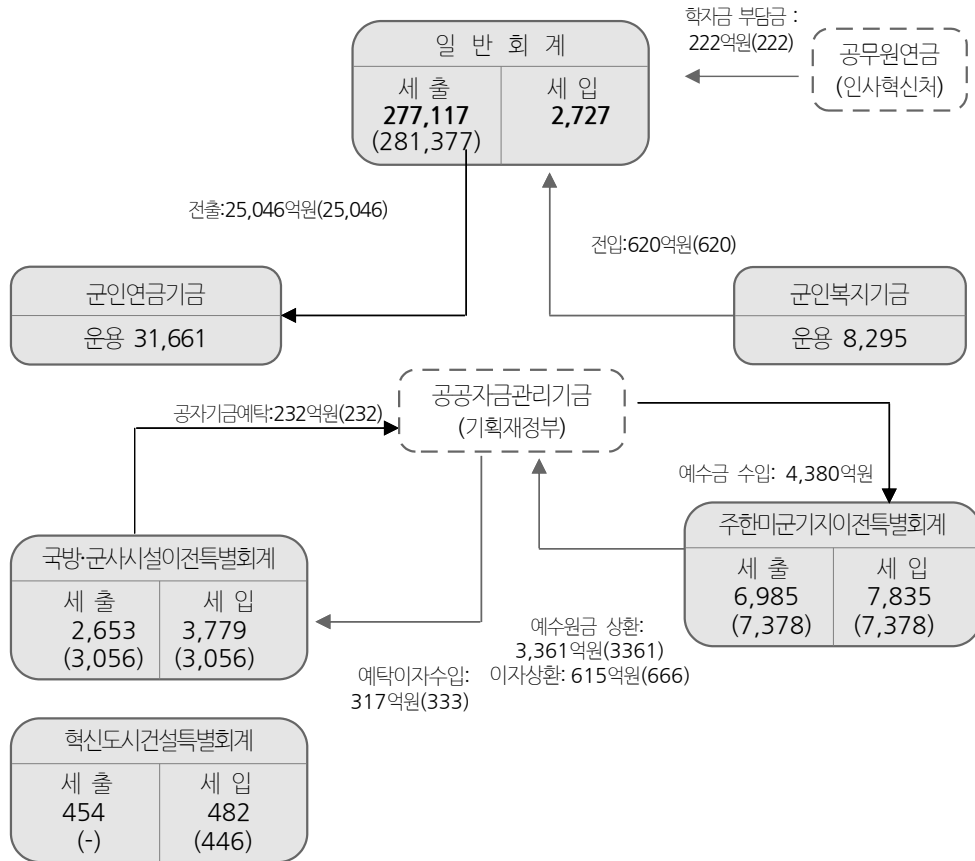
2017회계연도 국방부의 회계·기금 간(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군인복지기금에서 620억원, 공무원연금(대여학자금 부담금)에서 222억원이 일반회계로 각각 전입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2조 5,046억원이 군인연금기금으로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380억원을 예수하고 예수금 원금 3,361억원과, 이자 615억원을 상환하였으며, 국방·군사시설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317억원을 예탁하였다.

[국방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 원)



주: 1. 총계기준
2. ()는 예산수치
자료: 국방부

국방부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함정/항공/기동 장비유지사업, ② 기동장비 획득사업, ③ 유희시설 철거사업, ④ 시설유지관리사업 등이 있다.

함정/항공/기동 장비유지사업은 연례적 불용액 발생을 고려하여 280억원이 감액(2조 8,444억원→2조 8,164억원)되었고, 기동장비 획득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200억원이 감액(1,660억원→1,460억원)되었다. 유희시설철거사업은 공병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개선방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200억원 감액되었고, 시설유지관리사업은 이·전용 감액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 대소 보수비가 200억원 감액(5,046억원→4,846억원) 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공공요금 사업, ② 경계철책제거 및 지뢰피해 예방사업, ③ 노후 숙소 개·보수 사업 등이 있다.

공공요금 사업은 연례적 예산 부족과 시설현대화, 에어컨 도입 등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553억원이 증액(3,684억원→4,237억원)되었다. 경계철책제거 및 지뢰피해 예방사업은 강원도 동해안 해안 철책 제거 및 민통선지역 지뢰피해 예방을 위하여 63억원이 증액(0→63억원) 되었고, 노후 숙소 개·보수 사업은 전방지역의 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하여 50억원 증액(0→50억원) 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사이버지식정보방, ② 군 자녀 장학금 사업, ③ 암호장비 사업 등 16건이 있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은 “병사복지증진을 고려하여 사이버지식정보방의 무상사용을 추진할 것”, 군 자녀 장학금 사업은 “2018년부터 군 자녀 장학금 사업을 군인 가족 격려 사업(고등학교 졸업생 자녀 대상)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것”, 암호장비 사업은 “암호장비 유지 및 평가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한 암호장비 유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국방부는 ①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③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등을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방부는 국방개혁 수정1호에 따라 간부 중심의 정예부대로 상비병력을 개편할 계획이었으나, 연례적으로 부사관이 정원 대비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사의 적기 충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방부는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군사·행정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시적 기구를 장기간 운용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한시적 기구의 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병격려비에 편성된 포상금이 업무추진, 출장비 용도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자체감사강화, 부대별 교육 강화, 포상금 최소화 편성 등 집행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평택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여 실집행과정에서 재이월이 발행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행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국방부 인력운영 관련

가. 현 황

2017년도 국방부 군인인건비¹⁾는 장교, 부사관, 병 등 장병의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현액 10조 3,246억 7,900만원 중 10조 2,228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18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군인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군인인건비	10,327,349	10,327,349	0	△2,670	10,324,679	10,222,828	0	101,851
장교인건비	4,209,234	4,209,234	0	△7,634	4,201,600	4,152,885	0	48,715
부사관인건비	5,070,910	5,070,910	0	5,064	5,075,974	5,044,735	0	31,239
병인건비	1,047,205	1,047,205	0	△100	1,047,105	1,025,208	0	21,897

자료: 국방부

조흥연 예산분석관(n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일반회계 1101

1-1. 부사관(하사) 충원 노력 필요

가. 현 황

국방부는 국방개혁 수정1호에 따라 상비병력을 2025년까지 현재 61.8만명에서 52.2만명으로 감축을 추진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는 19.8만명에서 21.8만명으로 확대하고, 병은 42.0만명에서 30.4만명으로 축소하여 군 인력을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할 계획이다.

[국방개혁 수정1호 중 군 인력 부문]

구 분		2018년 초	계획 (수정1호/2025년)	
계		61.8	52.2	
간 부		19.8	21.8	
	- 장 교	7.1		7.0
	- 부사관	12.7		14.8
병		42.0	30.4	

주: 정원은 연초 기준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국방개혁 수정1호에 따라 간부 중심의 정예부대로 상비병력을 개편할 계획이나, 연례적으로 부사관이 정원 대비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사의 적기 충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이후 부사관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11.5→12.4만명)하고 있으며, 국방개혁 수정1호는 현재보다 2.1만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 전차, 함정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숙련병의 감축이 예상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부문을 부사관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군 인력 운용 현황(2013~2017년도)]

(단위: 만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장교	7.2	7.1	7.2	7.2	7.2	7.2	7.2	7.2	7.1	7.1
부사관	11.5	11.3	11.7	11.3	11.8	11.2	12.1	11.2	12.4	11.2
병	44.9	45.3	44.5	44.3	44.0	46.0	43.6	43.6	43.0	42.9

주: 정원은 연초 기준

자료: 국방부

그런데 부사관의 현원을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정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정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기에 충원이 되지 않아 2017년 기준 부사관은 정원대비 약 1.2만명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부사관 계급별 운영(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원사, 상사, 중사는 정원 대비 현원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하사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약 20% 부족한 상황이다.

[부사관 계급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

(단위: %)

구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운영률	98.2	96.1	105.4	79.8

주: 1. 계급별 정원 및 현원은 3급 비밀에 해당되어 비율만 제시 가능

2. 2017년 12월말 기준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부사관에 대한 직업선회도가 낮아 하사의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부사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계급별 정원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²⁾

2) 추가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수립과 연계하여, 향후 획득이 어려운 부사관 대신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비전투분야의 군인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군인은 전투부대로 전환하여 부사관 증원이 필요한 부대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사관 정원 확대가 병 감축에 따른 특정 분야의 전문적이고 숙련된 병력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하사의 충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방개혁과 관련된 군 인력부문의 개선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정원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근무여건 개선 등의 장기적인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부터 청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부사관 지원 인원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도 부사관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관련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1-2. 유급지원병 연례적 충원 미달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부사관인건비³⁾ 사업은 부사관의 봉급, 제수당,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인원은 12.6만명이다. 국방부는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 5조 759억 7,400만원 중 5조 447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12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부사관인건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부사관인건비	5,070,910	5,070,910	0	5,064	5,075,974	5,044,735	0	31,239
유급지원병	85,209	85,209	0	0	85,209	80,027	0	5,182

자료: 국방부

동 사업 내 유급지원병 사업은 현역근무 이후 하사로 6개월에서 18개월간 연장 복무하는 제도로 2008~2009년까지 시험운영 후 2010년에 도입되었으며,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현액 852억 900만원 중 800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1억 8,200만원을 불용하였다.

3) 코드명: 일반회계 1101-152

나. 분석의견

유급지원병은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유형-Ⅰ과 유형-Ⅱ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유형-Ⅰ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 중 희망자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하사로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Ⅱ는 민간과 군 특성화고 출신을 전차, 구축함 운용 목적으로 선발하여 현역병 근무기간과 하사 근무기간을 합쳐 3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유급지원병 유형별 분류]

구 분	유형-Ⅰ	유형-Ⅱ
모집대상	현역병	민간(특성화고, 민간)
복무기간	하사로 6~18개월 연장복무 * 연장복무기간은 개인이 선택	입대시부터 3년간 복무 * 의무복무기간이 지나면 하사로 복무 ⁴⁾
임명계급	하사(연장기간)	이등병~하사
활용분야	전투기술 숙련직위 분대장/정비병 등	첨단장비운용 전문직위 전차조종수/구축함 등
급여	하사 기본급(3호봉 119만원) + 장려수당(30만원)	하사 기본급(3호봉 119만원) + 장려수당(90만원)

주: 급여는 2017년 기준

자료: 국방부

그런데 유급지원병의 최근 5년간 운영인력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3.3% 수준이던 운용률이 점차 낮아져 2016년 이후 40%대에 머무르고 있어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운용률 저하는 현재 운영인원이 부족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정원을 증원⁵⁾한 것에 일부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육군으로 입대시 21개월은 병사로, 15개월은 하사로 복무한다.

5) 정원 증가에 대해 국방부는 숙련인원, 첨단장비 운용 전문인력 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유급지원병 인원을 증원하였다고 설명하며, 추가 증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유급지원병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유형-I			유형-II		
	정원	운영	정 원	운영	운영률	정 원	운영	운영률
2013년	6,216	4,555(73.3%)	3,750	3,740	99.7%	2,466	815	33.0%
2014년	6,516	3,942(60.5%)	4,074	3,072	75.4%	2,442	870	35.6%
2015년	6,516	3,283(50.4%)	4,074	2,338	57.0%	2,442	945	38.9%
2016년	8,490	3,684(43.4%)	6,490	2,643	40.7%	2,000	1,041	52.0%
2017년	8,490	3,959(46.6%)	6,490	2,841	43.8%	2,000	1,118	55.9%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어려운 군 복무환경, 장기간 사회경력 단절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현역병 의무복무 만료 시 전역을 결정하여 불가피하게 운영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 사업은 정원 대비 운용인력 부족 문제로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운영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급지원병 운영과 관련된 국회 국방위원회 시정요구사항]

구분	유 형	시정요구사항
2014년도 결산	제도 개선	유급지원병Ⅱ가 당초 도입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실제 운용인력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 병력충원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 운용방안을 모색할 것
2015년도 결산	제도 개선	2015년도 유급지원병(Ⅱ)의 모집 실적은 평균 94.0%이지만, '15년도 실제 유급지원병(Ⅱ)의 군 전체 복무율은 평균 38.7%에 불과하여 지원자 모집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의 전력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국방부와 병무청은 유급지원병의 존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모집 및 운용방안을 강구할 것
2016년도 결산	제도 개선	국방부는 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인력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아닐 경우에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할 것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따라서 국방부는 운용인력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제도 재설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3.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예산의 적정수준 편성 필요

가. 현 황

명예퇴직수당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근속자에게 전역수당을 지급하여 조기전역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군인사법」 제53조의2제1항⁶⁾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군인의 명예전역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도 장교 명예퇴직수당⁷⁾ 및 부사관 명예퇴직수당⁸⁾의 예산현액 643억 1,700만원 중 629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 9,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명예퇴직수당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교 명예퇴직수당	37,863	37,863	0	△4,056	33,807	32,474	0	1,333
부사관 명예퇴직수당	15,262	15,262	0	15,248	30,510	30,450	0	60
합계	37,863	37,863	0	11,192	33,807	32,474	0	1,333

자료: 국방부

6) 「군인사법」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코드명: 일반회계 1101-151의 내역사업

8) 코드명: 일반회계 1101-152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전역 예정 간부들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장교 및 부사관의 명예 퇴직수당 지급대상 인원을 적정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2017년 예산 편성 시 장교와 부사관의 명예퇴직예상인원을 각각 690명 및 354명으로 책정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선발인원은 장교와 부사관 각각 540명 및 442명이었다. 이로 인하여 장교의 명예퇴직수당은 40억 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부사관의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액 대비 151억 8,800만원이 부족하여 타 사업으로 부터 전용 및 조정을 실시하였다.

[부사관 명예퇴직수당 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부사관인건비 (1101-152)	110-01목	9,590	부사관인건비 (1101-152)	110-01목
조정	장교인건비 (1101-151)	110-01목	5,598	부사관인건비 (1101-152)	110-01목

자료: 국방부

이와 같은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의 괴리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의 명예퇴직 예상인원과 실제 선발인원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수당 예상인원 및 선발인원 현황(2013~2017년도)]

(단위: 명, 백만원)

년도	구 분	편성액 [예상인원(A)]	선발현황			예상인원 대비(C/A)	집행액
			지원(B)	선발(C)	선발률(C/B)		
2013	장 교	38,251(703명)	684	661	96.6%	94.0%	37,164
	부사관	14,667 (297명)	347	289	83.3%	97.3%	15,238
2014	장 교	37,818 (754명)	729	692	94.9%	91.8%	37,158
	부사관	15,100 (333명)	473	301	64.0%	90.4%	15,725
2015	장 교	37,863 (656명)	1,031	738	71.6%	112.5%	35,774
	부사관	15,262 (327명)	847	451	53.2%	137.9%	17,314
2016	장 교	37,863 (656명)	588	541	92.0%	82.5%	30,182
	부사관	15,262 (327명)	530	394	74.3%	120.5%	22,244
2017	장 교	37,863 (690명)	567	540	95.2%	78.3%	32,474
	부사관	15,262 (354명)	506	442	87.4%	124.9%	30,450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명예전역 신청자를 대상으로 계급별 인력운영현황, 신분별 상위계급, 장기근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인원을 수립하고 있으나, 매년 지원자의 계급별 현황,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이 달라 정확한 인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부사관 선발인원이 확대되면서 장교의 명예전역수당은 집행액 대비 과다 편성되고 있고 부사관 명예전역수당은 과소 편성되고 있으며, 부사관의 경우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상인원과 선발인원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명예전역을 신청할 예정인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예상인원의 정확성을 높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방부는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5조제5항¹⁾ 및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37조²⁾에 따라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적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연말 기준 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국회협력단TF 등 9개의 한시적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인원은 총 91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17년도에 한시적 기구 운영 비용 2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다.

[국방부 한시적 기구 운용 현황]

TF명	설치목적	설치일	인력 구성	2017년도 집행액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특수임무수행자 처리 관련 정책수립, 법령 검토	'10.4.~ '18.12	군인3, 공무원 1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 6백만원
국회협력단(TF)	국회 의정활동 지원, 국방부 대국회업무 지원, 민원 접수 처리	'14.1.~ '18.12	군인4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 36백만원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 1)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⑤ 긴급한 군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등의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2)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37조(한시조직의 목적 및 구분)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
 1. 한시기구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사업단 등으로서 기존 조직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국가적 사업 또는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한다.

TF명	설치목적	설치일	인력 구성	2017년도 집행액
군수통합정보 시스템 구축TF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수행	'14.12~ '18.12.	군인9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 28백만원
병영문화혁신 지원 TF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15.1.~ '17.12.	군인5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 18백만원
주거정책TF	군 주거정책 종합 발전계획 수립	'16.3.~ '18.12.	군인1, 공무원6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 140백만원
군의문사 조사· 제도개선 추진단(TF)	군 의문사 진상규명	'17.9.~ '18. 8.	군인32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 27백만원
방위사업개선TF	국정·국방개혁과제로 선정된 핵심업무인 '방위사업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 임무 수행	'17.11~ '18.10.	군인8, 공무원7, 연구 기관3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 5백만원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상 TF	제10차 방위비분담 협상	'17.12~ '18. 12	군인1, 비상근 11명	-

주: 2017년 12월말 기준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군사·행정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시적 기구를 장기간 운용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한시적 기구의 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 기구는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에 따라 긴급한 군사·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는 2010년 이후 8년째 운영 중이며, 국회협력단(TF), 군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TF, 병영문화혁신TF는 3년 이상 운영되는 등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TF의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0조제5항³⁾에 따라 TF가 연장 운영되고 있어 장기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회협력단, 병영문화혁신TF 등은 긴급한 군사·행정 수요에 대처하는 기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회협력단은 국회와 각 군 본부의 거리상 적시지원 제한에 따른 근접지원, 국회 내 군사비밀자료에 대한 보안활동 필요 등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병영문화혁신TF는 중점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 과제 중 병영문화 분야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긴급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연장·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원 외로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회협력단(TF)은 국방부 내에 대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총괄담당관실⁴⁾이 있음에도 이를 정원 외로 운용하고 있어 유사 중복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운영 필요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⁵⁾

이를 종합하였을 때, 국방부는 현재 운용 중인 한시적 기구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한시적 기구의 존속을 재검토하는 한편, 장기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직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기획총괄담당관실 주요 업무 직책: 국회정책담당, 국회지원, 국회운영담당, 법안국회담당, 국회요구자료 등

5)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회협력단은 국회의 각 군 접근성 보장, 국방·군사분야의 비공개 행정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직제상 명시된 법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 현 황

환경조사 및 치유¹⁾ 사업은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현액 134억 9,000만원 중 92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2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다.

기타이전지원²⁾ 사업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이사용역 및 이전수당을 제공하고, 기지내의 구시설물의 철거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326억 7,300만원 중 11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76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4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한미 환경치유기준 관련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환경조사 및 치유	13,490	13,490	0	0	13,490	9,263	4,227	0
기타이전지원	19,345	19,345	13,328	0	32,673	11,567	7,664	13,442
구 시설물 철거	7,054	7,054	0	0	7,054	0	7,054	0

자료: 국방부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과 기타이전지원 사업 내 구 시설물 철거사업의 예산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평택 등으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된 캠프 룡(강원도 원주시), 캠프 마켓(인천광역시 부평구) 등의 환경조사 및 정화사업과 캠프 기지 내 시설물의 철거사업 등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232-302

2) 코드명: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232-303

나. 분석의견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과 기타이전지원 내 구 시설물 철거 사업의 지연은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의 환경치유기준이 상이한 것에 원인이 있으므로, 환경분야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 환경치유기준에 대한 합의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에 공여중인 기지는 주한미군이 규정한 환경관리기준(EGS)³⁾에 따라 관리되며, 이 중 반환대상 기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환경평가절차(JEAP)⁴⁾에 따라 한·미간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치유기준(KISE)⁵⁾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한미군이 자체비용으로 조치하고 반환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주한미군기지의 반환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원인은 양국 간 환경치유기준(KISE)이 상이하여 비용 문제 등의 협의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은 환경치유기준을 ‘3~5년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은 ‘70년간 10만명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을 초과하는 오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 환경치유기준]

구 분	국방부	주한미군
기준	70년동안 10만명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	3~5년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의 기준은 추상적이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주한미군 측은 자신들의 기준이 다른 국가의 주둔부대에도 적용되고 있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 이견 차이로 기지반환 협상 시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한·미 행정협정(SOFA⁶⁾) 내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미 행정협정

3) 주한미군의 평시 환경보호를 위한 자체 기준 / 절차이며, 세부 18개 항목으로 구성

4)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5) 환경치유기준(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지연에 따른 오염의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환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캠프 룡은 2012년부터, 캠프 마켓은 2014년부터 환경평가 및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타 반환기지 평균 소요 기간인 2년 보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우려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기지반환협상 지연은 이후 시행되는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과 구 시설물 철거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완료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환경치유기준에 대한 합의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한·미 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피복류(전투복, 침구 등), 개인용품류(화장지, 비누 등) 등과 관련된 사항은 「피복방침」에 규정된다. 국방부는 피복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병의 요구를 반영하여 피복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피복방침」을 만들어 2017년도부터 적용하고 있다.

4-1. 기본피복 보급 수량 변경에 따른 피복 사전 구입 관련

가. 현 황

기본피복¹⁾ 사업은 장병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복, 전투화 등 전투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피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 예산현액 3796억 5,100만원 중 3,696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54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6억 1,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본피복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본피복	366,667	366,667	3,930	8,332	379,651	369,623	5,412	4,617

자료: 국방부

기본피복은 전투복, 전투화, 개인방한피복류, 근무복, 내의류, 신발류, 운동복, 운동화, 속옷, 면수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량 등 보급기준은 「피복방침」에 규정된다.

조흥연 예산분석관(n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일반회계 1241-301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피복방침 변경에 따라 운동화, 기능성런닝, 드로어즈팬티, 면수건의 2018년도 추가지급에 대비하여 특수피복 사업의 집행잔액을 기본피복 사업으로 조정하여 활용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필요수량을 2017년도 예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여 부적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는 2018년도에 적용될 피복방침을 변경하면서 운동화와 기능성 런닝을 초도1개·보충1개에서 각각 초도2개 및 초도3개·보충3개로, 드로어즈 팬티는 초도1개에서 초도3개·보충3개로, 면수건은 초도3개·보충3개에서 초도4개·보충4개로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본피복 보급 수량 변경 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운동화	초도1개·보충1개		초도2개
기능성 런닝	초도1개·보충1개		초도3개·보충3개
드로어즈 팬티	초도1개		초도3개·보충3개
면수건	초도3개·보충3개		초도4개·보충4개

자료: 국방부

그런데 국방부는 이들 품목의 보급기준 확대에 따른 물량 사전확보를 위해 특수 피복²⁾ 사업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91억 7,800만원을 동 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였다.

[피복방침 변경에 따른 추가구매 관련]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추가 구매 수량	단가(원)	추가 계약액
운동화	217,304	14,781	2,618
기능성 런닝	703,001	5,823	2,391
드로어즈 팬티	387,217	5,330	1,403
면수건	1,760,317	1,655	2,766
총계			9,178

자료: 국방부

2) 코드명: 일반회계 1241-302

이에 대해 국방부는 확대된 보급수준의 유지와 함께 조달 절차상 연초에 보급 예정인 물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대상품목은 장병 초도 보급품으로 적기 보급을 위해 사전확보가 필요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복방침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피복은 비축물량³⁾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리 구매하여 보관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 품목의 보급기준 확대에 따른 예산은 2018년도에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2017년도 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2018년에 보급될 물품의 확보하는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급기준 등의 개선이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2. 휴지의 부대 공용 비치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 간의 차이 발생 부정성

가. 현 황

개인용품⁴⁾ 사업은 장병 개인 위생관리에 필수적인 일용품을 현금과 현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 예산현액 395억 1,200만원 중 39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개인용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개인용품	32,909	32,909	44	6,559	39,512	39,309	19	184

자료: 국방부

3) 비축물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탄약, 식량, 원자재 등을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코드명: 일반회계 1241-303

국방부는 개인용품 지급과 관련하여 장병들의 다양한 구매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별 선호도 차이가 뚜렷한 샴푸, 칫솔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달 현금 4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세탁비누, 휴지 등 5개 품목은 현품⁵⁾으로 지급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피복방침을 시행하면서 2017년도부터 개인에게 매달 2개씩 지급하던 휴지 중 1개를 부대공용으로 화장실에 비치하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실제 피복방침에 규정된 제공 개수 및 예산편성 당시의 개수를 초과하여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2016년 7월과 12월에 개최한 피복정책실무회의에서 2017년부터 적용될 피복방침에 화장실 문화개선과 장병 편의를 고려하여 1인당 2개씩 개인에게 지급하던 휴지를 1개는 개인지급, 1개는 화장실에 비치하여 공용품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동 사업의 목적은 장병 개인에게 지급할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동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한 것은 다소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영 미숙으로 화장실 공용품으로 활용되는 휴지개수가 급증하였고 실제 예산편성 당시 개수인 1,252만 1,867개를 초과하는 2,080만 6,464개가 사용되어 관련예산도 24억 5,900만원이 초과 집행되었다는 점에서도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개인용품 중 휴지 지급과 관련된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편성시	집행시
개수	12,521,867	20,806,464
총액	6,524	8,983

자료: 국방부

5) 현금 4천원(샴푸, 세수비누, 칫솔, 치약), 현품(세탁비누, 가루비누, 면도날, 구두약, 휴지)

따라서 개인용품 사업에서 지급하는 물품을 부대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정책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편성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진행 방식 개선과 면밀한 사전 분석을 통한 적정 사용량 예측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 현황

장병격려비¹⁾ 사업은 체육행사 지원, 연말연시 기념일 지원 등을 통해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격려 및 포상사업으로, 국방부는 2017년 계획현액 251억 1,600만원 중 195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55억 6,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장병격려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장병격려비	25,116	25,116	0	25,116	19,548	0	5,568
포상금 (310-03목)	11,228	11,235	0	11,235	10,376	0	860

자료: 국방부

동 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포상금(310-03목)으로 44.7% 수준이며,²⁾ 국방부는 계획현액 112억 3,500만원 중 103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6,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나. 분석의견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포상금을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홍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군인복지기금 2238-643

2) 다음으로 보상금 52억 9,800만원(21.1%), 업무추진비 48억 3,700만원(19.3%), 운영비 17억 6,700만원(7.0%) 등의 순이다.

그런데 장병격려비에 편성된 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일부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자체감사강화, 부대별 교육 강화, 포상금 최소화 편성 등 집행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수용비로 집행하여야 할 티셔츠 제작 등의 비용, 업무추진 형식의 행사제반경비 등을 포상금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동 사업에는 수용비(210목)와 업무추진비(240목)가 편성되어 있어 티셔츠, 모자 제작 등의 경비는 수용비 목으로, 격려만찬과 관련된 행사비용은 업무추진비 목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합동참모본부, 근무지원단, 육군사관학교, 육군부사관학교, 국방시설본부 등은 이를 포상금(310-03목)으로 약 8,800만원 집행하였다.

[수용비 및 업무추진비 용도로 지급한 사항]

구분	건명	지출액(원)
합동참모본부	역대 합참의장 초청 정책설명회 만찬 및 선물 구입(2회)	14,536,200
합동참모본부	합참 체육 유니폼 구매(670명)	14,740,000
국방부 근무지원단	송년음악회 행사 격려 만찬재료 구매(500명)	2,400,000
국방부 근무지원단	현역 간부 혹서기 대비 디지털 반팔 티셔츠 제작(300명)	4,950,000
국방부 근무지원단	단 창설기념 단본부 및 대대 간부 격려 영화관람(222명)	1,332,000
국방부 근무지원단	단 창설기념 단본부 및 대대 간부 격려식사(250명)	1,500,000
국방부 근무지원단	UFG훈련 참가 장병 야식지원(국방부본부 및 지원부대)	10,561,400
국방시설본부	국방시설발전 워크숍 만찬(91명)	2,082,340
국방시설본부	연말성과분석 격려만찬(200명)	6,624,100
국방대학교	연말 총장주관 교직원 오찬(190명)	1,025,000
계룡대 근무지원단	연말 성과분석회의 격려오찬(150명)	3,208,000
육군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활성화를 위한 티켓 구매(202매)	4,040,000
육군 제1607부대	군전투지휘검열 훈련 유공 격려행사 만찬 지원	2,160,000
육군 제7296부대	주요직위자 업무노고 격려식사(4개연대)	1,025,000
육군부사관학교	혹서기 학교 장병 복지를 위한 모자제작 및 구매	8,250,000
육군부사관학교	초급 17-1기 전술행군 간 다과격려	1,544,490
육군부사관학교	전입간부(하사) 간담회 격려식사 등	2,240,510
육군사관학교	4학년 졸업생도 격려만찬	5,903,680
총계		88,122,720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복지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였다는 입장이나, 이는 기금운용의 목적에 부합한 집행에 그칠 뿐 비목별 목적에는 적합한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포상금이 비목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집행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상금이 부대방문 격려금, 예하부대 격려금 지급 등으로 과도하게 현금성 경비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방부 본부, 육군 1군사령부, 상무대근무지원단 등은 업무간 노고치하 등의 형식으로 격려금 약 6억 8,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임무수행 노고치하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격려금 현황]

구분	건명	지출액(원)
국방부본부	임무수행 유공자 격려 등	649,000,000
육군1군사령부	전반기 성과분석회의 임무수행 격려금 등	12,000,000
육군 제3070부대	야외기동훈련 준비 관련 격려금	6,200,000
상무대 근무지원단	격려금 지급[상무대 지역 5개 학교(보병, 포병, 기계화, 공병, 화생방학교) 및 기타지원부대 등]	18,900,000
총계		686,100,000

자료: 국방부

비록 「군인복지기금운용지침」에는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³⁾하고 있으나 포상금 목의 특성 상 대부분의 경비가 현금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격려금으로 다량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명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포상금을 활용한 격려금 지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인복지기금운용지침」에는 지급 기준, 단가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격려금이 투명하게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 임무 수행 관련 격려 및 포상

- 작전 및 교육훈련, 시범 관련 격려 및 포상
- 격오지 및 해외파병 부대 및 개인에 대한 격려
- 타에 모범이 될 만한 유공 부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 및 행사 지원
- 재해 복구, 훈련장 보수, 대민지원 관련 등의 격려

셋째, 「군인복지기금운용지침」은 장병격려비를 출장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여비 활용 사례가 발견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등은 모범 간부들에게 국외시찰, 호텔숙박권 제공 등의 목적으로 동 사업의 포상금을 약 1억 100만원을 지출하였다.

[장병격려비를 활용한 여비 집행 현황]

구분	건명	지출액(원)
국군기무사령부	모범부대원 국외시찰	55,470,000
국군의무사령부	모범간부 국외시찰	19,262,880
육군 제7162부대	사령부 참모부 하계휴양비	1,400,000
육군교육사령부	우수교관 제주도 견학	18,000,000
육군제3사관학교	모범간부 문화탐방	2,500,000
육군 제3697부대	모범간부 호텔 숙박권 구매	4,800,000
총계		101,432,880

자료: 국방부

그러나 「군인복지기금운용지침」은 장병격려비 자체를 출장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국외시찰 등 출장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지침을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가는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계정과목으로 재정운영표에 반영하는데, 국가회계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정부가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회계결산을 시작한 2011년 다음연도인 2012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국가가 재정운영표에서 인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2~2017년 동안 총 65조 7,619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2011년부터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익년도인 2012년에 12조 6,168억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한 것은 재무제표 작성 초기임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매년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재무제표 개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2017년에 발생하였다.

[연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전기오류수정손실	67,053	16,297	46,310	43,945	35,818	94,569	304,762
전기오류수정이익	59,115	27,648	89,986	75,385	36,857	63,418	52,857
합 계	126,168	43,945	136,295	119,330	72,674	157,987	657,619

자료: 각 부처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부는 2012~2017년 동안 전기오류수정손익을 22조 1,939억원 인식하였는데, 이 중 전기오류수정손실은 9조 5,043억원이며, 전기오류수정이익은 12조 6,896억원이다. 국방부는 2017년에 가장 많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인식하였는데, 전기오류수정손실이 3조 612억원, 전기오류수정이익이 5조 165억원이다.

[국방부 전기오류수정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전기오류수정손실	30,349	676	22,512	7,934	2,958	30,612	95,043
전기오류수정이익	27,670	18	20,507	10,861	17,676	50,165	126,896
합 계	58,019	694	43,019	18,796	20,634	80,777	221,939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입력오류, 감가상각 누락 등의 사유로 전기오류 수정손익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주로 건물, 구축물, 전비품 계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7년의 3조 612억원에 이르는 전기오류수정손실 중 건물 발생분이 2조 85억 원이며, 5조 165억 원의 전기오류수정이익 중 건물 발생분이 4조 5,734억 원이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시설물/구축물 관리시스템인 시설정보체계시스템에 해당 자산의 금액 및 면적 등의 기초데이터 입력오류분 수정, 장부에 미삭제된 용도 폐기 시설 차감, 감가상각 누락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 소급 반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2017년에 크게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기오류수정의 발생은 국방자산 금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시설물 전수조사 및 일체 정리를 함에 기인하며, 향후에는 재산관리인 교육 및 철저한 재산 관리를 통하여 자산 관련 오류수정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전기오류수정손익 세부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건물	353	1,965	505	1,202	20,08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293	530	566	116	1,580
	전비품	26,544	1,915	15,381	41	157
	기타(감사 지적사항 반영 등)	△28,442	4,412	△9,901	1,105	7,800
	기타	1,929	13,691	1,383	494	990
	합계	676	22,512	7,934	2,958	30,612
전기 오류 수정 이익	토지	3,698	418	1,789	502	425
	건물	1,178	2,825	3,549	13,362	45,734
	전비품	26,070	871	4,359	375	957
	기타(감사 지적사항 반영 등)	△33,584	△460	188	2,126	△311
	기타	2,655	16,853	977	1,311	3,360
	합계	18	20,507	10,861	17,676	50,165

자료: 국방부

회계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계실체의 재정상태나 재정운영성과가 왜곡되므로 이를 수정하여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회계상 오류는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달리하고 있다. 회계상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오류로 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줄 수 있으며, 회계실체는 소급법을 적용하여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에 반영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전기오류수정항목을 중대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매년 당기 재정운영표의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의 세부항목에서 각각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부의 경우 2017년에 인식한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는 각각 총자산의 3.9%, 2.8%에 이르고 있어 결코 중요성이 낮지 않다.

[국가결산보고서 상 전기오류수정손익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국방부
전기오류수정손실	30,612
전기오류수정이익	50,165
합 계	80,777
총자산	2,049,523
비중	3.9

자료: 국방부

국가재무결산이 7년차에 접어들어 안정화 단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빈번하게 적지 않은 규모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결산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향후 국방부는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유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매각의 각 단계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단가에 따른 특수식량 구매 수량 변경 부적정

가. 현 황

특수식량¹⁾ 사업은 전시 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전투식량 등 비상 급식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현액 232억 1,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특수식량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특수식량	23,218	23,218	0	0	23,218	23,218	0	0

자료: 국방부

특수식량은 총 5가지로 물에 데워 취식하는 전투식량Ⅰ형, 뜨거운 물을 부어 취식하는 전투식량Ⅱ형, 자체발열체로 데워 취식하는 즉각취식형, 건조된 식량을 즉시 취식할 수 있는 특전식량, 물을 부어 복원 후 취식하는 아웃도어형식의 S형²⁾으로 구분된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일반회계 1231-303

2) S형의 경우 2018년도에 신규로 도입되었다.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예산편성 시 특수식량의 종류에 따라 적정소요를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집행 시에는 계약 단가에 따라 구매 수량을 조정하여 계획 수량보다 특수식량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구매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예산편성 시 특수식량 인가량을 기준으로 재고량 및 순환급식량 등을 고려하여 특수식량별 수량을 결정하고, 이후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달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이에 따라 결정된 2017년도 특수식량 구매계획은 전투식량Ⅰ형 61만 7,890개, 전투식량Ⅱ형 62만 6,734개, 즉각취식형 191만 5,921개, 특전식량 12만 8,531개 등 총 328만 9,076개 수준이었다.

[2017년도 특수식량 사업 구매 수량 및 단가 현황]

(단위: 대, 원, 백만원)

구분	편성			집행		
	수량	단가	총액	수량	단가	총액
전투식량Ⅰ형	617,890	5,668	3,502	668,713	5,107	3,415
전투식량Ⅱ형	626,734	5,075	3,181	598,816	5,188	3,107
즉각취식형	1,915,921	8,243	15,793	2,033,894	7,830	15,925
특전식량	128,531	4,884	628	142,326	4,618	657
총계	3,289,076	-	23,104	3,443,749	-	23,104

자료: 국방부

그러나 편성 대비 단가가 낮은 전투식량Ⅰ형, 즉각취식형과 특전식량의 경우 계획 대비 많은 수량을 구매하였으며, 단가가 높은 전투식량Ⅱ형은 계획 대비 부족한 수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을 불용 없이 전액 집행하여 총 344만 3,749개의 특수식량을 구매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최근 3년 평균 계약단가를 고려하여 예상단가를 산정함에 도 매년 가격의 등락으로 단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단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수량은 차년도 예산편성 시 재고량에 포함되어 물량산정 시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6년도의 경우에도 단가 하락에 따라 계획보다 많은 특수식량을 추가로 구매하였음에도 2017년도에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2016년도에 계획 대비 과다 구매한 것이 차년도 물량 산정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2016년도 특수식량 사업 구매 수량 및 단가 현황]

(단위: 대, 원, 백만원)

구분	편성			집행		
	수량	단가	총액	수량	단가	총액
전투식량I형	716,780	5,755	4,125	794,909	5,153	4,124
전투식량II형	927,450	5,538	5,136	1,157,772	4,626	5,188
즉각취식형	1,609,766	8,436	13,580	1,744,428	7,780	13,528
특전식량	199,468	4,880	973	214,549	4,517	973
총계	3,253,996	-	22,841	3,697,109	-	22,840

자료: 국방부

또한, 2016년도의 경우 약 46만개, 2017년도의 경우 약 16만개를 계획수량 보다 추가 구매하였는데, 유효기간이 3년인 특수식량을 계획보다 많이 구매하여 재고로 비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구매방식으로 인하여 계획 대비 과다 구매된 전투식량I형과 즉각취식형은 비축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수식량 편성, 집행 수량 및 비축율]

(단위: 대, %)

구분	편성시 수량	집행시 수량	비축율
	수량	수량	
계	3,289,076	3,443,749	-
전투식량I형	617,890	668,713	102.9
전투식량II형	626,734	598,816	98.6
즉각취식형	1,915,921	2,033,894	101.2
특전식량	128,531	142,326	94.9

주: 비축율은 2017년도 말 기준

자료: 국방부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계획 수량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계약 단가에 따라 구매 수량을 조정하여 유효기간이 3년인 특수식량을 계획보다 많이 구매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 수량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구매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간부양성교육¹⁾ 사업은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과 전투기술능력을 습득하고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하여 초급간부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육·해·공사, 3사, 간호사), 학군단(ROTC), 부사관후보생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 현액 291억 9,900만원 중 285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1,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간부양성교육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간부양성교육	29,345	29,345	20	△170	29,199	28,553	32	614
포상금 (310-03목)	11,398	11,398	0	△107	11,291	11,056	0	235

자료: 국방부

동 사업 내에는 교수연구보조비, 학교 부교재비, 성적우수자 포상 등의 목적으로 포상금(310-03목)이 편성되어 있으며,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현액 112억 9,100만원 중 110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 사업은 사관학교, 3사관학교, 학군단 운영 등에 필요한 부교재비를 포상금(310-03목)으로 편성 및 집행하였는데, 「2017년도 국방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흥연 예산분석관(n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일반회계 2431-302

작성 지침」은 부교재비를 기타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 및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2017년도 국방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생도 및 학군장교 후보생 등에게 지급할 부교재비를 기타보전금(310-04목)²⁾으로 편성 및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의 부교재비를 포상금(310-03목)으로 편성한 후 5,816명에게 35억 7,700만원을 지급하였다.

[포상금 목으로 지급한 부교재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인원	지출액
각 군 사관학교 부교재비	3,695	2,217
3사관학교 부교재비	1,385	831
간호사관학교 부교재비	16	19
부사관학군단 후보생 부교재비	278	16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부교재비	442	343
총계	5,816	3,577

자료: 국방부

그러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은 포상금을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교재비는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생도 및 학군장교후보생 부교재비를 기타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7년도 국방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생도, 학군장교후보생에게 지급될 부교재비 단가는 명시하고 있으나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부교재비 지급단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타보전금(310-04목)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2.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 4. 법령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5.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6.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국가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지원금, 7.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가. 현 황

진료지원¹⁾ 사업은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환자, 응급환자, 격오지 부대 환자에 대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등 장병의 진료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현액 828억 9,300만원 중 826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진료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진료지원	59,659	59,659	520	22,713	82,893	82,658	17	218
진료업무보조비	1,417	1,417	0	△321	1,096	1,096	0	0
현역병건강 보험부담금	40,484	40,484	0	23,559	64,043	64,043	0	0

자료: 국방부

3-1. 진료업무보조비의 편성액 대비 연례적으로 낮은 집행실적 부적정

가. 현 황

진료업무보조비는 군의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보수를 현실화하고 진료실적에 따른 보조비 차등 지급을 통해 임상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급된 것으로 진료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며,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100만원이 감액된 예산현액 10억 9,6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다.

조흥연 예산분석관(n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일반회계 2231-301

진료업무보조비는 장기 군의관인 관리직과 임상직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관리직인 병원장과 정책직은 각각 월 72만원 및 월 48만원을, 임상직은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진료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17년도 진료업무보조비 편성 기준]

구 분		인원(명)	기준월액(만원)
관리직	병원장	14	72
	정책직	16	48
임상직		58	200
계		88	-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진료업무보조비는 진료 실적 부족, 군의관의 장기전환 실적 부진 등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진료실적에 대한 예측 강화, 장기전환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진료업무보조비의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2017년의 경우도 집행 부진의 이유로 전년 대비 1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편성액 대비 77.3%만 집행되었다.

[진료업무보조비 집행실적(2013~2017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13	980	107	1,087	1,087	0	110.9
2014	1,545	△280	1,265	1,208	56	78.2
2015	1,545	△354	1,191	1,191	0	77.1
2016	1,545	△360	1,185	1,176	9	76.1
2017	1,417	△321	1,096	1,096	0	77.3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역자의 증가, 육아휴직, 교육파견, 출장, 해외연수 등의 원인으로 진료실적이 낮은 상황이며, 장기로 전환하는 단기 군의관을 5명으로 예측하여 88명에 대한 진료업무보조비를 편성하였으나 2015년 이후 장기전환 군의관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기전환 군의관 수 예측 및 실적]

(단위: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획	5	5	5	5	5
실적	5	5	2	3	1

자료: 국방부

그러나 2014년 이후 매년 동일한 사유로 편성 대비 집행실적이 70% 중후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일부를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로 전환하는 군의관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 군 현장의 의료경험이 많은 군의관 비중이 축소되는 등 군 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2015년도부터 장기전환 군의관 수가 계획 대비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진료실적에 대한 예측을 강화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전환 군의관 수 증가를 위한 유인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2.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의 연례적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사업은 현역병이 휴가, 외출, 외박 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방부가 공단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진료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현역병이 민간병원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민간병원에 납부하면, 민간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병원에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며, 건강보험공단은 국방부에 공단 부담금 정산요청하고 국방부는 이를 정산하는 절차로 사업이 진행된다.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집행 절차]

현역병/무관후보생 민간병원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민간병원에 납부 → 민간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청구 →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병원에 공단 부담금 지급 → 건강보험공단은 국방부에 공단부담금 정산요청 → 국방부 정산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의 정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대규모 이·전용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의 집행액을 살펴보면, 2013년도 309억 7,3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도의 경우 2013년도 대비 106.8% 증가한 640억 4,3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와 같이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사업의 집행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예산액이 이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2015년 이후 연례적으로 대규모 이·전용 등이 발생하였다.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사업 결산 현황(2013~2017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A)	이·전용 등	집행액(B)	집행률(B/A)
2013년	30,770	203	30,973	100.7
2014년	33,589	0	33,589	100.0
2015년	33,343	23,248	56,591	169.7
2016년	34,922	21,556	56,478	161.7
2017년	40,484	23,559	64,043	158.2

주: 2014년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연초예산을 전액 예탁하여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 75억원을 초과 집행하여 2015년도에 이를 보전함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최근 병영문화혁신 등으로 현역병이 민간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문화가 군 내에 조성되었고, 병사들이 민간의료기관을 군 병원보다 선호함에 따라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 건수가 급증하여 현역병건강보험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역병 군병원 및 민간병원 이용현황(2013~2017년도)]

(단위: 명)

구분	군병원			민간병원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2013년	974,109	36,999	937,110	691,590	14,883	676,707
2014년	1,087,774	37,095	1,050,679	892,265	23,738	868,527
2015년	1,130,018	34,054	1,095,964	805,869	24,479	781,390
2016년	1,164,221	33,754	1,130,467	982,999	29,470	953,529
2017년	1,228,846	31,804	1,197,042	1,156,192	35,730	1,120,462

자료: 국방부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증가에 따라 부족하게 된 현역병건강보험부담금을 타 사업으로 부터 이·전용하여 보충하여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역병이 민간병원을 선호하게 된 원인 등을 파악하여 군 병원의 선호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월별 이용실적,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 증가의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에 대한 소요·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는 한편, 현역병이 민간병원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단순 외래가 아닌 입원환자가 민간병원의 경우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군병원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군 병원에 대한 선호 제고를 위한 장비보강, 의료진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부대훈련 및 지원¹⁾ 사업은 제대별 전술훈련, 특전훈련, 기동훈련 등 각종 부대 훈련에 필요한 재료비·여비 및 교육훈련 간 발생한 피해보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현액 419억 5,400만원 중 404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부대훈련 및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부대훈련 및 지원	41,318	41,318	7	629	41,954	40,470	5	1,479
공군사관학교 계약직 교수 관련	126	126	0	0	126	70	0	56

자료: 국방부

공군사관학교 계약직 강의전담교수는 생도교육의 학문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교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함으로써 생도교육 효과 및 교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정원은 4명이다.

계약직 교수의 활용분야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주로 체육학(럭비, 무도 등), 일반학(역사 등)등의 학과에 활용되고 있으며, 현역 시 공군사관학교 교수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예비역을 계약직 교수로 채용하고 있다.²⁾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일반회계 2438-301

2)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월급은 231만 5,000원 수준이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방부는 공군사관학교의 강의전담교수 일부를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계약직 교수 활용도가 낮아 관련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계약직 교수를 활용 강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2017년 공군사관학교 강의전담 계약직 교수 4명에 대한 운영비용 1억 2,600만원 중 7,000만원만 집행하였고 5,6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3명만, 8월부터 12월까지 2명만 계약되어 강의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5년 간 계약직 교수 계약 및 관련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일정기간 공석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다.

[공군사관학교 계약직교수 운영 및 결산 현황(2013~2017년도)]

구분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정원(명)	현원
2013년	106,656	78,007	4	1월(2명) 2월~7월(4명) 8월~11월(2명) 12월(3명)
2014년	117,215	94,208	4	1월~7월(3명) 8월~12월(4명)
2015년	115,546	102,032	4	4명
2016년	121,169	84,166	4	1월(4명) 2월~7월(3명) 8월~11월(4명) 12월(3명)
2017년	125,953	70,110	4	1월~7월(3명) 8월~12월(2명)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계약직 교수에 대한 채용에 적합한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지원율도 낮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약직 교수 운영 비율이 낮은 상태로 상당기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계약직 교수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계약직 교수를 활용할 수 있는 강의 및 교과목을 발굴하고,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활용 강화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계약직 교수의 운영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날 경우 계약직 교수의 정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현 황

일반지원시설¹⁾ 사업은 노후된 일반지원시설(행정, 복지, 작전, 경계시설 등)을 개선하고 관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을 신설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장병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현액 6,604억 5,600만원 중 5,876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563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5억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일반지원시설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지원시설	606,753	606,753	49,700	4,003	660,456	587,631	56,322	16,503
자치단체보조 (330-03목)	5,650	5,650	0	0	5,650	5,650	0	0

자료: 국방부

동 사업 내 자치단체보조 사업은 강원도 양구군 식수전용 저수지사업(5억원)과 동해안 경계철책의 철거를 위한 사업(51억 5,000만원)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현액 56억 5,000만원을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보조하였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진행 과정 등을 명확히 검토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흥연 예산분석관(n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일반회계 2533-303

동 사업 내 자치단체보조 사업 중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은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해안 경계철책 27.3km를 철거하고 대체 감시장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217억원(국비 50%, 시·군비 50%)이다.²⁾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17억원 (국비 50%, 시·군비 50%)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사업규모 : 해안 경계철책 27.3km 철거, 대체 감시장비 설치, 시설보강 등

자료: 국방부

그런데 동 사업은 지방비 편성 여부, 작전성 검토결과·단가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하반기에 배정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7월에 31억 5,000만원, 11월에 20억원을 각각 강원도로 교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교부된 예산 51억 5,000만원 중 8억 5,600만원만 집행되었고, 42억 9,400만원은 이월되어 집행률은 16.6%로 저조하였다.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강원도	5,150	0	5,150	856	4,294	0	16.6

자료: 국방부

2) 2017년도 103억원(국비: 51.5억원), 2018년도 114억원(국비: 57억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시장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삼척시(60.4% 집행)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설계용역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착수금만 집행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예 산	2017년				
		예산현액(a)	실집행액(b)	불용액	이월액	집행률(b/a)
합 계		10,300	1,937	0	8,363	18.8
강릉시	소 계	1,957	5	0	1,952	0.2
	국 비	979	2	0	976	0.2
	지방비	979	2	0	976	0.2
동해시	소 계	1,498	19	0	1,479	1.3
	국 비	749	10	0	739	1.3
	지방비	749	10	0	739	1.3
속초시	소 계	547	0	0	547	0.0
	국 비	274	0	0	274	0.0
	지방비	274	0	0	274	0.0
삼척시	소 계	2,796	1,914	0	882	68.4
	국 비	1,398	844	0	554	60.4
	지방비	1,398	1,070	0	328	76.5
고성군	소 계	2,276	0	0	2,276	0.0
	국 비	1,138	0	0	1,138	0.0
	지방비	1,138	0	0	1,138	0.0
양양군	소 계	1,226	0	0	1,226	0.0
	국 비	613	0	0	613	0.0
	지방비	613	0	0	613	0.0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감시장비의 제작·구매와 설치에 9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보조된 예산 집행이 일부 제한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보조금 교부시 이와 관련된 사전 검토를 엄격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방부는 감시장비 설치가 연내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원도에서 12월 초 감시장비에 대한 국방부장관 추천서 발급을 건의³⁾하였을 때에서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도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사업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가능성 등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할 감시장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 현 황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¹⁾ 사업은 국방일보·국방저널·국방TV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장병들의 정훈교육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국방정책 및 군 활동상 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홍보원²⁾은 2017년도 예산현액 182억 8,300만원 중 182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18,285	18,285	0	0	18,283	18,201	0	8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목)	1,648	1,648	0	△356	1,292	1,286	0	6

자료: 국방부

동 사업 내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는 국방일보·국방TV 제작 등에 소요되는 케이블TV SO분배망, 송출대행료 등 방송플랫폼 운용비용 등으로, 2017년도 예산액 16억 4,800만원에서 3억 5,600만원을 조정 감액한 예산현액 12억 9,200만원 중 12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일반회계 3131-303

2)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의 소속기관이며, 1981년 11월 2일 창설하였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방홍보원은 동 사업 내에 편성된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을 연례적으로 국방TV 프로그램 제작비 등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방홍보원은 동 사업 내 편성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16억 4,800만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3억 5,6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목)으로 조정하여 국방TV 자체 제작비 부족분으로 활용하였다.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 현황(2013~2017년도)]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조정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2013	2,059	0	△424	1,635	1,586	49	0
2014	2,031	0	△402	1,629	1,574	55	0
2015	1,854	0	△371	1,483	1,481	2	0
2016	1,839	0	△431	1,408	1,407	1	0
2017	1,648	0	△356	1,292	1,286	6	0

자료: 국방부

그런데 이러한 공공요금 및 제세의 집행잔액 조정은 2017년도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일정규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조정 사유도 국방TV 자체 제작비 부족³⁾ 등으로 유사하다.

3)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 폐지에 따른 출연료(MC, 패널 등)가 상승하고 있는 등 제작비가 상승하여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조정 사유]

연도	사유
2013	- 국방TV 제작비 부족액 총당(4억 2,400만원)
2014	- 명예퇴직수당 및 공로연수자 보충인력 인건비 부족액 총당(1억 8,400만원) - 국방TV 제작비 및 라디오 음원파일 재료비 부족액 총당(2억 1,200만원) - 국방화보 e-book 제작비 부족액 총당(200만원) - 청사시설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 및 전기시설 안전검사비 총당(400만원)
2015	- 국방TV 제작비 부족액 총당(3억 6,000만원) - 국방화보 e-book 제작비 부족액 총당(1,100만원)
2016	- 국방TV 제작비 부족액 총당(4억 3,100만원)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홍보원은 케이블TV SO분배망 서비스 사업의 장기계속 계약체결에 따른 예산절감 및 경쟁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매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액 편성과 상관없이 매년 일정 수준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다른 목적으로 조정하고 있어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국방홍보원은 집행가능 수준을 보다 명확히 예측하여 공공요금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일반장비¹⁾ 사업은 굴삭기, 지게차, 발전기 등 공병장비, 세탁 트레일러 등 병참 장비, 화생방장비 등의 획득과 수명초과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현액 665억 9,600만원 중 626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2,600만 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일반장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편성	추경						
일반장비	65,467	65,467	5,003	△3,875	66,596	62,604	2,465	1,526
화생방장비 획득	5,108	5,108	255	△1,158	4,205	3,514	0	691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화생방장비획득사업은 생화학테러 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화생방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현액 42억 500만원 중 35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9,100만원을 불용하였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방부는 방폭텐트를 도입할 목적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나, 규격서 내에 입찰업체를 제한하는 제독약품과 관련된 법규를 명시하지 않아 방폭텐트 조달이 취소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조흥연 예산분석관(n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일반회계 2331-306

방폭테트는 화생방 폭발물에 대한 오염원점을 제독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입찰공고²⁾를 실시하였으나 전액 불용되었다.

그런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³⁾은 환경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독 제품이 활용되는 방폭테트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국방부는 이를 규격서에 명시하여 입찰자격을 사전에 제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사항을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입찰참여업체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공고가 취소되었다.

이후 국방부는 규격서를 보완하여 재입찰을 하기로 하였으나, 3차 공고가 12월에 있었고 규격서 수정 후 재공고까지는 행정기간이 장기간 소요(평균35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내 공고가 불가능함에 따라 결국 방폭테트의 조달은 취소되었다.

결과적으로 방폭테트가 조달되지 못하고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은 규격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국방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1차 공고는 입찰자가 없었으며, 2차 공고는 1개의 업체가 입찰하였으나 부적격자로 선정되어 3차 공고까지 실시하였다.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현 황

평택지원¹⁾ 사업은 주한미군기지 기지이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평택 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해 평택 기지주변 3Km이내에 주민편익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현액 182억 2,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평택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평택지원	18,220	18,220	0	0	18,220	18,220	0	0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2)에 따라 평택시가 대행하여 실시하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조 1,102억원 규모이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 사업은 평택시의 실집행과정에서 재이월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대행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232-301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평택시등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체육시설·공원·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평택시는 2017년도에 동 사업을 통해서 소공원, 마을회관, 주민숙원사업, 마을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방음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 실행실적은 예산현액 600억 6,300만원 중 421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178억 9,700만원을 이월하여 70.2%의 집행률을 기록하였다.

[평택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실행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실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실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평택시	18,220	18,220	18,220	18,220	41,843	60,063	42,167	17,897	0	70.2

자료: 국방부

그런데 평택시의 사업별 실행실적을 살펴보면 소공원, 마을진입도로, 농어촌도로, 도시계획시설정비, 기지주변가로망 사업 등 5개 사업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된 예산 중 일부가 2018년도로 재이월³⁾되는 등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하였다.

[2017년도 사업별 실행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불용액	이월액	집행률 (B/A)
소공원	0	1,002	1,002	799	0	204	79.7
마을회관	0	51	51	51	0	-	100.0
주민숙원사업	11,799	6,078	17,877	10,734	0	7,143	60.0
마을진입도로	821	5,020	5,841	4,999	0	842	85.6
농어촌도로	0	848	848	779	0	70	91.8
도시계획 시설정비	1,600	27,578	29,178	21,184	0	7,993	72.6
기지주변 가로망	0	227	227	12	0	215	5.4
방음시설 설치	4,000	1,039	5,039	3,609	0	1,430	71.6
총 계	18,220	41,843	60,063	42,167	0	17,897	70.2

주: 표 안에 진한글씨는 재이월이 발생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국방부

3)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세출예산의 이월)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이월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역 주민과의 보상 협의,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공사의 시행도 늦어져 예산의 집행 실적 이 다소 저조하다는 입장이다.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사업명	집행률	집행 부진 사유
소공원	79.7%	공원계획 변경(캠핑장 도입)에 따른 행정기간 소요
주민숙원 사업	60.0%	행정절차 지연(VE심사, 건설기술심의, 관리청허가)에 따른 설계, 공사 지연 및 보상 협의 지연
마을진입 도로	85.6%	보상물건의 법적 관계(중증 등)로 인하여 보상 및 일부 공사 발주 지연
농어촌 도로	91.8%	보상협의 및 지연에 따른 공정차질로 보상비 및 자재비 등 이월
도시계획 시설정비	72.6%	이주문제 및 감정평가 금액 불만 등 주민반대로 보상 협의 지연
기지주변 가로망	5.4%	미군기지 주변 가로망 정비 추진 중美측과 사업일정 협의 등으로 사업 지연
방음시설 설치	71.6%	방음사업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방음시설위원회 구성,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

자료: 국방부

그러나 동 사업의 목적이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으로 인한 편의시설의 건립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관련 시설의 건립이 지연되어 예산이 재이월되고 있는 상황은 주민 편의적 관점에서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행하는 지방자치단체대행사업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진행에 대해 국가가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4)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향후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4)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위탁의 경우 국가사무의 일부를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토록 하나, 대행의 경우에는 국가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관리 등에 대한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가. 현 황

정책활동지원¹⁾ 사업은 국방부가 주관하는 단기간 행사, 교육, 홍보활동,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현액 778억 2,900만원 중 674억 3,500만원 을 집행하였고, 22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1억 6,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정책활동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편성	추경						
정책활동지원	74,468	74,468	2,928	433	77,829	67,435	2,225	8,169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3,992	3,992	586	△217	4,361	2,366	364	1,631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전력유지와 관련된 물품 품질개선, 훈련체계 개발, 부품국산화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43억 6,100만원 중 23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3,100만원을 불용하였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근 동 사업의 연구개발 미수행과제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유가 참여업체의 부재, 국방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방부는 사업 계획 수립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조흥연 예산분석관(n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일반회계 7131-303

국방부는 2017년 32건의 과제를 추진하였으나 실제 수행된 과제 수는 25건이며, 7건은 미수행되었다. 미수행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참여업체 부재(4건), 국방부의 사업계획 변경(3건) 등이며, 이로 인한 불용액은 13억 9,100만원이다.

[미수행 연구개발과제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원)

유형	연구개발명	불용액
참여업체 부재	155mm 포병 연습탄	500
	부품 국산화	500
	군수품 품질개선사업	200
	지뢰 훈련 시뮬레이터	35
사업계획 변경	침낭 품질개선	100
	다중유류분배기	36
	폭음통(KM80) 성능 개선	20
합계		1,391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동 사업은 기술 및 제품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고 소액사업이 대부분으로, 생산관리, 제조기술 위주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장환경이 형성되어 있어 연구개발실패에 따른 개발비 미지급 및 선금회수 등의 제재 조치 등에 의한 개발실패 부담, 참여업체 부재 등의 사유로 미수행과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5개년 과제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미수행과제수가 2013년 1건에서 2017년 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사유가 참여업체의 부재, 개발지연·실패, 사업계획 변경 등이라는 점에서 국방부의 연구과제 선정이 면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수행 연구개발과제 유형별 현황(2013~2017년도)]

(단위: 개)

구분	전체과제수	미수행 과제수			
		총계	참여업체 부재	개발 지연·실패	사업계획 변경
2013	21	1	1	0	0
2014	24	3	1	0	2
2015	30	3	2	1	0
2016	28	4	0	4	0
2017	32	7	4	0	3

자료: 국방부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미수행과제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오산기지영외탄약고이전¹⁾ 사업은 고덕국제화지구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공군 오산기지 영외탄약고를 미군기지 인접지역으로 이전하여 탄약고 등 건물 29개 동(연면적 7,172㎡)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액 7억 4,900만원 중 5억 7,300만원을 전용하였고, 남은 예산현액 2억 9,100만원 중 1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7,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오산기지영외탄약고이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오산기지영외 탄약고이전	749	749	115	△573	291	113	0	178
공사비 (420-03목)	700	700	0	△553	147	0	0	147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은 총사업비 261억원 규모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될 계획이었으며, 2002년에 이전사업이 승인되었고, 2014년 탄약고 배치에 대한 한·미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 사업은 2017년도까지 완료되었어야 하나 설계지연 및 총사업비 조정 필요 등의 사유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흥연 예산분석관(n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4131-340

동 사업은 당초 2017년까지 이전이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 지연 및 총사업비 조정 필요에 따라 공사비 예산액 7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군측이 제시한 탄약고 표준도면 변경, 연약지반 발견 및 설계사항 반영에 따른 추가 시설물 공사, 사업기간 연장(3년 연장) 필요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261억원에서 401억원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어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²⁾

[오산기지영외탄약고이전 사업 총사업비 조정 요구 및 사유]

기존	조정요구	조정사유
261억원 (2003~2017년)	401억원 (2003~2020년)	- 탄약고 표준도면 변경(미군측 제시) - 물가상승 - 연약지반 발견에 따른 설계 사항 반영에 의한 추가공사

자료: 국방부

그러나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던 기존 영외탄약고는 아파트 건설 등의 이유로 2018년 9월 폐쇄될 예정이나 사업지연으로 인해 신규 탄약고 공사가 지체되면서 탄약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탄약이 2018년 7월 분산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시 탄약 활용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³⁾됨에 따라 동 사업의 설계결과에 대한 단가 적정성 검토가 조달청에 의뢰(2018년 2월)되었고, 5월에 그 결과가 도출되어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재개되었지만 협의가 지연될 경우 사업이 추가로 순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오산기지 영외탄약고 건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 총사업비 조정 협의는 2017년 5월 설계 중단(60% 완료) 및 공사비 절감방안 모색 후 8월부터 본격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2017년 10월 기획재정부가 설계 완료 후 최종결과가 도출되면 재협의를 하고 하여 설계가 재개되었고, 12월 설계완료 후 재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연내 협의완료하지 못하였다.

3) 모든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설계결과에 대해 조달청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2018년 1월1일 시행).

가. 현 황

장학사업¹⁾은 현역 군인의 자녀 중 대학교 1학년 신입생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계획현액 30억원 중 15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장학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장학사업	3,000	3,000	0	0	3,000	1,558	0	1,442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16년도까지 군인자녀 고교졸업생 모두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모든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도부터는 대학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장학사업 변경 사항]

2016년도		2017년도
고교 졸업생 자녀 모두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대학 진학 자녀 중 1학년 1학기 성적 우수자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조흥연 예산분석관(n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군인복지기금 2239-646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학사업을 통한 군인자녀 대학 신입생 성적우수자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2017년도 장학사업 예산 편성 당시 성적우수자를 2016년도에 장학금을 받은 고교졸업생 3,900명의 80%²⁾ 수준인 3,000명으로 산정하여 3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절반 수준인 15억 5,800만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집행부진이 발생한 것은 국방부의 대상인원 산정이 과다한 것에 일부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인자녀의 대학진학률은 평균 70% 수준이며, 성적우수자의 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에도 고교졸업생의 80%를 성적우수자로 판단한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인자녀 대학 성적우수자 선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적정수준의 예산만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학금 지급 신청에 대한 홍보 및 안내기간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사업 시행 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동 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한 원인 중 일부는 홍보 및 안내기간의 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국방부는 8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1달간 신청접수를 받은 후 10월 31일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7월에서야 처음으로 안내하였다. 이로 인하여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홍보 및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관련제도에 대한 미인지 사례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것이 집행실적 부진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신청접수도 온라인이 아닌 우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관련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일부 미숙함이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2) 국방부는 100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성적우수자로 보고 성적우수자 인원수가 고교졸업생의 80% 수준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군인자녀 신입대학생 중 성적우수자가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접수와 관련된 절차도 보완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 현 황

과학화훈련¹⁾ 사업은 훈련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장비를 구매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과학화훈련인 전투모의훈련, 전투지휘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액 666억 3,600만원 중 585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6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과학화훈련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과학화훈련	67,071	67,071	1,480	△1,915	66,636	58,591	411	7,634
교육훈련장비	30,069	30,069	1,331	△813	30,586	26,443	140	4,003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육훈련장비 사업은 훈련과정에 필요한 시뮬레이터, 마일즈장비,²⁾ 무인표적체계 등 과학화훈련을 위한 장비를 도입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305억 8,600만원 중 264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고 40억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일반회계 2434-301

2) 마일즈장비([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MILES]는 실전과 같은 무기 효과 및 전장 효과를 묘사하기 위해 레이저 빔 특성을 이용하여 사격을 모의하고, 화기 사용의 시청각적 효과를 묘사하는 장비를 의미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방부는 과학화훈련에 활용되는 교육훈련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업체의 경영악화, 제안서불합격 등의 사유로 일부 장비를 도입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장비의 도입지연은 향후 진행될 예정이던 과학화훈련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교육훈련장비 사업을 통해 K1A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수송운전교육용 시뮬레이터, 방공포병 모의훈련체계 시스템 구축 등 교육훈련 장비를 도입 및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방공포병 모의훈련체계시스템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29억 800만원이 불용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방공포병 모의훈련체계시스템 구축³⁾은 계약업체의 경영악화로, 전술데이터링크 교육지원체계 구축⁴⁾은 업체의 제안서 불합격으로, 항공화력 유도 시뮬레이터⁵⁾는 입찰가의 목표가 초과로, 교육사 정보학교 피아복합전시공간 설치⁶⁾는 계약업체의 기술능력 제한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3) 실제와 유사한 적 공격유형 및 작전상황 묘사를 통해 상·하 체대 간 통합 방공작전절차를 숙달 시키기 위한 통합훈련체계 도입 사업(총사업비 43억 9,000만원)

4) 한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전술데이터링크(Tactical Data Link) 운용 인력의 안정적 획득과 미군에 의한 전술데이터링크 운용자 양성교육의 국외 의존성 감소 및 예산절감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 교육환경 조성 사업(총사업비 30억 7,000만원)

5) 적지중심에서 항공화력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적지중심작전부대(육군 특전사 요원, 해병대 특수전부대 요원 등)들의 항공화력유도 모의실습을 위한 시뮬레이터 도입 사업

6) 정보학교에서 교육간 적 전술적 전술, 침투 전술 등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이론 및 실습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 전술 전문교실, 적 장비 전시실, VR/AR체험관 등의 설치 사업

[2017년도 교육훈련장비 사업 내 주요 불용 사유]

(단위: 백만원)

사업명	도입예정 시기	변경시기	2017년도 불용액	불용 사유
방공포병 모의훈련체계 시스템 구축사업	2018년말 (15~18진행)	2020년 도입 재추진	1,021	계약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계약 불이행
전술데이터링크 교육지원체계 구축사업	2018년말 (17~18진행)	2020년 도입 재추진	1,027	입찰공고 후 유찰 및 제안서 불합격 등으로 연내 계약체결 제한
항공화력유도 시뮬레이터	2017년말 (단일연도)	2019년 도입 재추진	433	입찰가의 목표가 초과로 인한 계약체결 제한
교육사 정보학교 피아복합전시공간 설치	2017년말 (단일연도)	재추진 여부 검토 중	427	계약진행 간 업체 미제안, 기술능력 제한 등의 사유로 사업 중단
총 계			2,908	-

자료: 국방부

그러나 방공포병 모의훈련체계 시스템 구축은 201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업체의 경영난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장기간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⁷⁾이며, 전술데이터링크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 3개 사업은 제안서 불합격, 입찰가의 목표가 초과 등 계약 이전 단계에서 부터 사업이 지연되는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장비들은 2017년도 및 2018년도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여 재도입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관련 장비를 통해 실시될 예정이었던 훈련에도 장기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관련 장비를 통한 훈련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해당 장비들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7) 국방부는 2020년부터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국가부담금과 보전금을 전출하고 있다.¹⁾ 2017년 예산액은 국가부담금 1조 388억 8,700만원과 보전금 1조 4,657억 3,200만원 등 2조 5,046억 1,9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보전금의 규모는 1995년 5,002억 1,000만원에서 2017년 1조 4,657억 3,200만원까지 증가하였다.

[군인연금의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회계전입금	2,258,052	2,329,600	2,332,718	2,399,310	2,504,619
- 국가부담금	888,864	956,317	989,623	1,032,773	1,038,887
- 보전금	1,369,188	1,373,283	1,343,095	1,366,537	1,465,732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군인연금 보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타 직역연금과 비교하여 기여금 대비 연금수급액이 높아 국가 재정부담의 증가, 직역연금제도 운영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인연금 보전금은 1973년 3억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 1조 4,657억원을 기록하였다. 기여율 인상, 연금수급시기 조정 등으로 개혁을 추진한 공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myilee@assembly.go.kr, 788-4661)

1) 「군인연금법」 제39조의2(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무원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은 기존의 기여율 등을 유지하고 있어 군인연금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을 2020년까지 9%로 확대하고 연금수급시기를 늦추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인연금은 기여율을 7%로 유지하고 연금도 퇴역 후 익월부터 수급할 수 있다.

그 결과, 군인연금의 1인당 기여금 납부액은 연간 326만원이고 1인당 퇴직연금월액은 257만원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1인당 기여금 납부액이 연간 434만원이고 1인당 퇴직연금월액은 229만원이다. 즉, 군인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더 적은 기여금을 내고도 더 많은 퇴역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 2017년]

(단위: 명, 백만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자 수	182,204	1,120,458
	기여금수입 총액	594,602	4,867,633
	1인당 기여금연액(만원)	326	434
퇴역연금	수급자 수	71,055	419,968
	퇴역연금지급 총액	2,194,969	11,542,906
	1인당 퇴역연금월액(만원)	257	229

주: 군인연금 관련 인원 및 금액은 2017년 12월 말 기준이고,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수급자에는 연금미개시자가 포함되어 있고, 퇴직연금지급 총액에는 분할연금과 연금이체급여액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군인연금 보전금 규모 증가,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대비 낮은 기여율 및 높은 연금수급액 등은 국가 재정 및 연금제도 운영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계급별 연령정년에 따라 조기퇴직하나 재취업이 어려워 직업안정성이 낮은 군인의 특징과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에게 보상적 성격을 갖는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²⁾

따라서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직역연금 제도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계급별 연령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로 60세 정년을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4~17년 앞서 퇴직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241~302 비공개)

병무청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400만원(21.4%)이 감소한 1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600만원(37.2%)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일반회계	258	206	206	162	△44	△96

자료: 병무청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95억 4,900만원(4.3%)이 감소한 2,108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47억 1,900만원(7.5%)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일반회계	196,178	220,129	220,446	210,897	△9,549	14,719

자료: 병무청

이영미 예산분석관(ymlee@assembly.go.kr, 788-4640)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600만원이며, 4억 3,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7.2%인 1억 6,2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4,6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06	206	206	435	162	146	127	37.2

자료: 병무청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204억 5,000만원이며, 이 중 95.7%인 2,108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95억 5,3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20,129	220,446	220,450	210,897	0	9,553	95.7

자료: 병무청

다.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병무청의 자산은 3,739억 7,300만원, 부채는 140억 6,300만원으로 순자산은 3,599억 1,0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38억 1,900만원(1.0%) 감소한 것으로 유동자산 49억 6,100만원, 일반유형자산 3,527억 5,100만원, 무형자산 93억 9,3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68억 6,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토지재평가 및 감가상각에 따른 유형자산 21억 4,200만원 감소, 감가상각에 따른 무형자산 22억 1,2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21억 7,700만원(18.3%)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43억 4,900만원, 장기차입부채 95억 9,000만원, 장기충당부채 1억 2,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금융리스의 유동성대체에 따른 유동부채 10억 7,200만원 증가, 신규금융리스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11억 2,4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병무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73,973	377,792	△3,819	△1.0
Ⅰ. 유동자산	4,961	6,037	△1,076	△17.8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352,751	354,893	△2,142	△0.6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9,393	11,605	△2,212	△19.1
Ⅵ. 기타비유동자산	6,867	5,257	1,610	30.6
부 채	14,063	11,886	2,177	18.3
Ⅰ. 유동부채	4,349	3,277	1,072	32.7
Ⅱ. 장기차입부채	9,590	8,466	1,124	13.3
Ⅲ. 장기충당부채	124	143	△19	△13.3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359,910	365,906	△5,996	△1.6
Ⅰ. 기본순자산	249,142	249,142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9,568	35,012	△5,444	△15.5
Ⅲ. 순자산 조정	81,200	81,753	△552	△0.7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299억 1,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331억 5,000만원, 관리운영비 1,964억 7,800만원, 비배분비용 4억 4,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억 5,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68억 8,400만원(7.9%) 증가한 2,299억 1,800만원이며, 이는 잠복결핵위탁검사 실시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가 전년도 대비 106억 6,2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총 3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병무자원선발 프로그램(208억 5,600만원)과 보충역복무지원 프로그램(104억 8,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152억 6,100만원과 경비 812억 1,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감가상각비 2억 2,900만원과 대손상각비 1억 1,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병무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3,150	22,487	10,663	47.4
가. 프로그램 총원가	33,150	22,487	10,663	47.4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0
II. 관리운영비	196,478	190,554	5,924	3.1
III. 비배분비용	443	247	196	79.4
IV. 비배분수익	153	254	△101	△39.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29,918	213,034	16,884	7.9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29,918	213,034	16,884	7.9

자료: 병무청

병무청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3,659억 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599억 1,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9억 9,600만원(1.6%)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168억 8,4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이 기초 대비 234억 1,600만원으로 적게 증가하였고,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90억 5,9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2,246억 3,7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억 6,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 자산재평가이익 5억 5,2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병무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365,906	340,661	25,245	7.4
II. 재정운영결과	229,918	213,034	16,884	7.9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24,474	215,415	9,059	4.2
IV. 조정항목	△552	22,864	△23,416	△102.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359,910	365,906	△5,996	△1.6

자료: 병무청

병무청의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된 사업은 없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관리 사업이 있다. 시설관리 사업은 소속기관 LED 조명교체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LED 조명 생산·교체 수요 증대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3억 1,700만원 증액(20억 8,900만원 → 24억 600만원)되었다.¹⁾ 그러나 추경에 의한 LED 조명 교체 수요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장기적·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²⁾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7.

2)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17.6.

병무청은 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병역처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② **군 소요 적정 충원 및 병력동원업무 수행**, ③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 강화**, ④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자긍심 고취** 등을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인원이 2014년 2만 2,000명에서 2017년 5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이러한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어 2020년에는 6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인원 증가에 따른 소집적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무청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의 효과가 현재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병무청은 소집적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비해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 실태 조사가 방식, 내용, 결과 활용 등의 측면에 있어 미흡한 경향이 있으므로,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장기간 승선으로 인하여 현장 및 대면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직접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 방안을 마련하여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가. 현 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¹⁾은 사회복무요원²⁾의 합리적 인원 배정 및 복무관리 등을 통해 보충역 인력 활용의 효율성과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병무청은 2017년도 예산현액 13억 6,300만원 중 13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363	1,363	0	0	1,363	1,326	0	36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인원 증가에 따른 소집적체 문제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에서, 병무청은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영미 예산분석관(ymlee@assembly.go.kr, 788-4640)

1) 코드명: 일반회계 1434-320

2)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24개월 간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를 의미한다.

2017년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한 병역의무자는 총 5만 7,580명이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5,320명, 지방자치단체 2만 2,793명, 공공단체 1만 401명 및 사회복지시설 1만 9,066명이 복무하였고,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2만 2,402명, 보건의료분야 2,956명, 교육문화분야 3,883명, 환경안전분야 6,827명 및 행정분야 2만 1,512명이 복무하였다.³⁾

[2017년 사회복지요원 복무현황]

(2017.12.31. 현재, 단위: 명)

구분	총 계 (11,569개)	국가기관 (1,109개)	자치단체 (876개)	공공단체 (1,542개)	복지시설 (8,042개)
총 계	57,580	5,320	22,793	10,401	19,066
사회복지	22,402	0	3,207	129	19,066
보건의료	2,956	67	1,712	1,177	0
교육문화	3,883	92	3,141	650	0
환경안전	6,827	115	2,035	4,677	0
행정	21,512	5,046	12,698	3,768	0

자료: 병무청

그런데 최근 4년간 사회복지요원 소집대기인원 추세를 살펴보면, 2014년 2만 2,000명, 2015년 2만 9,000명, 2016년 4만 명, 2017년 5만 명으로 소집대기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병무청은 이러한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어 2020년에는 소집대기인원이 2014년 대비 약 2.8배인 6만 1,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 사회복지요원의 배정은 대상자의 출퇴근 가능 거리, 수행 가능 임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배정 시, 기관별로는 사회복지시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순으로,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 보건의료 → 교육문화 → 환경안전 → 행정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져 배정이 이루어진다.

[사회복무요원 자원 현황]

(단위: 만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초 인원 (이월+신규인력) (A)	3.5	3.5	4.7	7.4	8.3	8.8	9.3
증가 인원 (병역처분변경 등) (B)	2.5	3.0	3.8	2.4	2.4	2.4	2.9
감소 인원 (사회복무소집 등) (C)	3.8	3.6	4.5	4.8	4.9	5.1	6.1
연말 소집대기인원 (A+B-C)	2.2	2.9	4.0	5.0	5.8	6.1	6.1

주: 2018년도 이후는 예상인원

자료: 병무청

병무청에 따르면 소집대기인원의 증가는 1차적으로 현역병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즉, 2015년 10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⁴⁾이 개정되어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의 처분이 완화⁵⁾되었고, 병역판정검사 결과 1~3급에 해당하더라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일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된데 그 원인이 있다. 2차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인원이 급증하였음에도 복무기관에서 복무관리 및 예산의 부담 등을 이유로 배정 인원 수 확대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인원 증가에 따라 소집적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기준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을 시 소집대기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5개월에 달한다.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무청은 2016년 이래 산업기능요원⁶⁾으로의 편입 복무 장려, 신규 복무기관 발굴, 기존 복무기관에의 사회복무요원 활용 확대 협조 요청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는 장기대기로 인한 전

4) 2016년 11월 30일부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5) 2015년 당시 병무청은 체질량지수(신장 및 체중), 혈압, 시각, 척추상태 등과 관련된 48개 검사 항목에서 4급 보충역으로의 판정 기준을 완화하였다. 예를 들어,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 기준을 'BMI 16미만/35이상'에서 'BMI 17미만/33이상'으로, 고혈압에 따른 4급 판정 기준을 '수축기 180이상/이완기 110 이상'에서 '수축기 160이상/이완기 90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신체검사 결과 3급(현역)보다 4급(보충역)으로 판정받는 인원이 증가하도록 관련 검사규칙을 개정하였다.

6)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시근로역 처분 대기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0년에 소집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의 효과가 현재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병무청은 2016년 이래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편입 예정인원을 9,000명으로 확대하였음에도 실제 편입인원은 2016년 5,746명, 2017년 7,412명으로 예정인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⁷⁾

[사회복무요원 대상 산업기능요원 배정 및 편입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업체 수	배정인원	편입인원
2013년	5,831	3,000	2,771
2014년	5,892	4,000	3,096
2015년	6,237	4,500	2,968
2016년	6,781	9,000	5,746
2017년	7,823	9,000	7,412

자료: 병무청

따라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인원 증가에 따른 소집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의 수요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등을 통하여 소집대기인원의 발생과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7)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시 2개월 더 긴 복무기간(26개월),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편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병역지정업체들 또한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편입 요건인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관련)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미달하더라도 편입이 가능하므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에 비하여 업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 현 황

병역지정업체 등 실태조사 사업은 전문연구요원¹⁾ 및 산업기능요원²⁾이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승선근무예비역³⁾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수산업체 등에 대하여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산업지원인력 사업⁴⁾의 내역 사업이다. 병무청은 2017년도 예산현액 2억 3,500만원 중 2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병역지정업체 등 실태조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업지원인력	326	326	0	0	326	322	0	4
병역지정업체 등 실태조사	235	235	0	0	235	234	0	1

자료: 병무청

이영미 예산분석관(ymlee@assembly.go.kr, 788-4640)

- 1) 전문연구요원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및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36개월 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2)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며 34개월 간(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경우 26개월 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3)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등을 위하여 해운·수산업체의 선박에서 항해사·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36개월 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4) 코드명: 일반회계 1434-309

나. 분석의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비해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 실태조사가 미흡한 경향이 있으므로,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산업지원인력으로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는 2014년 2만 5,542명, 2015년 2만 6,388명, 2016년 3만 364명, 2017년 3만 6,44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업지원인력 인원배정 및 복무관리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업체수	신규 배정인원	총 복무인원
2014년	계	7,812	11,500	25,542
	전문연구요원	1,774	2,500	6,395
	산업기능요원	5,892	8,000	16,079
	승선근무예비역	146	1,000	3,068
2015년	계	8,212	12,000	26,388
	전문연구요원	1,824	2,500	6,164
	산업기능요원	6,237	8,500	17,092
	승선근무예비역	151	1,000	3,132
2016년	계	8,823	18,500	30,364
	전문연구요원	1,887	2,500	6,447
	산업기능요원	6,781	15,000	20,732
	승선근무예비역	155	1,000	3,185
2017년	계	10,003	18,500	36,449
	전문연구요원	2,007	2,500	7,079
	산업기능요원	7,823	15,000	26,143
	승선근무예비역	173	1,000	3,227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이러한 산업지원인력의 복무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산업지원인력 병역지정업체 및 의무자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는 조사의 방식, 내용, 결과 활용 등에 있어서 그 체계와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사방식에 있어서 위반행위 신고 등이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연 2회 이상의 조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판단 하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그 강제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이다.

둘째, 조사내용에 있어서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무만족도 조사(기본평가 시), 업체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수시평가 시)가 결여되어 있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에 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결과활용에 있어서 종합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해운·수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서면조사로 대체, 인원배정시 우대 등의 각종 인센티브 기회가 주어지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에 비하여 복무관리의 성과를 제고할 유인이 적을 수 있다.

[산업지원인력 유형별 복무관리 실태조사 체계 비교]

구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조사방식	정기	모든 병역지정업체 대상 매년 1월1일~9월30일 (연 1회)	정기 모든 병역지정 해운·수산업체 대상 매년 1월1일~9월30일 (연 1회)
	특별	위반행위 신고 업체 및 민원 발생업체 대상 연중 (연 2회 이상 원칙)	수시 위반행위 신고 등 특이사항 발생업체 대상 연중 (지방병무청장의 판단)
조사 내용	기본 평가	업체사항(10점), 복무사항(35점), 행정사항(20점), 복무만족도(15점)	업체사항(10점), 복무사항(70점), 행정사항(20점)
	수시 평가	가점요소(13개 항목)	감점요소(13개 항목)
	평가	감점요소(14개 항목)	
	종합 평가	기본 및 수시평가 합산 후 합격(60점 이상) 및 불합격(60점 미만)으로 평가	기본 및 수시평가 합산 후 합격(60점 이상) 및 불합격(60점 미만)으로 평가
결과활용		합격·불합격 여부에 따라 차년도 인원 배정에 제한 (불합격 시 미배정)	합격·불합격 여부에 따라 차년도 인원 배정에 제한 (불합격 시 미배정)
		종합평가 결과 상위 30%는 서면조사 실시, 상위10%는 인원배정 시 우대, 상위 3%는 시정조치 1회 면책	-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또한 실태조사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승선근무예비역은 근본적으로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관련 법적 근거 및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실태조사에서 편입당시 지정 업체 근무 여부, 편입당시 해당분야 근무 여부, 겸직금지 규정 위반 준수 여부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만약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업체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62조)에 의거하여 고발, 경고, 주의, 시정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의무자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시행령 제91조의3) 등에 의거하여 편입취소·고발, 연장복무, 경고, 시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실태조사 시 병역지정 해운·수산업체의 선박 보유·관리 상태, 승선근무예비역의 인력 관리 상태, 신상변동 통보 이행 실태,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서류의 비치상태 등을 조사하여 업체에 대한 고발, 주의, 시정 등의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의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산업지원인력 복무관리 실태조사 실적]

(단위: 건)

구분		업체				의무자			
		계	고발	경고	주의	계	편입 취소	연장 복무	경고 등
2014년	계	245	6	21	218	60	6	20	34
	전문연구요원	35	1	4	30	16	1	9	6
	산업기능요원	196	5	17	174	44	5	11	28
	승선근무예비역	14	0	0	14	0	0	0	0
2015년	계	188	4	19	165	71	2	31	38
	전문연구요원	49	0	3	46	11	1	1	9
	산업기능요원	127	4	16	107	60	1	30	29
	승선근무예비역	12	0	0	12	0	0	0	0
2016년	계	123	4	18	101	36	2	18	16
	전문연구요원	22	3	0	19	4	1	2	1
	산업기능요원	92	1	18	73	32	1	16	15
	승선근무예비역	9	0	0	9	0	0	0	0
2017년	계	132	7	20	105	71	1	36	34
	전문연구요원	24	1	0	23	6	0	1	5
	산업기능요원	98	6	20	72	65	1	35	29
	승선근무예비역	10	0	0	10	0	0	0	0

자료: 병무청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통상 8개월 정도의 장기간 승선으로 인하여 현장 및 대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의 특수한 복무 상황을 고려하여 모바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직접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에 준하는 제도와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관한 복무관리 체계 및 관련 제도가 미흡하지 않은지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직접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 방안을 강구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관리·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잠복결핵 위탁검사비 사업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잠복결핵을 검사하여 결핵 발병 및 군부대 내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역판정검사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병무청은 2017년도 예산현액 137억 3,500만원 중 100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잠복결핵위탁검사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병역판정검사	24,113	24,113	0	0	24,113	20,364	0	3,749
잠복결핵 위탁검사비	13,735	13,735	0	0	13,735	10,089	0	3,646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병무청은 잠복결핵 위탁검사비의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여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은 결핵퇴치 사업의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2016.3.24.)’의 시행에 따라 2017년도부터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8만 6,223명 중

이영미 예산분석관(ymlee@assembly.go.kr, 788-4640)

1) 코드명: 일반회계 1100-301

33만 3,739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²⁾하였으며 이 중 9,732명(2.9%)이 잠복결핵 양성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예산 편성 당시 잠복결핵검사 대상자를 34만 3,364명, 단가를 4만원으로 책정하여 137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100억 8,900만원만을 집행하였다. 이는 실제 검사자가 33만 3,739명으로 감소한 데에도 기인하고 있지만 계약단가가 2만 9,800원으로 낮아진 것에 더 큰 원인이 있다.

[2017회계연도 잠복결핵위탁사업비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편 성			집 행(계약)		
검사인원(명)	단가(원)	예산(천원)	검사인원(명)	단가(원)	집행(천원)
343,364	40,000	13,735,000	333,739	29,800	10,089,060 ¹⁾

주: 1) 집행액은 잠복결핵 위탁검사 관련 조달수수료 등 1억 4,363만원을 포함

자료: 병무청

이에 대해 병무청은 예산편성 당시 5개 위탁검사 업체로부터 평균 견적가격 4만 7,200원을 제출받아 4만원으로 단가를 책정하였으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당초 편성단가보다 낮은 2만 9,800원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산편성 시에는 검사시약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2017년부터 결핵안심국가 실행 사업이 군부대,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단가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잠복결핵 위탁검사비의 단가 예측에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하나, 잠복결핵 위탁검사가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업인 만큼 향후 병무청은 계약단가를 보다 정확히 계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결핵 환자인 경우, 최근 잠복결핵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결핵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와 잠복결핵 검사자 수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가. 현 황

병무행정정보화 사업¹⁾은 병무행정 전(全) 과정의 정보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수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병무청은 2017년도 예산현액 87억 800만원 중 85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병무행정정보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병무행정정보화	8,708	8,708	0	0	8,708	8,503	0	205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병무청은 보안강화·감리비·조달수수료 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고, 보안강화·감리비·조달수수료를 지원하는데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

그러나 병무청은 병무행정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① 2017년도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②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 2건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총 9,900만원 중 800만원을 보안강화·감리비·조달수수료 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영미 예산분석관(ymlee@assembly.go.kr, 788-4640)

1) 코드명: 일반회계 7138-501

2)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7, p.95.

구체적으로, 병무청은 500만원을 충북청에 재배정하여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무정전전원장치 수리비에 활용하였고 300만원을 부산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항온항습기 수리비에 활용하였다.

[2017년도 병무행정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 및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명	낙찰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2017년도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1,594	68	- 조달수수료(계약): 11 - 조달수수료(기술위원평가수당): 3 - 충북청 재배정: 5
전산장비 유지보수 (소속기관 전체 합)	282	31	- 항온항습기 수리비: 3 (부산청 2, 경북청 1)
병무감사시스템 구축	220	5	- 병무감사시스템 구축 조달수수료: 1 - 지자체 전시수행체계 구축사업 조달수수료: 3
지자체 전시업무 수행체계 및 교육포털 구축	351	16	- 2017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16

자료: 병무청

이에 대해 병무청은 정보화시설 및 장비의 예상치 못한 유지·보수·수리에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세목의 잔여 예산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을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활용한 것은 보안강화·감리비·조달수수료 지원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병무청은 2016년도에도 동 사업의 낙찰차액을 정보화시설 및 장비 유지 등의 목적으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수리 등에 2,500만원, 전자우편 서버노후화로 인한 소프트웨어 교체에 2,0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

향후 병무청은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내에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 집행에 있어 지침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집 필

총괄 | 이승재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박혜진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연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신봉진 예산분석관
조흥연 예산분석관
이영미 예산분석관
이은경 예산분석관
이병철 예산분석관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

지원 | 이정아 행정실무원
박미현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II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8년 8월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일칼라콤(주)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085-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8